2014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를 말하다.

아동을 위한 그리고 아동과 함께하는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일 시 : 2014년 4월 25일(금) 13 : 00 ~ 18 : 00

장 소 :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B102호

주 최 : 한국아동

후 원 : 보건복지 여성가족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학지사

보건복지 여성가족부

인사말

2014년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를 말하다. 아동을 위한 그리고 아동과 함께하는 아동친화적 사법체계**」란 주제로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법체계는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법체계에서 아동의 권리는 존중되지 못하고, 아동친화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동권리학회는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를 말하다. 아동을 위한 그리고 아동과 함께하는 아동친화적 사법체계**」를 주제로, 아동권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아동 사법체계의 현실을 보고, 아동 사법체계에 대한 UN아동권리위원회의 입장과 외국의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아동권리에서 본 사법체계를 재조명하고, 보다 나은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을 탐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04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황옥경

춘계학술대회 일정

13:00~13:10	등록
	1부 사회자 : 강현아 교수(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13:10~13:20	국민의례 및 개회사 황옥경 회장 (한국아동권리학회)
13:20~13:40	축사 이상경 이사장 (한국방정환재단)
13:40~14:20	기조강연. **아동권리와 법 체계** 홍종희 과장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14:20~14:50	주제발표 1. **사례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아동 사법체계의 현실** 안동현 교수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14:50~15:20	주제발표 2. **아동 사법체계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시각** **- 일반 논평(2007)을 중심으로 -** 최병각 교수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15:20~15:30	휴식
	2부 사회자 : 이은주 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과)
15:30~16:00	주제발표 3. **유럽 연합의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 그 의미 탐색**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친화 사법체계 연구회
16:00 ~16:30	주제발표 4. **미국의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사례** **- 법원임명특별옹호자(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김경륜 대표 (인재디포)
16:30~16:40	휴식
16:40~17:50	**< 종합토론 >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와 대응** 좌장 : 이재연 교수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토론 :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철홍 과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송준헌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이현주 부장 (중앙입양원 정책연구부) 장화정 관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영순 본부장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
17:50~18:00	종합정리 및 폐회

목차

홍종희 과장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주제발표

23

1. 사례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아동 사법체계의 현실 ····· 25
안동현 교수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2. 아동사법체계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시각
- 일반 논평(2007)을 중심으로 - ····· 37
최병각 교수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3. 유럽 연합의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 그 의미 탐색 ····· 71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친화 사법체계 연구회

4. 미국의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사례
- 법원임명특별옹호자(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 91
김경륜 대표 (인재디포)

종합토론

117

1.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119
2. 현소혜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135
3. 김철홍 과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 142
4. 송준헌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148

5. 이현주 부장 (중앙입양원 정책연구부) ····· 155
6. 장화정 관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156
7. 전영순 본부장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 ····· 166

1. **구미향(서일대학교)·황소영 (성균관대학교)**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관한 주관적 인식 변화 분석 ····· 171

2. **김현지(중앙대학교)·오연주(대림대학교)·이정수(서울사이버대학교)**
유아의 행복권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분석(유아의 연령, 성별, 모자애착관계, 자아탄력성, 또래유능성을 중심으로) ····· 173

3. **김혜정(경희대학교)·김연하(경희대학교)**
만 4-5세 유아의 문제행동수준 예측변인탐구: 가족특성,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 175

4. **배화옥(경상대학교)**
아동학대재발 요인으로서 부부폭력 ····· 177

5. **서혜정(제주한라대학교)**
교실에서 의사표현 기회를 갖는 유아들의 체험에 대한 의미 ····· 179

6. **송승희(경희대학교)·장경은(경희대학교)**
유아의 공감능력과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181

7. **이귀옥(숭의여자대학교)**
영유아기 기본생활습관 형성실태 : 수면습관, 식습관, 배변/씻기 습관을 중심으로 ····· 183

8. **이문정(호서대학교)**
앤서니 (Anthony Browne) 그림책에 나타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 185

9. **이인경(인하대학교)·이완정(인하대학교)**
영아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187

10. **이정수(서울사이버대학교)·오연주(대림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사업 인지 및 프로그램 요구 연구
: 안양시를 중심으로 ····· 189

11. **장지현(인하대학교)·이완정(인하대학교)**
유아가 갖추어야할 성격 강점 및 덕목에 관한 어머니의 인식 ····· 191

12. **황옥경(서울신학대학교)·김정화((재)한국보육진흥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본 한국아동권리의 현실 ····· 193

13. **Anna Dubrovskaya(경희대학교)**
Three model early childhood programs ····· 195



아동권리와 법 체계

홍종희 과장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아동권리와 법 체계

홍종희 과장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Ⅰ. 들어가며

아동은 미래사회의 주인으로 아동에 대한 처우는 한 사회의 미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은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입장과 역량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미완성의 어른이나 어른의 종속물로 인식되어 왔다.

인류 역사상 아동의 권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근대 이후의 일로 프랑스 계몽사상가 루소(J.J.Rousseau)가 소설 에밀에서 아동의 독립성과 아동으로서의 완성을 강조하면서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아동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서양의 산업화과정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으며 일하는 아동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생산의 담당자로서 착취의 대상이었던 아동이 제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등장하고 아동의 노동조건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장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보호의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최근에서야 아동복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아동을 보호자와 독립된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는 인권의 차원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에게도 성인에게 주어지는 인권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아동은 스스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인구층과는 달리 고려되어야 할 인권의 내용이 있다. 보호권이나 양육보장권이 그것이다. 그런데, 아동이 어른들의 보호 속에서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특성 때문

에 아동의 인권은 무시되거나 열악하게 되고 때로는 과잉보호 속에서 주체적 성장을 방해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인권은 인간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지만, 시대와 사회가 변동하여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때에 그 내용이 추가되고 변하기도 하는 것이며, 이는 입법을 통해 성문화되고 구체화된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아동의 권리 개념을 정리하고 1991년 우리나라에 가입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권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분류해보고자 한다.

Ⅱ. 아동권리와 국제선언 및 협약

1. 아동권리의 개념

아동의 권리는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던 개념이었으나 현재는 성인에게 주어지는 인권 즉 인간이 천부적으로 갖는 자연법적 권리를 아동도 동일하게 갖는다고 보고, 다만 아동이라는 특성 때문에 보호권과 양육보장권이 추가되는 것으로 본다.

아동의 권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성장하고 발달하고 차별 없이 살아갈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선언 및 협약

가. 제네바선언

아동권리에 관하여 세계 최초로 채택된 선언문으로 1923년 젭(Jebb) 여사에

의해 제정되었고 1924년 9월 26일 국제연맹 제5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아동들이 처한 기아, 질병, 고아, 영양실조 등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아동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선언에서는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과 '가장 먼저 구제'해야 한다는 신념이 밝혀졌고 이후 1959년 '아동권리선언',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계승되었다.

나. 아동권리선언

이 선언은 1946년부터 논의되었고 국제연합 인권위원회가 최종안을 작성하여 1959년 11월 20일 제14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제네바선언이 아동을 보호와 구제의 차원에서 보았다면 아동권리선언은 인권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 선언은 전문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의 중요성, 무차별 평등과 자유권 이념을 확인하고,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보호를 포함하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인류가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줄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자신과 사회의 복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부모, 남녀,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 인식과 권리 준수를 위해 입법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의 신체의 자유권, 복지권, 발달권, 교육권 등을 규정하였으나 조약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선언으로 그쳤다.

다.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전 세계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협약이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다. 이 조약의 배경에는 후진국에서는 영유아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선진국에서는 아

동학대, 약물, 성매매, 소년범죄 등이 증가하여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아동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있었다.

전문 및 54조로 이루어져 있는 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 우리나라도 1990년 9월 25일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이 협약은 단순히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명국은 비준 2년 내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을 갖는 실효성 있는 국제법이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협약가입국은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Ⅲ.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우리 법체계

우리나라에서 아동 인권의 법제화는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고 출발하였고, 문제되는 영역별로 특별법이 제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아동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사항들이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다.

아동에 관하여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을 비롯하여 민법, 입양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아동 관련 법률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 조항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우리 법의 아동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아동의 정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률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이 영아, 유아, 영유아, 어린이, 아동, 소년, 청소년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고 법률에서도 목적에 따라 그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아동 관련 법률의 적용연령 기준〉

법률	호칭	연령구분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만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만19세 미만
유아교육법	유아	만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6세 미만
민법	미성년자	19세 미만
소년법	소년	19세 미만
형법	형사미성년	14세 미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아동	18세 미만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	14세 미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18세 미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는 22세 미만)
도로교통법	어린이	13세 미만
모자보건법	영유아	6세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	부양의무자가 없는 18세 미만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차별금지)

법률 및 주요규정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동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한부모 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요지	아동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권자, 후견인 등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요지	학교폭력, 따돌림 등의 정의를 규정, 발생시 대응 방안 및 예방대책에 관하여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요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 안전교육 실시근거 마련
법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요지	어린이 놀이기구 및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일원화 및 체계화

법률	학교급식법
요지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기준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주요 규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실종아동등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요지	아동 등의 실종으로 인한 본인 및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제거하고 실종예방과 실종아동 등의 복귀 및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이름과 국적)

법률	국적법
주요규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부모양계 혈통주의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이름과 국적 취득 가능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규정	- 부 또는 모에게 출생 신고의무 부과(제46조) -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출생신고 의무자로 규정(제46조) 기아를 발견한 사람,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 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제52조)
요지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관리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8조(신분의 유지)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규정	- 모든 국민은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을 하여야 함 - 아동의 신분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에 등재 - 아동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민법)
요지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 등록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부모로부터의 분리)

법률	민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규정	친권의 상실, 제한, 정지
요지	자녀의 복리에 상치될 때 친권제한 명문화
법률	민법
주요규정	가정법원은 자의 목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요지	자녀의 복리에 상치될 때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규정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
요지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격리·보호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주요규정	<청소년기본법> 제5조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제12조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②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10조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를 실시할 시에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지	아동의 의사표현의 권리와 참여권 보장의 법적근거
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요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요지	학생징계 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기회,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시 가해학생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5조(결사 및 집회의 자유)

법률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규정	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요지	정부는 학생의 인권, 자율, 책임을 중시하는 생활지도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학생인권 신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꾀하고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6조(사생활의 보호)

법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
주요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학생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 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아동(아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 및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비밀누설금지) ① 아동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아동 또는 대상아동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 및 대상아동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아동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기본법> 제23조의 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아동 관련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아동에 관한 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아동(아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 및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요지	「교육기본법」은 아동에 관한 정보보호의 원칙, 「초·중등교육법」은 학생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 피해아동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7조(정보접근권)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규정	<청소년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요지	아동에 대한 유해정보 및 매체물 접근을 엄격히 규제(매체물 심의기구에 의한 심의·결정 및 고시)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8조(부모의 지도와 책임)

법률	민법
주요규정	제909조(친권자)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요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지도와 책임은 친권개념에 근거, 가족해체의 경우에도 자녀양육권 인정
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주요규정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보장, 생후 3년 미만 영아의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제공,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지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환경 조성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0조(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법률	아동복지법
주요규정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 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요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기아, 미혼모 아동, 미아, 비행 가출 아동, 빈곤·실직·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의 가정위탁, 복지시설, 전문치료 및 요양소 등의 입소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입양)

법률	입양특례법, 민법
주요규정	제8조(국외입양의 감축)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입양의 효과)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養親)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요지	아동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가능한 가정적인 환경에서 보호·양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가정위탁과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등 대안양육 체제를 강화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3조(장애아동)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주요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 지원팀을 구성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요지	- 장애아동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장을 별도로 규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차별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 장애아동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관리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지원(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포함)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보건서비스)

법률	학교보건법
요지	학교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하고, 보건과목을 정규과목으로 하는 등 보건교육 강화, 구강검진 대상 확대, 보건교육 실시
법률	전염병예방법
요지	예방접종대상 전염병을 지정 관리, 등록하는 모든 영유아는 예방접종사업의 대상
법률	근로기준법,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
주요규정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요지	모유수유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유급휴가를 활성화하며, 모유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5조(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

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주요규정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요지	-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 필요 아동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 수행 -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 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 가능 - 관계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6조(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시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요지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생활하는 아동의 가정에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교육의 권리)

법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요지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 무상실시, 의무교육 실시 관련 대안학교 설립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주요규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청소년활동프로그램·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요지	아동이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활동을 진흥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 경영자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것,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2조(경제적 착취)

법률	근로기준법
요지	사업장에 연소자증명서·친권자동의서 등 비치, 근로계약 대리 금지,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 갱내근로 제한 등 근로조건에 대한 특별한 보호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조(성적 착취 및 학대)

법률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요지	성범죄 처벌의 가중,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 규정 적용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 처벌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아동에 대한 사형·종신형 금지 및 자유 박탈 아동)

법률	소년법
요지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요지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을 처우할 때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 남자와 여자, 16세이상인자와 16세미만인자 분리 수용
법률	소년법
요지	소년원 송치처분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수용의 상한기간을 명시 수용의 폐해 최소화를 위한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처분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8조(무력분쟁 하의 아동)

법률	병역법, 형법
요지	18세 미만 아동의 전쟁참여와 무장단체 가입 등을 엄격히 금지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0조(소년사법)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요지	소년원 근거 규정, 초·중등교육법 상 정규학교로 인정·
법률	소년법
요지	처벌 위주 아닌 교화·선도 중심의 소년사법체계, 국선보조인제도, 보호처분 다양성,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Ⅳ. 아동학대에 관한 현행 법률 체계

1.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특별법 제정 논의

잇따른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발생과 강력범죄의 근간에 가해자들의 아동학대 경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 등이 발표되면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각성과 아동학대범죄자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에 적합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법률 제정의 요구가 있었다.

의사표시 능력이 취약한 아동에 대한 폭력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으로 인해 은폐되는 경우가 많고 발견되더라도 범죄가 아닌 가정 내 훈육의 문제로서 치부되어 왔다.

기존의 법체계상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주로「아동복지법」상 행정처분으로서의 아동보호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아동복지법」상 일부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 외에 대부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별도의 법률에 의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로 인해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따라서 아동보호서비스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어,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었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 : 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요 내용

▢ 제1장 : 총칙

○ ‘피해아동 보호’ 등 목적 및 ‘아동학대범죄’ 등 주요 개념 정의

▢ 제2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 가중처벌 신설, 수강명령 병과 및 친권상실 청구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유죄판결시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병과
-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에 대해 검사는 의무적으로 친권상실 청구

❍ 아동학대 신고의무 강화 및 현장출동 등 규정

- 신고의무 대상자 확대,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부과
- 신속 출동의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사법경찰관리의 상호 동행 요청 이행 의무 부과 외 현장 출입, 조사 권한 부여

❍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

- 응급조치(사법경찰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긴급임시조치(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및 임시조치 신청의무 부과(사법경찰관)

※ 응급조치의
△
△
△ 피해아동을
△ 긴급치료가
※ 긴급임시조치의
△ 피해아동
※ 임시조치의
△ 피해아동
△ 친권 또는
△
△
△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리 ,
행위의 제지
피해아동으로부터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필요한 피해아동을
내용 (사법경찰관 직권)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검사의 청구 , 법원 결정)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등에의 상담 및 교육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직권)
인도
퇴거 등 격리 및 접근금지
퇴거 등 격리 및 접근금지

▢ 제3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와 가정법원의 임시조치

-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시한을 응급조치 후 7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가정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시한을 임시조치 청구 후 24시간 이내로 규정
- 임시조치의 내용으로 퇴거, 접근금지 등 이외에 친권 행사의 제한 및 정지를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부당한 친권 행사를 신속히 견제하고 동시에 임시 후견인을 지정

❍ 피해아동에 대한 성폭법상 피해자보호절차 준용

- 아동학대사건에 관해 성폭법을 준용, 영상물의 촬영·보전, 심리비공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등 피해아동 보호

▢ 제4장 : 아동보호사건

❍ 검사의 결정전 조사 후 조건부 기소유예

- 검사가 처분 전 보호관찰소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사 요구
- 상담조건부 외 치료·수강조건부 기소유예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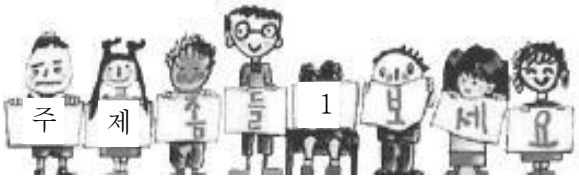
❍ 아동보호사건 송치 및 보호처분 실질화

- 기존 가폭법상의 조치(접근제한, 통신제한, 친권제한) 외 후견권 행사 제한·정지, 피해아동 보호위탁·치료위탁·가정위탁 등을 추가

▢ 제5장 : 피해아동보호명령

❍ 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 가정법원은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피해자 보호명령 가능



사례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아동 사법체계의 현실

안동현 교수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사례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아동 사법체계의 현실

안동현 교수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Ⅰ. 들어가는 글

아동이 당사자가 되어 관련한 사법체계는 형사, 민사, 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재부각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를 든다면 피학대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 혹은 경찰 등 관련기관에서 학대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며 진술을 하게 된다. 이후에 학대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증인으로서 재판정에서 증언을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연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가 재판이 확정될 때 까지 사법체계가 아동친화적인가 하는 점을 보면 많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일부 받고 있다. 이같이 범죄(이번 아동학대특례법 제정으로 아동학대는 분명하게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 피해당사자로서 사법체계와 관련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아동의 부모가 이혼 과정에 있을 때 이혼과 관련하여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은 사법체계 내에 있게 된다. 예전에 비해 이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었음은 분명하다. 이혼재판에서 친권/양육권이 이혼 여부의 결정,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에 앞서 논의된다는 것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리를 가장 잘 실천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등에서 실질적으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아직도 많은 면에서 미흡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세 번째는 일반 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을 예방, 조기발견, 근절하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

법]과 같은 특별법(2004년)이 있다. 주로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일반 성인들이라면 형법에 해당될 수도 있는 폭력행위를 학교당국 내지 관련당사자들에 의해 처리되는 징계법과 같은 법률로 상당히 다른 유형의 체계를 갖는다. 따라서 이 경우는 사법체계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체계에서 담당하지만, 일부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 등이 개입하여 소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처리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가해당사자로 사법체계내에서 처리되는 경우이다. 물론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과 같이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년법으로 하여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누어 처리된다. 소년법은 일종의 형사법으로 경찰이 개입하게 되고 소년검찰 및 소년법원을 거쳐 사법체계의 절차를 따라 처리된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경우에서 이 두 법률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고, 또한 비슷하게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기준도 명확하지는 않다.

이같이 아동이 사법체계와 관련하여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아동이 가해당사자가 되는 소년보호사건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사법체계에서 처리되는 경우에 국한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Ⅱ. 소년사법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소년사건(아동이 가해당사자가 되거나 소위 '우범' 혹은 '촉범', '범죄' 당사자가 되는 경우)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뉜다. 소년사건이 성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소위 '국친사상(parens patriae)'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록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현저하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법체계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때는 처벌보다는 선도, 교육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즉,

범죄를 저지른 아동이라도 처벌보다는 선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비록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선도, 예방을 목적으로 국가권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1. 유책성 연령기준과 보호처분

이와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아동이 비록 범죄를 저지렀다고 하더라도 처벌보다는 선도, 교육을 우선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있지 않다. 하지만 과연 그 연령이나 발달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하는 점에서는 많은 이견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책성(criminal responsibility)을 정하는 연령기준에 대한 논란이다. 다음 표 1.에 보는 바와 같이 유책성 연령 기준은 국가 간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유책성 연령 기준의 국가 간 차이

연령(세)	국가
7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뉴욕(미국), 남아프리카
8	스코틀랜드, 스리랑카, 잠비아
10	오스트레일리아,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위스, 웨일스, 텍사스(미국)
11	일본
12	캐나다, 네덜란드, 터키
13	알제리, 그리스, 과테말라
14	불가리아, 중국,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15	체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16	카보베르테

(출처: Cipriani(2009): van der Sloot & Vermeiren(2013)에서 재인용)

최근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연령하한선을 12세에서 10세로 하향조정한 것이 과연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친화적인 조치였는지에 대한 심도있

는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비록 사후이기는 하지만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본다. 표 1.에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유책성을 판단하는 연령기준이 국가마다 아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년법에서 연령을 하양조정한 것이 과연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최근 범죄가 점점 흉폭화하고, 연령이 낮아지는 등의 사회문제로 인해 소년법에서 우범/촉범아동의 교화 및 선도를 목적으로 10세로 연령을 하향조정하였는데, 그들을 사법체계안에서 적절하게 교화 및 선도를 할 체계를 잘 갖추었는가? 초등학교 연령에 속하는 아동들에게 가정과 학교를 비록 이탈하거나 붕괴되었다고 해도 이들에게 가정붕괴를 대체할 제도와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사법체계 내에서 다루는 것이 아동친화적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사법체계 내에서 다루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면 우범/촉범아동들을 교화, 선도하기 위해 사법체계가 갖추거나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심도있게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고민과 논의로 인해 보호처분에 대한 규정이 대폭 보완, 강화되기는 하였다. 예전에 1~7호 처분까지가 1~10호 처분까지로 확대되면서 이들 보호처분이 중복해서 내려질 수도 있고,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하지만 각각 보호처분의 실질적 효과 혹은 시행에서 아동들의 권리가 어떻게 존중되고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못하다. 그 하나의 예로 수강명령(보호처분 2호) 혹은 사회봉사명령(보호처분 3호)의 경우 몇 십시간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 아동들에게 있어 일정기간 보호관찰이 내려짐으로 하여 상당한 정도의 범죄 혹은 우범/촉범행위의 재발 억제 효과가 있음을 임상 현장에서 종종 관찰하고 있다.

2. 사회적 유능성(comptency)

아동들의 사회적 유능성이 성인에 비해 떨어져 있다는 전제하에 위에서 논

의한 바와 같이 유책성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유능성은 국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판수행능력(competency to stand trial), 법정증언(testimony)능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또한 법정뿐 아니라, 경찰 혹은 검찰에서의 수사단계에서도 역시 중요하다.

국내에서 소년사건의 처리절차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년보호절차와 소년형사절차로 나뉜다. 이에 대해 검사선의주의와 법원선의주의가 대립하였으나, 전자를 채택하였다(이승현, 2010).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결정전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검사가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기관에 아동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아동의 권리 보장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 조사 혹은 심리 단계에 전문가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선보조인 선임권의 보장 등도 명시하고 있다.

얼마 전 필자는 약 15년 전 발생했던 소년범죄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 전문가 자문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다. 이 사건은 모 방송국에서 특집으로도 방영된 적이 있고, 이미 10여 년전에도 재심 청구와 관련한 논의가 있다가 흐지브지되기도 한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이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전문가로서 지적된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OOO이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행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에 대한 의견으로, 많은 의견 혹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검토한 자료(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및 소년교도소 복역 시 시행한 심리검사 결과)를 보면 OOO은 지능지수(IQ)가 낮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교도소에서 시행한 지능검사(2003년)에서 지능지수(IQ)=61로 정신지체(지적장애) 경도(輕度, mild)상태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상 지능성숙검사(92. 4. 14)에서 101, 일반지능검사(94. 4. 20)에서 92 를 받았는데, 전문가 견해로 학교에서 집단으로 시행하는 지능검사(지필식, 집단실시형)의 경우 개별적으로 정밀하게 시행하는 지능검사보다 통상적 15~20점 가량 높게 규준이 잡혀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추정해 보면 소년교도소에서 시행한 것보다는 다소 높지만 적어도 경계선 수준의 지능(IQ 70~84)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는 그런대로 지낼 수 있지만, 중대한 판단을 할 때, 전후문맥을 이해하고 판단할 때 등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과 관련한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판단합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의견으로, OOO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지능이 다소 낮은 것도 알 수 있지만, 이와 함께 주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행동발달상황을 보면 "엉뚱한 일에 크게 반응함(초1)", "주의산만하고 자제력이 부족함(초2)", "주의가 산만하고, 친구들과 가끔 다툽니다(초3)", "주의산만하고 고집이 셈(초4)",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초5)"와 같이 전 학년에 걸쳐 주의가 산만하고 자제력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정신의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라는 아동정신장애를 의심하게 합니다. 이들은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짧고, 신중하지 못하고, 충동적이며, 스릴을 즐기며, 지능에 비해 학습 성취도가 낮습니다. 이들은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신중하게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OOO의 진술이 다소 즉흥적이고 앞뒤 가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OOO의 연령(수사 및 재판 당시 만 15세), 낮은 지적능력,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향 등으로 미루어볼 때 진술의 신빙성에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적 관점에서의 보면,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한 대한민국(1991년 비준)은 이 협약을 준수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협약에서는 아동(18세 미만의 자)이 소년 범죄와 관련한 사법적 절차에 있어서 특별히 아동 및 청소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동 협약 제40조). 검토한 자료(경찰 조서 5번, 검찰 조서 2번)를 보면 경찰 조서 작성에서 3회차에 OOO의 어머니(OOO)를 참여시키고 심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검찰 조서 작성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국선변호사가 재판 과정에 참여하였지만, 어떤 단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력을 받았는지, 동석하여 참여하였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OOO이 미성년자로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 및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과연 타당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원 내지 지원의 소년부에서 담당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가 성인법원으로 이송되어 사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OOO의 경우 소년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성인의 사법적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 만일 그랬다면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를 통해 그렇게 되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아동 및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법적 진전일 수 있습니다. 만일 OOO의 수사 및 재판 등 사법적 절차에서 이러한 조력을 적절하게 받지 못했거나, 혹은 적절한 근거나 과정이 부족했었다면 이는 명백한 아동

권리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후진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아동들의 지위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정책적 관심이나 배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약 15년 전 발생한 사건이고, 그 당시만 해도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척박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무조건적으로 비난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필지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과연 현재에는 아동친화적이고, 아동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소년법의 개정으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이 없는가 하는 점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의 3,4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에서 아동사법행정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증가하는 비행과 높은 아동/청소년 범죄율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를 막기 위한 노력이 처벌 조치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인 아동 전문가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의 우려와 논평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비행의 연령하양화와 흉폭화, 증가에 맞서 10세로 연령기준선을 낮춘 것이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된다.

Ⅲ. 맺는 글

아동이 사법체계와 관련을 갖는 경우에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친화적인 체계를 갖추어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007년 소년법의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진전을 이룬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약 15년 전의 사건을 재심 청구

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적하였던 여러 절차들을 적어도 법적으로 규정에서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 청소년으로 대면되는 우범, 촉범, 및 범죄소년의 증가를 우려하면서, 그들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전략이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소년법의 개정으로 이들을 교화, 선도할 수 있을 것인가? 반드시 이들을 사법체계 내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학교폭력법과 같은 특별법으로 그 가운데 일부를 사법체계가 아닌 교육체계에서 다루고 있지만 보다 포괄적으로 다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경찰, 검찰, 및 법원, 그리고 교정기관을 물론 관련한 복지, 교육, 의료 등 사법체계와 관련하여 아동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되고 있는지? 단지 명문화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처우는 따라가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 대한 이들 아동들의 부모 및 가족, 사법체계 및 관련 체계의 종사자들의 아동인권 감수성은 어느 정도인지? 하는 점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김은경(2007). 21세기 소년사법 개혁과 회복적 사법의 가치. 형사정책연구, 71, 1159

안경옥(2007). 청소년범죄의 형사법적 대책과 검사의 역할. 경희법학, 42, 9-23

안동현, 황준원(2014). 소아법정신의학. IN: 홍강의 등(eds.), 소아정신의학-개정2판, 학지사, 인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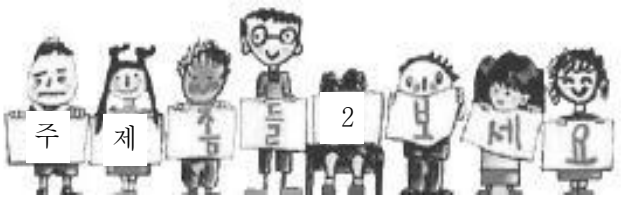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논평

이승현(2010). 소년사법과 보호소년의 인권

이승현(2007). 소년보호이념의 변화경향에 관한 고찰. - 최근 소년법 개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4(4), 131-150

이순래(2007).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형사정책연구, 71, 1047-1080

Erica van der Sloot, Robert Vermeiren(2012). Forensic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IN: IACAPAP e-Textbook of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Geneva, IACAPAP



아동 사법체계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시각

– 일반 논평(2007)을 중심으로 –

최병각 교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동 사법체계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시각
- 일반 논평(2007)을 중심으로 -

최병각 교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들어가는 말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연령이 많든 적든 모두가 평등하게 기본적 인권을 보유한다는 점을 명언하고 있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근간이다.

II.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리협약[1]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조약으로 공포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인 아동에게 차별금지와 최선의 이익을 원칙으로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 등을 인정하고 있다.[2]

우리나라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

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1989).
2) 최병각,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국가인권위원회, 2007;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유엔아동권리협약, 2007;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중심으로, 내일을 여는 책, 1997 참조.

회에 1994년 1차 보고서, 2000년 2차 보고서, 2011년 3·4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심의하여 1996년, 2003년, 2011년 최종 견해를 채택하였다.

소년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제37조, 제39조, 제40조와 베이징규칙(1985년),[3] 리야드지침(1990년),[4] 하바나규칙(1990년)[5], 비엔나지침(1997년)[6] 등의 국제기준에 부합할 것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07년 채택한 일반논평 제10호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7]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다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지도원리와 핵심요소를 살피기로 한다.

Ⅲ. 소년사법의 지도원리와 체계

1. 소년사법의 이념과 지도원리

소년사법제도는 19세기말 이후 많은 국가에서 사법혁신의 일환으로 소년법의 제정과 소년법원의 설립이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등장하였다.[8] 즉, 범죄소년에 대하여 처벌이 아니라 처우를 통한 사회복귀가 강조됨에 따라 전통적인 형벌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제재수단이 개발되었고, 범죄소년뿐만 아니라 범죄

3)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Beijing Rules, 1985).
4)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Riyadh Guidelines, 1990).
5)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Havana Rules, 1990).
6)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Action on Childre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Vienna Guidelines, 1997).
7)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10: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2007(이하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8) Roscoe Pound는 "소년법원의 설립은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이후 사법(administration of justice)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전이다"라고 한다. Pound, R., Guides for Juvenile Court Judges, New York, 1957, 127면.

에 버금가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도 사법적 통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사법적인 기원에 따른 특별예방과 형평법적인 기원에 따른 국친(parens patriae)의 두가지 이념이 소년보호의 법리를 형성하였다.[9]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따르면 소년사법의 운영에 있어 당사국은 아동권리협약 제37조와 제40조에 규정된 소년사법의 근본원리뿐만 아니라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일반원칙을 체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10]

첫째, 차별금지의 원칙이다(협약 제2조). 당사국은 법위반 아동 모두가 평등하게 처우될 것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취약한 아동집단, 예를 들면 거리의 아동,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에 속하는 아동, 가난한 아동, 소녀인 아동, 장애를 가진 아동, 반복적으로 범법하는 아동과 관련하여 일관된 정책의 부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실상의 차별과 불균형에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범법아동의 평등한 처우를 향상시키고 구제, 배상, 보상을 제공하는 규칙, 규정, 또는 의정서의 도입과 더불어 소년사법에 관계하는 전문가의 훈련이 중요하다.[11]

법위반 아동의 다수는 또한 예를 들면 교육이나 노동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차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이전의 범법아동에게 사회에 재통합하려는 노력에 있어 적절한 지원과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내에서 건설적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권리(협약 제40조 제1항)를 강조하는 공공 캠페인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12]

형법이 아동의 행동문제, 부랑, 결석, 가출 기타 심리적 사회경제적 문제의 결과인 다른 행위를 범죄화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흔하다. 소년과 거리아동이 이러한 범죄화의 피해자인 것은 특히 우려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행

9) 소년보호의 법리에 관하여 상세히는 김기두,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14권 제1호, 1973, 7면; 유진식, 소년법, 육법사, 1982, 36-38면.
10)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5.
11)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6.
12)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7.

위 이른바 지위범죄는 성인이 행하면 범죄로 고려되지 않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과 성인을 법아래 평등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위범죄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리야드지침 제56조를 언급한다. 즉, 아동에 대한 낙인화, 피해자화, 범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인이 행하면 범죄로 간주되지도 처벌받지도 않는 어떠한 행동을 소년이 범하였다고 하여 처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3]

더하여 부랑, 거리 돌아다니기, 가출과 같은 행동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이러한 행동의 근본원인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는 아동보호조치의 시행을 통하여 다루어져야 한다.[14]

둘째,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이다(협약 제3조). 소년사법의 운영의 맥락에서 내려지는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의 고려가 되어야 한다.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 발달과 정서적 교육적 필요에 있어 성인과 다르다. 그러한 차이는 법위반 아동의 비난가능성이 적은 근거를 구성한다. 이러한 다른 차이는 분리된 소년사법제도의 이유이고, 아동에 대한 상이한 처우를 요구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호는 예를 들면 억압이나 응보와 같은 형사사법의 전통적 목표가 범법아동을 다룸에 있어 사회복귀와 회복적 사법의 목표에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효과적인 공공안전에 대한 주의에 부응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15]

셋째,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이다(협약 제6조). 아동 각자의 내재적 권리는 소년비행의 예방을 위한 국가적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당사국을 지도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비행이 아동의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기본적 권리는 아동의 발달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소년비행에 대응하는 정책을 결과해야 한다. 사형과 절대적 종신형은 아동권리협약 제37조 a에서 명백히 금지되고 있다. 자유박탈의 이용은 아동의 조화로운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사회에의 재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 제37조 b는 아동의

13)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8.
14)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9.
15)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10.

발달에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고 확보될 수 있도록 체포, 구금, 징역을 포함하여 자유박탈은 최후수단으로만 최단의 적절한 기간동안 사용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16)

넷째, 의사표현의 권리이다(협약 제12조).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아동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소년사법의 모든 단계에서 충분히 존중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소년사법제도에 관계된 아동의 목소리가 개선과 개혁을 위하여 그들의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17)

다섯째, 존엄과 가치의 원칙이다(협약 제40조 제1항). 협약은 법위반아동에 대하여 주어져야 할 처우를 위한 근본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아동의 존엄과 가치에 일치하는 처우. 이 원칙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고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선언 제1조에 규정된 근본적 인권을 반영한다. 존엄과 가치에 대한 천부적 권리는, 아동권리협약 전문이 명백히 언급하고 있는바, 법집행기관과의 최초 접촉에서부터 아동을 다루는 모든 조치의 시행에 이르는 모든 길에서, 즉, 아동을 다루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② 인권과 타인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을 강화하는 처우. 이 원칙은 아동이 유엔헌장에 선언된 이념의 정신에 따라 양육되어야 한다는 전문의 고려와 일치한다. 이는 또한 소년사법제도안에서 아동의 처우와 교육은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의 발달에로 방향지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협약 제29조 제1항 b와 교육목적에 관한 일반논평 제1호). 소년사법의 이 원칙은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에 인정된 공정한 재판의 보장에 대한 전적인 존중과 시행을 요구한다. 소년사법의 주요 인물, 예를 들면 경찰관, 검사, 판사 및 보호관찰관이 이러한 보장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한심한 사례를 가지고 아동이 인권과 타인의 근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으로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16)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11.
17)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12.

③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고 아동의 재통합과 사회에서 건설적 역할의 수행을 증진하는 처우. 이 원칙은 아동을 다루는 전 과정을 통하여 적용되고 준수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전문가가 아동발달, 아동의 동적 지속적 성장, 무엇이 아동의 복지에 적합한지, 아동에 대한 폭력의 형태 등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④ 법위반아동의 처우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폭력이 금지되고 방지될 것을 요구하는 아동의 존엄에 대한 존중.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들은 소년사법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경찰과의 최초 접촉에서부터 미결구금 중, 자유박탈에 선고된 아동을 위한 처우시설에 머무르는 동안에 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그러한 폭력을 방지하고, 폭력행위자를 형사처벌하고, 2006년 10월 총회에 제출된 유엔아동폭력연구 보고서의 권고에 따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18]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공공안전의 유지가 사법제도의 적법한 목표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 목표는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소년사법의 지도적 원칙에 대한 전적인 존중과 실현에 의하여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다.[19]

2. 소년사법의 구성과 체계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원칙과 권리를 충분히 이행하려면 소년사법 운영을 위한 효과적 조직과 종합적인 소년사법제도를 설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20]

우리나라는 1958년 소년법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소년법 제1조), 여기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소년법 제2조). 소년법에 따르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가 범죄행

18)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13.
19)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14.
20)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90.

위를 한 경우에는 형벌이나 형사절차에 있어 19세 이상의 성인범과 달리 특별한 처우를 받게 되고(소년법 제3장), 아울러 소년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1호, 범죄소년). 또한 형사미성년자로서 고유한 의미의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배제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소년법 제4조 제1항 2호, 촉법소년) 심지어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이면 누구나 범죄행위가 없어도 이른바 우범사유와 우범성을 이유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3호, 우범소년). 따라서 소년사법은 성인에 비해 소년에 대한 형벌의 완화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범죄행위가 아니라 반사회성에 기초하여 사실상 형벌권의 대상을 10세 이상의 비행소년에게로 확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년법은 소년의 사법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의 이원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지만, 소년사건이 처음부터 형사사건 또는 보호사건으로 나누어져 각각 별개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진행에 따라 그 성격이 서로 바뀔 수도 있다. 즉, 형사절차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소년법원에 보내져 보호사건으로 될 수도 있고, 소년법원에서 사건을 형사절차로 보내면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다.[21]

이러한 맥락에서 소년사건의 처리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비행소년을 발견한 때에는 소년법원에 통고할 수 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경찰서장은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을 발견하면 직접 소년법원에 송치해야 하지만(소년법 제4조 제2항), 범죄소년을 검거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4조). 검사와 형사법원은 소년사건이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법원에 송치해야 하지만(소년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형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소년법원은 통고・송치된 소년보호사건을 사・심리하여 대상자가 성인으로 판명되거나

21) 때문에 소년사건을 다루는 주체와 단계에 따라 그 사건이 어떠한 기준과 근거에 의하여 보호사건으로 되는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되는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세히는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처리기준: 소년법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를 중심으로", 이한교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0, 505-522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형사법원으로 이송하여 형사절차로 돌려보낼 수 있지만(소년법 제7조, 제49조 제2항, 제51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절차를 진행하여 심리불개시(소년법 제19조), 불처분(소년법 제29조) 또는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으로 처리한다. 소년법원이 보호처분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변경(소년법 제37조)과 취소(소년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및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소년법 제43조)와 재항고(소년법 제47조)가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 우범소년이라 하여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행위시 연령에 따라 범죄소년 또는 촉법소년으로 처리되고 있다. 비행소년과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경찰은 소년사건을 조사·수사하여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보호사건으로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외에 범칙금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고, 훈방[22]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검찰은 기소재량과 선의권[23]을 배경으로 결정전조사(소년법 제49조의2)에 기초하여 구공판·구약식의 기소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소년법원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기소유예를 포함하는 불기소처분으로 종결지을 수 있으며, 따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소년법 제49조의3)를 할 수도 있다.

Ⅳ. 소년사법의 핵심요소와 과제

1. 소년사법의 적용대상

1) 형사책임 최소연령

22) 경찰의 훈방권의 법적 근거에 관한 논의는 김재봉, "소년경찰과 다이버젼", 형사정책, 제17권 제1호, 2005, 38-41면.

23) 선의권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로는 도중진/류병관, "소년법상 선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2006; 서인선, "법원선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의 관계: 최근 소년사법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법조, 2006/1; 김성돈, "우리나라 검사선의주의모델의 개선방안", 저스티스, 제88호, 2005.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에게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최소연령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특정 연령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협약 제40조 제3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의 최소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당사국의 의무라고 이해한다. 최소연령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최소연령 미만의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 아동은 형사절차에서 유죄로 되지 않는다. 최선의 이익에 필요하다면 특별한 보호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범행시 최소연령 이상이고 18세 미만인 아동은 공식적으로 기소되어 형사절차에 부쳐진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와 최종 결과는 협약의 원칙과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24)

베이징규칙 제4조는 최소연령의 시기가 너무 낮은 연령에 고정되지 않을 것과 정서적 정신적 지적 성숙에 관한 사실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2세 미만의 형사책임 최소연령은 국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25)

동시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최소연령을 12세로 인하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14세 또는 16세의 최소연령은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3항 b에 따라 법을 위반한 아동을 아동의 인권과 법적 보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사법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다루는 소년사법제도에 기여한다. 따라서 최소연령 미만의 아동이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을 때 어떻게 처우하는지와 최소연령 이상의 아동에 대한 처우와 동일하게 공정하고 정당한 처우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법적 보장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상세하게 보고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고 있다.26)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최소연령의 예외를 인정하는 관행, 즉 아동의 범죄혐의가 중한 경우 또는 아동이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큼 성숙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형사책임 최소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현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예외를 통하여 더 낮은 연령의 최소연령을 규정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27)

24)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31.
25)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32.
26)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33.
27)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34.

연령에 대한 증명이 없고 아동이 최소연령 이상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동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28]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7(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아(8세 이하)는 형사적 책임이 있는 최저연령의 법적 정의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하고 있다.[29]

우리나라는 14세를 형사책임의 최소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9조). 그러나 14세 미만의 자도 형법을 위반하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사건의 적용을 받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30] 더욱이 2007년의 소년법 개정에서 촉법소년의 하한연령이 12세에서 10세로 인하되었다.

생각건대 보호처분이 가능한 소년연령의 하한을 10세로 인하한 것은 아무래도 아동권리협약이 추구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직은 보호처분제도가 소년의 건전육성의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낙인의 부작용을 무시할 없음에도 통제망의 확대만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소년법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아니라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 근거한 교육적·복지적 접근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1]

2) 소년사법 상한연령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6세 또는 그 이하의 연령의 아동에게만 소년사법규정을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국가 또는 16세·17세 아동이 성인 형사범으로 처리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국가에 대하여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소년사법규정을 비차별적으로 전면 적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28)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35.
29)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7.
30) 14세 미만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책임 최소연령을 현행 14세에서 굳이 12세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는 박찬걸,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 제도와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제22호, 2013, 215면.
31) 아동복지의 법체계와 그 적용영역에 비행/범죄소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문선화, "비행/범죄청소년을 위한 아동복지법의 개선방향", 한국아동복지학, 제7호, 1998, 271면.

나아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소년사법규정을 18세 이상 대개는 21세까지 일반적으로 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당사국들[32]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33]

우리나라는 1953년 제정된 소년법부터 줄곧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2007년 개정 소년법에서 상한연령은 19세로 하한연령은 10세로 인하하였다.

생각건대 소년사법 상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인하한 것은 아동권리협약의 명문 규정을 직접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협약의 취지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어긋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19세를 넘어서도 "소년의 특성", 즉 "소년의 인격은 형성 도중에 있어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음"[34]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소년법이 마련하고 있는 보호처분은 물론 소년감경(소년법 제60조 제2항), 부정기형(소년법 제60조 제1항), 가석방 완화(소년법 제65조), 소년전과 배제(소년법 제67조), 구속제한(소년법 제55조 제1항), 분리수용(소년법 제55조 제2항) 등의 혜택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3) 우범소년의 폐지

우리나라는 형법위반의 범죄행위가 없이도 우범소년으로 소년보호사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우범소년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구하고 2007년 개정된 소년법은 우범사유만 부분 수정한 채 우범소년을 존치하고 있다.

생각건대 비록 비행·범죄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조항[35]을 통한 "걸면 걸리는" 식의 통제방안은 적절하지 않

32) 독일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Jugendliche)에 대한 소년법원법(JGG)의 규정 일부를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청년(Heranwachsende)에게도 적용하고 있다(JGG 제105조). Schaffstein, F./Beulke, W., Jugendstrafrecht, 10.Aufl., Stuttgart: Verlag W.Kohlhammer, 1991, 56면.

33)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38.

34) 대판 1997.2.14. 96도1241. 동판결에 대한 평석은 최병각, "소년감경의 적용요건과 소송법적 효과", 형사법연구, 제12호, 1999, 463-484면.

35) 심헌섭, "형법과 일반조항", 손해목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3, 579-597면.

다. 즉, 우범사유가 "성벽"이란 매우 모호한 개념이나 "정당한"과 같은 규범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고, 아울러 우범성은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라는 불확정적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확장적 일반조항으로 말미암아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36] 뿐만 아니라 우범소년을 공식적으로 사법처리하면 낙인효과로 말미암아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큰 부작용만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37] 아울러 검사나 형사법원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범죄사실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소년사건을 손쉽게 처리하는 편법으로 우범소년임을 내세워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통로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38] 나아가 우범사유 자체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소년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39] 따라서 국친사상을 내세워 소년법원이 우범소년을 맡아서 처리하기보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우범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40]

---

36) 배종대, "형법의 목적과 소년형벌의 효율성 검토: 사형, 자유형(부정기형), 벌금형을 중심으로", 법무부, 청소년범죄연구, 제4집, 1986, 13면; 강완구, "우리나라 소년심판제도상의 제문제", 법원행정처,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18집, 1983, 676면.

37) 우범소년까지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전체주의적 경향, 즉 행위자형법적 사고에 바탕한 범죄방지에의 사회적 관심이 극단화된 모습이라는 견해는 임상규, "소년범죄의 합리적 처리방안", 형사법연구, 제17호, 2002/여름, 241면.

38) 김완섭, "소년법상의 문제점", 사법연수원, 소년범에 관한 제문제, 법관연수자료, 1979, 517면.

39) 미국의 경우 1974년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의 제정에 따라 신분비행소년에 대한 시설내처우를 배제하기 시작했고, 몇몇 주는 신분비행소년을 소년법원의 관할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있다. Bartollas, Juvenile Deliquency, 2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0, 9-10면; McShane/Williams III(ed.), Encyclopedia of Juvenile Justice, Sage Publications, 2003, 357면.

40) 정희철, "비례성원칙과 보호처분: 해석론과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2007, 206면; 이진국, "소년보호대상의 범위에 관한 형사정책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2006, 108면; 이재연/이용교/강현아,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2005, 298면; 오영근, 소년사법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02, 10면; 점승헌, "우범소년의 우범사유와 우범성", 소년법연구, 제1호, 2002, 328-329면. 그러나 우범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는 최종식, "우범규정의 재해석", 소년법연구, 제2호, 2007, 92-93면.

2. 다이버전과 사회내처우(협약 제40조 제3항 b, 제4항)

1) 개입과 다이버전

법위반 아동에 대하여 2종류의 개입이 사용된다. 사법절차외의 조치와 사법절차내의 조치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의 인권과 법적 보장이 충분히 존중되고 보호되기 위한 최선의 보호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41]

법위반 아동은 재범자를 포함하여 재통합과 사회내 건설적 역할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처우받을 권리를 가진다(협약 제40조 1항). 체포, 구금, 징역은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의 복지에 적합하고 환경과 범행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소년을 처우하는 광범위한 범위의 수단을 개발·시행하는 것이 소년사법의 종합적 정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42]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3항에 따라 당사국은 적절하고 바람직한 경우 사법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법위반 아동을 다루는 수단을 증진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아동범이 단지 사소한 범죄를 저질러 형사 또는 소년사법절차로 보내지고 있는데, 오히려 공식적 사법처리를 회피하여 대안적 사회적 서비스에 위탁하는 다이버전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43]

다이버전은 사소한 범죄나 초범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다이버전은 낙인화를 피할 수 있고, 아동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며, 공공안전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사법비용을 절감한다.[44]

당사국은 소년사법제도의 핵심 부분으로 다이버전 수단을 채택해야 한다. 다이버전에서도 인권과 법적 보장이 존중 보호되어야 한다.[45]

다이버전 조치의 정확한 본질과 내용은 당사국이 재량적으로 결정한다. 그럼에도 사회봉사, 사회사업가나 보호관찰관에 의한 감독과 지도, 가족회의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포함하는 다른 형태의 회복적 사법과 같은 다양

41)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22.
42)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23.
43)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24.
44)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25.
45)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26.

한 사회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음은 분명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다음을 강조한다. ①다이버젼은 아동의 범죄혐의가 확인되고, 아동이 협박이나 강요 없이 자유로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아동의 자인이 차후의 법절차에서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아동은 자유로이 자발적으로 다이버젼에 서면으로 동의를 주어야 하는바, 동의는 조치의 본질, 내용 및 기간과 조치에 협력하거나 이행을 완수하지 못한 때의 결과에 대한 적절하고 특별한 정보와 기초해야 한다. 부모의 개입을 강화하는 시각으로 당사국은 특히 아동이 16세 미만이면 부모의 동의를 요구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③법률은 어떤 사건에 다이버젼이 가능한가에 관한 특별 규정을 포함해야 하고, 경찰, 검사 다른 기관의 다이버젼 결정할 권한이 규제되고 심사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하다. ④아동은 당국이 제공하는 다이버젼의 적절성과 바람직성, 그리고 수단의 심사 가능성에 관해 법적 조력이나 다른 적절한 조력을 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⑤아동의 다이버젼 완수는 사건의 명확하고 최종적인 종결을 결과해야 한다. 비밀기록이 행정적 심사 목적을 위해 유지될 수 있지만 "범죄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하고, 이전에 다이버젼된 아동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안된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은 배타적으로 제한된 기간, 예를 들면 최대 1년안에 법위반 아동을 다룰 권한이 있는 당국에게만 주어져야 한다.[46]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검사에 의한 처분전조사(소년법 제49조의2)와 조건부기소유예(소년법 제49조의3)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다이버젼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46)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27.

2) 구금과 사회내처우

사법절차가 개시되면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동시에 소년사법제도는 법위반 아동을 사회적·교육적 수단을 사용하여 다툴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자유박탈을 특히 미결구금을 최후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절차의 처분단계에서 자유박탈은 최후수단으로 최단기간 사용되어야 한다(협약 제37조 b). 지도·감독 명령, 보호관찰, 사회내 모니터링, 주간보고센터, 구금으로부터 조기 석방 등의 수단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잘 훈련된 보호관찰 조직을 가져야 한다.[47]

재통합은 낙인화, 사회적 소외, 부정적 공표와 같은 아동의 사회에 대한 전면 참여를 방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법위반 아동을 재통합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다루기 위해 아동이 사회의 전면적 건설적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48]

이미 1995년 형법개정으로 선고유예시 보호관찰,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도입한 것에 이어 2007년 소년법 개정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에 있어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독립처분으로 변경하고 각각의 보호처분을 병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보호관찰의 부가처분으로 대안교육·상담교육·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게다가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49]까지 새로이 도입하였다. 실무에서도 보호관찰소의 조직확장에서 드러나듯 사회내처우를 충실히 시행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47)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28.
48)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29.
49) 부모교육프로그램은 부모를 위한 사회사업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김지선,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73면.

3. 적법절차의 보장(협약 제40조 제2항 b)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은 형법위반의 혐의를 받거나 기소된 모든 아동이 공정한 처우와 재판을 받을 것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목록의 권리와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에서도 발견되고, 유엔인권위원회의 1984년 일반논평 13(사법운영)[50] 에서도 상세히 언급되고 있다. 권리와 보장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조건은 소년사법의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들이다.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든 보장은 최소기준인 것이고, 당사국은 보다 높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51]

1) 무죄추정(협약 제40조 제2항 b i)

무죄추정은 법위반 아동의 인권보호에 근본적이다. 이는 아동에 대한 기소의 입증부담이 검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 위반의 혐의를 받는 아동은 의심의 혜택을 누리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된 경우에만 유죄이다. 아동은 무죄추정에 따라 처우될 권리를 가지며, 재판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 것이 모든 공적 당국의 의무이다. 당사국은 무죄추정이 실무에서 존중되고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발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 미성숙성, 두려움 기타 다른 이유 때문에 아동은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당국은 합리적 의심없는 유죄의 증거 없이 아동을 유죄라고 가정하지 않아야 한다.[52]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53]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서도

50)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13: Administration of Justice, 1984
51)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40.
52)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42.
53) 피의자에게도 당연히 무죄추정의 권리가 인정된다. 헌재 2005.5.26. 2001헌마728; 헌재 1992.1.28.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307조 제2항에서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소년법은 제32조에서 "보호처분을 할 필요"만 인정되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무죄추정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생각건대 "보호처분을 할 필요"는 당연히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음" 내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사실의 인정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중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54] 다시 말해서 비행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비행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2) 피의사실의 통지와 법적 조력(협약 제40조 제2항 b ii)

모든 아동은 신속하게 직접 피의사실을 통지받을 권리를 가진다. "신속하게 직접"이라 함은 "될 수 있는 한 빨리"를 뜻한다. 검사나 판사가 아동에 대한 사법처리를 처음으로 개시하는 때를 말한다. 또한 당국이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아동은 이러한 접근을 정당화할 수 있는 혐의에 대하여 통지받아야 한다. 이는 법적 보장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요구의 일부이다. 아동은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통지되어야 한다. 이는 공식적 법률용어를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는 것을 요구한다.[55]

아동에게 공식문서를 제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구두 설명이 종종 필요하다. 당국은 구두설명을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조력자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아동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당국(경찰, 검사, 판사)

91헌마111.

54) 형사소송법의 준용여부와 관련하여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65-66면 참조.

55)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47.

의 책임이다.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 대한 정보 규정이 아동에 대한 통지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동과 부모 모두가 협의와 가능한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56]

아동은 방어의 준비와 발표에 있어서 법적 또는 다른 적절한 조력을 보장받아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반드시 법적 조력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적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력을 어떻게 제공하는가는 당사국의 재량이지만[57]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법적 조력, 전문 법률가나 준전문가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사회사업가와 같은 다른 적절한 조력은 가능하지만, 소년사법 절차의 다양한 법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하고 법위반 아동과 일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58]

아동과 그 조력자는 방어준비를 위한 적절한 시간과 시설을 가져야 한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3항 b). 아동과 조력자 간의 서면 또는 구두의 의사소통은 비밀이 충분히 존중되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협약 제40조 제2항 b 7호), 아동의 권리는 사생활과 통신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협약 제16조).[59]

우리나라는 헌법 제12조 제5항 1문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72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제88조에서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제200조의5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

56)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48.
57)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소년사법제도와 소년변호제도에 대하여는 Miller-Wilson, L.S./Puritz, P., An Assessment of Access to Counsel and Quality of Representation in Delinquency Proceedings, ABA, 2002 참조.
58)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49.
59)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50.

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들 규정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09조).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 제12조 제5항 2문에서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피의자·피고인을 체포·구속한 때에는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87조, 제200조의6, 제209조).

이와 같이 현행 법제에 따르면 체포·구속되는 당사자는 물론 그 변호인이나 가족에게도 피의사실에 더하여 체포·구속이유와 변호인 선임가능성까지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년이 형사사건으로 체포·구속되는 경우에는 통지대상과 통지내용만이 아니라 통지방식에도 주의하여 친절하고 온화하게 그리고 알기쉽게 통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년이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특히 동행영장(소년법 제16조)이나 임시조치로서의 시설위탁(소년법 제18조)이 집행되는 경우에도 비행사실과 국선보조인의 선정 등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단서에서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제30조 제1항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제2항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비롯하여 일정한 경우에 영장심사나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01조의2 제8항, 제214조의2 제10항, 제283조).[60] 또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재판참여법")에

60)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적부심사의 청구를 불문하고 헌법 제12조 제4항(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따른 국민참여재판에서도 필요적 국선변호가 마련되었다(형사재판참여법 제7조). 아울러 법률구조법에 따라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조인(소년법 제17조)이 변호인의 역할을 한다. 2007년 개정된 소년법은 국선보조인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는 바,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거나 그 밖에 소년부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소년법원이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소년법 제17조의2).

생각건대 소년보호절차에서 국선보조인의 자격[61]을 변호사에 한하지 아니한 것은 소년비행에 관한 지식과 소년선도에 관한 열의를 갖춘 소년문제의 전문가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62]

3) 공정·신속한 재판(협약 제40조 제2항 b iii)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3항 1문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3항 2문에서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법관을 비롯하여 법원사무관 등과 통역인의 제척, 기피, 회피를 규정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25조), 형사재판참여법도 배심원에

리)에 부합되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최병각,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9호, 1993.9, 46-47면.

61) 캐나다의 경우 소년을 위한 국선변호인은 반드시 변호사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성인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캐나다 소년법 제11조). Platt, Young Offenders Law in Canada, Toronto: Butterworths, 1989, §13.13-§13.35.

62) 최병각, "소년사법과 변호인·보조인", 박재윤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2, 463-464면.

대한 제척과 기피를 규정하고 있다(형사재판참여법 제19조, 제28조, 제30조). 그런데 소년보호절차에서 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년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를 인정할 것인가 문제이다.

생각건대 소년심판의 경우에도 적법절차의 원칙(헌법 제12조 제1항)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재27조 제1항)에 비추어 재판의 공정성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년심판규칙의 회피에 관한 규정은 제척·기피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지방법원 합의부는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고(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가정법원 합의부는 가정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에 대한 심판권을 가진다(법원조직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소년, 보호자 또는 보조인은 소년법원 판사에게 심리의 공평을 해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대하여 그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63] 이러한 맥락에서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법원판사를 비롯하여 소년조사관이나 법원사무관 등에 대하여 제척·기피제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진술거부권과 증인신문권(협약 제40조 제2항 b ⅳ)

이는 우선 자명하게 자인이나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 잔혹, 비인간적 굴욕적 처우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전적으로 불가함을 의미한다. 그러한 자인이나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문금지협약 제15조).[64]

아동을 자백이나 자기부죄 진술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보다 덜 폭력적인 방법이 많이 있다. "강요된" 이라는 용어는 보다 광범위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물리적 강제력이나 다른 명백한 인권위반에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아

63) 일본의 경우에도 소년법에는 제척·기피·회피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소년심판규칙에 회피제도만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동경고등재판소는 1989.7.18. 결정에서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측에게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권을 인정하였고, 복강가정재판소도 1989.11.20 결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판시했다. 高田昭正, "少年保護事件における裁判官忌避の問題", 刑法雜誌, 제33권 제2호, 1993, 325-326면.

64)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56.

동의 연령, 아동의 발달, 신문의 기간, 아동의 이해부족, 미지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구금 가능성의 암시 등이 아동을 진실이 아닌 자백으로 이끌 수 있다. "우리에게 진실된 이야기를 하면 집에 갈 수 있다"는 보상이 약속되거나 가벼운 제재나 석방이 약속되면 훨씬 더 그럴 수 있다.65)

심문받는 아동은 법적 대리인이나 다른 적절한 대리인에 대한 접근을 가져야 하며 심문중 부모의 동석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증거가 전체 상황에서 자발적이고 강요된 것이 아니며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신문기법에 대한 독립적 검증이 있어야 한다.66)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은 무기평등원칙이 소년사법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신문하고 신문받을"이란 용어는 특히 탄핵재판과 규문재판간에 구분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규문재판에서 피고인이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종종 허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동에게 증인을 신문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67)

우리나라는 헌법 제12조 제2항 후단에서 "모든 국민은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8) 형사소송법은 제148조에서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283조의2 제1항에서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2항, 제266조의8 제5항). 이에 그치지 않고 형사소송법은 제244조의3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심문하기 전에 첫째,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진술을 하지 아

65)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57.
66)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58.
67)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59.
68)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의 근거의 하나로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들기도 한다. 대한민국 정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 최초 보고서, 1994, 154면.

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셋째,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넷째,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진술거부권의 포기를 통한 피고인의 증인적격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69]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증인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63), "증인을 신문"할 수도(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항), "증인과 대질"할 수도 있고(형사소송법 제162조 제3항), 증인신문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96조 제1항). 아울러 참고인진술조서, 참고인진술서, 증인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인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제313조 제1항, 제314조, 제316조), 이 또한 결국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70]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과 증인신문권의 법적 보장장치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나 실무에서 소년이 진술거부권과 증인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년에게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청된다.

5) 상소권(협약 제40조 제2항 b Ⅴ)

아동은 유죄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로 부과된 처분에 대하여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상소권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만 제한되지 않는다.[71]

몇몇 당사국이 이 규정에 대하여 유보를 하는 것은 상소권을 중대한 범죄나 구금형에만 제한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보철회를 권고한다.[72]

69) 헌재 2001.11.29. 2001헌바41.
70) 헌재 2005.12.22. 2004헌바45.
71)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60.
72)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61.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상소권에 관한 조항을 유보하였다. 이는 우리 헌법 제110조 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에 의하여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심제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고,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그럼에도 상소권 조항의 유보가 아동의 인권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생각건대 소년이 형법위반의 혐의를 받아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면 절차의 진행에 따라 여러 가지의 불이익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아동권리협약에서 상소권을 보장하는 근본취지에 충실하자면 아동이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의 모든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상소권 행사의 방법으로서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원이 형사처분의 필요를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이른바 실질적 송검결정(소년법 제7조 제1항, 제49조 제2항)이 있는 사실상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매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달리 불복할 방법이 없다. 아동권리협약에 가입조차 아니한 미국에서도 형사법원으로의 이송결정에 대하여 불복수단을 마련하고 있다.[73] 또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소년법 제18조 제1항 3호)에 대하여도 그 변경을 신청하는 외에 상급법원에 그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 길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74]

6) 통역의 지원(협약 제40조 제2항 b Ⅵ)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통역이 제공되어야 한다. 모국어의 사용과 이해가 성인의 그것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통역자는 아동과 함께 일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75]

73) Kent v. United States, 383 U.S. 541(1966) 참조.
74)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 제1호, 1996, 206면. 보통항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최영승,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구현", 소년보호연구, 제24호, 2014, 346면.
75)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62.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언어장애 또는 다른 장애를 가진 아동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면서, 아동권리협약 제23조의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보호에 상응하여 잘 훈련된 전문가에 의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력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76]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180조에서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제181조에서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통역을 위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역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통역료 등의 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와 같이 통역의 지원은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보장되고 있다. 소년보호절차에서도 통역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준용되고(소년법 제26조 제2항), 나아가 국선보조인을 포함한 모든 보조인이 절차진행에 대한 아동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7) 사생활의 존중(협약 제16조, 제40조 제2항 b Ⅶi)

사생활의 존중은 아동권리협약 제16조의 사생활보호권을 반영한다. 부적절한 공개나 낙인과정에 의한 해악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공적 당국은 아동의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언론에 공표하는 것을 삼가야 하고 매우 예외적인 사건에만 제한해야 한다. 언론공표를 통해 아동이 확인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수단을 취해야 한다. 언론인이 공표하면 징계나 형사제재를 받아야 한다.[77]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법위반 아동에 대한 법원 심리가 비공개로 이루어질 것을 권고한다. 이 규칙에 대한 예외는 매우 제한되고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 선고는 법원에서 공개리에 선언되어야 하고 아동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 나아가 사생활의 권리는 아동범 기록이

76)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63.
77)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64.

엄격히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고 수사나 재판에 직접 관련된 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낙인과 예단을 피하기 위해 아동범기록은 성인절차에서 사용되지 않아야 하고(베이징규칙 21.1와 21.2) 이후 양형을 가중하는데 사용되지도 않아야 한다.[78]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범죄기록으로부터 18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아동 이름을 자동삭제하거나 또는 일정한 제한된 심각한 범죄에서 아동의 요청의 의하여 일정한, 예를 들면 2년이내 재범하지 않는 조건으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79]

우리나라는 소년법 제24조 제2항 본문에서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소년부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심리의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소년형사사건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며, 소년 피고인에게는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3항 2문)가 보장된다. 하지만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결의 비공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지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리의 비공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런데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소년이라고 하여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실무관행이 따로 형성되고 있지는 않다.

소년보호사건이나 소년형사사건에 대하여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고, 이러한 보도금지를 위반한 신문 편집인・발행인, 출판물 저작자・발행자, 방송 편집인 및 방송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소년법 제68조). 또한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78)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66.
79)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 67.

된다(소년법 제70조).

우리 소년법은 제32조 제5항에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제67조에서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년이 범죄를 이유로 보호처분이나 형선고를 받더라도 장래에는 더 이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소년시절의 비행전력은 추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남길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경찰에서 작성·관리하는 수사자료표가 문제이다. 수사자료표란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 사항, 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선고결과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즉결심판대상자와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를 제외한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작성된다(형실효법 제2조 4호, 제5조 제1항). 2002년의 형실효법 개정에서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고, 전과기록에서 수사경력자료를 제외하며,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80] 소년기록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왜냐하면 불기소, 무죄, 면소, 공소기각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10년, 5년이 경과하거나 즉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면서도 소년부송치나 불처분으로 처리된 경우의 수사경력자료 삭제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07년 형실효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년부송치와 보호처분으로 처리된 사건에 대하여 범죄수사나 재판, 형·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 치료감호·보호관찰·보안관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3년 경과후 수사경력자료의 회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의2).

그러나 생각건대 즉결심판대상자는 수사자료표의 작성에서도 제외되는 반면, 불기소 또는 소년부송치로 처리된 소년사건은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되고,

80) 황태정, "전과기록의 이용·관리와 형실효법의 문제점", 형사정책, 제18권 제2호, 2006, 561면.

벌금형이 선고된 소년사건은 전과기록에 포함되는 범죄경력자료로 관리된다. 보호처분조차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한 소년법 제32조 제6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소년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사자료표의 작성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소년부송치로 처리하여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그 즉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대법원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하고,[81]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 허용된다고 한다.[82]

그러나 생각건대 소년시절에 저지른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다음에도 그 사실을 또다른 범죄에 대한 형가중의 사유로 삼는 것은 아동권리협약과 베이징규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소년법 제67조의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소년법과 소년보호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라 하겠다. 소년부송치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소년법의 관련 규정을 보다 확실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83]

V. 맺음말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제와 조직은 갖추고 있지만, 각 기관마다 예산과 인력의 부족이 문제되고 상호 연계도 원활하지 못하다. 조직의 측면에서 소년사법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소년사건처리

81) 대판 1990.6.26. 90도887; 대판 1986.7.8. 86도963.
82) 대판 1990.10.16. 90도1813. 이를 반대하는 견해는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2014, 592면.
83) 최병각, "소년보호처분의 전과와 형가중",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09, 993면.

의 모든 단계마다 사건처리의 효율성보다 대상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완구, “우리나라 소년심판제도상의 제문제”, 법원행정처,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18집, 1983

김기두,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14권 제1호, 1973

김성돈, “우리나라 소년법의 검사선의주의모델의 개선방안”, 저스티스, 제88호, 2005

김완섭, “소년법상의 문제점”, 사법연수원, 소년범에 관한 제문제, 법관연수자료, 1979

김재봉, “소년경찰과 다이버젼”, 형사정책, 제17권 제1호, 2005

김지선,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 제1호, 1996

대한민국 정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 최초 보고서, 1994

도중진/류병관, “소년법상 선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2006

문선화, “비행/범죄청소년을 위한 아동복지법의 개선방향”, 한국아동복지학, 제7호, 1998

박찬걸,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제22호, 2013

배종대, “형법의 목적과 소년형벌의 효율성 검토: 사형, 자유형(부정기형), 벌금형을 중심으로”, 법무부, 청소년범죄연구, 제4집, 1986

서인선, “법원선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의 관계: 최근 소년사법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법조, 2006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2014

심헌섭, “형법과 일반조항”, 손해목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3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을 중심으로, 내일을 여는 책, 1997

오영근, 소년사법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02

유진식, 소년법, 육법사, 1982

이재연/이용교/강현아,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2005

이진국, “소년보호대상의 범위에 관한 형사정책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2006

임상규, “소년범죄의 합리적 처리방안”, 형사법연구, 제17호, 2002

점승헌, “우범소년의 우범사유와 우범성”, 소년법연구, 제1호, 2002

정희철, “비례성원칙과 보호처분: 해석론과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2007

최병각,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9호, 1993

최병각, “소년감경의 적용요건과 소송법적 효과”, 형사법연구, 제12호, 1999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처리기준: 소년법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를 중심으로”, 이한교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0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최병각. “소년보호처분의 전과와 형가중”,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09

최병각, “소년사법과 변호인・보조인”, 박재윤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2

최병각, “소년사법에서의 소년보호”, 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2007

최병각,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국가인권위원회, 2007

최영승,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구현”, 소년보호연구, 제24호, 2014

최종식, “우범규정의 재해석”, 소년법연구, 제2호, 2007

황태정, “전과기록의 이용・관리와 형실효법의 문제점”, 형사정책, 제18권 제2호, 2006

高田昭正, “少年保護事件における裁判官忌避の問題”, 刑法雜誌, 제33권 제2호, 1993 Bartollas, Juvenile Delinquency, 2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0

Davidson, H., "Children's Rights and American Law: A Response to What's Wrong with Children's Rights", 20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69,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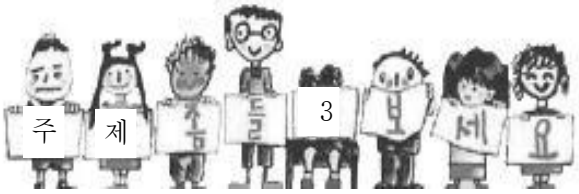
McShane/Williams III(ed.), Encyclopedia of Juvenile Justice, Sage Publications, 2003

Miller-Wilson, L.S., Pennsylvania: An Assessment of Access to Counsel and Quality of Representation in Delinquency Proceedings, ABA, 2002

Platt, Young Offenders Law in Canada, Toronto: Butterworths, 1989

Pound, R., Guides for Juvenile Court Judges, New York, 1957

Schaffstein, F./Beulke, W., Jugendstrafrecht, 10.Aufl., Stuttgart: Verlag W.Kohlhammer, 1991



유럽 연합의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 그 의미 탐색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친화 사법체계 연구회

Guidelines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Child-Friendly Justice



2014.04.025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친화사법제도 연구회

발표 : 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

한국아동권리학회
The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서문

내 앞에서 걷지 마세요 ; 나는 따라가지 않아요.

내 뒤에서 걸어가지 마세요 ; 나는 안내하지 않아요.

내 옆에서 걸어요. 그리고 나의 친구가 되세요.

➢ 오늘날의 아동

이혼, 입양, 이주, 폭력, 등 어떻게든 사법제도에 맞닥뜨리게 되는 아동들

➢사법제도가 아동에게 친근한가?

전반적으로 아동들은 불신,
위협적인 세팅, 연령에 적절한 정보와 설명의 결핍, 가족에 대한 취약한 접근,
너무 오래 혹은 짧게 진행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The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서 문



➢ 유럽위원회는 사법체계가 항상 어떤 아동이든, 그 아동이 무슨 일을 했던지 상관없이 아동에게 친근하도록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

"친구는 너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며, 너를 신뢰하고 네가 신뢰하여야 하며, 네가 말한 것을 경청하고 너도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너를 이해하고 네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친구는 또한 네가 잘못되었을 때 너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며 네가 해결방법을 찾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옆에 서 있어야 한다. 아동친화적 사법체계는 이러한 이상들이 그대로 실현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아동친화적 사법체계는 절대로 아동보다 앞서 걸어서는 안되며 아동을 뒤에 남겨두어서도 안됨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The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이유



➢ 반복적인 인터뷰, 위협적인 세팅과 절차, 차별
그러한 행동의 과잉으로 인하여 이미 심한 고통을 겪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정신적 외상과 상처 증가

•유럽인권협약(ECHR)은 60주년을 맞이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은 20주년을 기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현실은 아동권리가 여전히 자주 침해되고 있음

➢국가 단위의 여러 법적 제도가 존재하지만,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

• 아동관련 실무자들 효과적인 지침 요구

영국에서 10세 V와 T 2명의 남아가 2세 아이를 폭행, 살해한 사건

➢사법체계 가이드라인
사법체계에 의한 2차적 피해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협동적 다원적 작업과, 통합적인 시각, 민사, 행정, 형사영역에서 아동에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The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이유

➢ 비구속적 도구

- 관련 원칙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도구에서 발췌하였을 경우 조건적 문구 "~해야 한다" 라는 표현사용

➢ 가이드라인은 원칙의 선언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구속력 있는 기준의 실행과 발전을 위한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아동권리를 논의하게 하고 회원국들이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도록 격려

➢법적으로 강제적인 특성 없음. 가이드라인은 단지 아동들의 견해와 필요를 다루는 방법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추진과정

➢ 17명의 전문가 그룹(민사법, 행정법, 형사법, 인권법) 구성

- 지리적 위치와 성별 고려
- 판사, 변호사, 검사, 학자, 심리학자, 경찰, 사회복지사, 회원국의 정부대표자를 포함하여 많은 전문 분야의 종사자들로 구성

➢ 2009년 10~ 2010년 5월 초안작업

➢ 2010.10.11-14 지침서 및 지침 해석이 총회에 상정
(2010.11월 각료회의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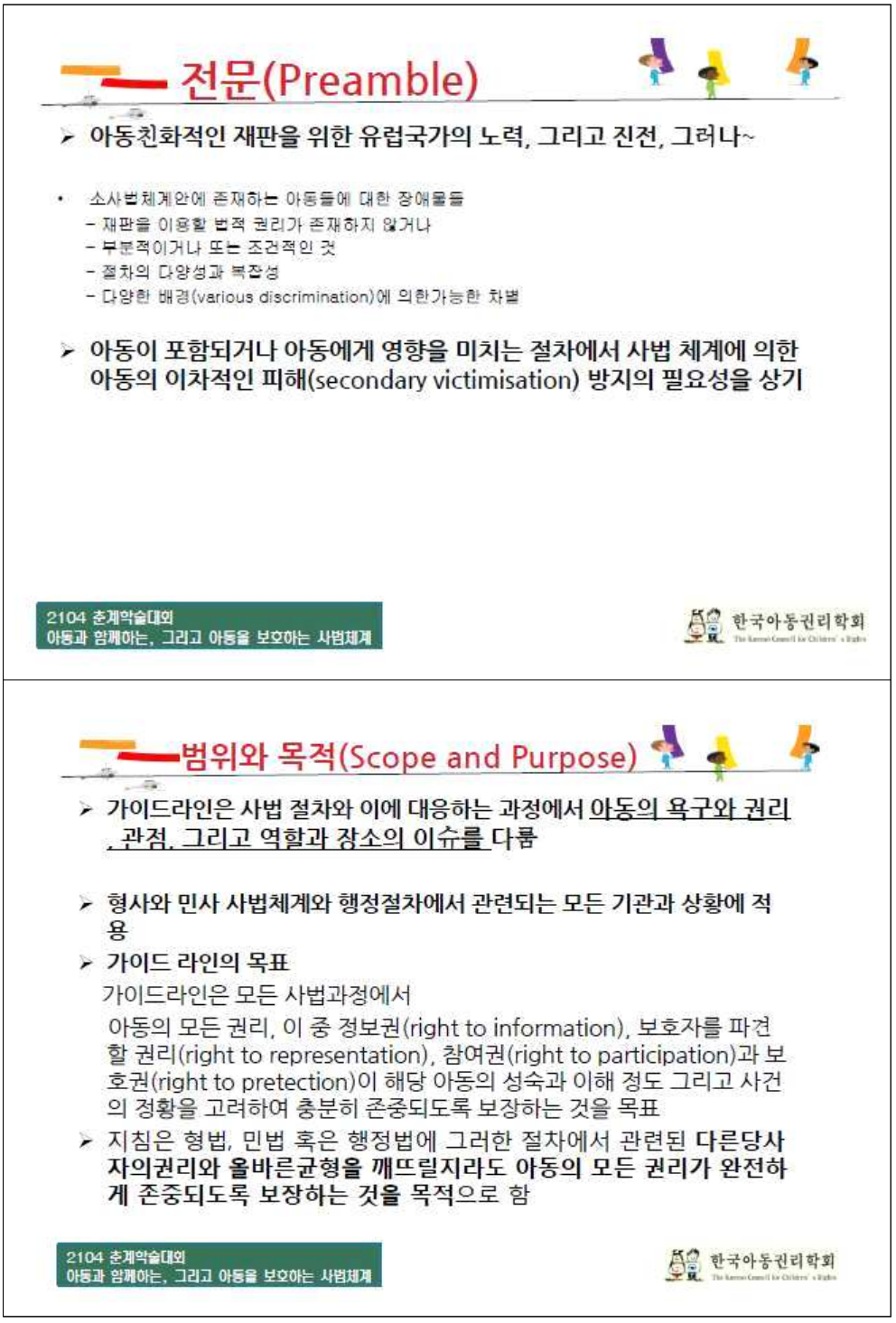
➢ 관련자 의견수렴

➢아동청소년 의견수렴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추진과정
➢1098회 차관 회의에서 2010년 11월 17일 채택
(Asopted by the Committee of Ministers on 17 November 2010 at the 1098th meeting of the Ministers' Deputies))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제 1부
유럽평의회의 각료회의의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지침
Guidelines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child-friendly justice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전문(Preamble)
아동친화적인 재판을 위한 유럽국가의 노력, 그리고 진전, 그러나~
• 소사법체계안에 존재하는 아동들에 대한 장애물들
– 재판을 이용할 법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 부분적이거나 또는 조건적인 것
– 절차의 다양성과 복잡성
– 다양한 배경(various discrimination)에 의한가능한 차별
아동이 포함되거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서 사법 체계에 의한 아동의 이차적인 피해(secondary victimisation) 방지의 필요성을 상기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범위와 목적(Scope and Purpose)
가이드라인은 사법 절차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욕구와 권리, 관점, 그리고 역할과 장소의 이슈를 다룸
형사와 민사 사법체계와 행정절차에서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 상황에 적용
가이드 라인의 목표
가이드라인은 모든 사법과정에서
아동의 모든 권리, 이 중 정보권(right to information), 보호자를 파견할 권리(right to representation), 참여권(right to participation)과 보호권(right to pretection)이 해당 아동의 성숙과 이해 정도 그리고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
지침은 형법, 민법 혹은 행정법에 그러한 절차에서 관련된 다른당사자의권리와 올바른균형을 깨뜨릴지라도 아동의 모든 권리가 완전하게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정의(Definitions)

- "아동(a child)"은 18세 이하
- "부모(a parent)"는 국법에 따라 부모의 책임을 갖는 사람(들)을 의미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더 이상 부모의 책임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 이는 후견인(guardian) 또는 지정된 법적 대리인이 됨
- "아동-친화적 재판(child-friendly justice)"은 아래에 정리된 원칙들을 유념하고 아동의 이해와 성숙수준 그리고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며 달성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에서 모든 아동 권리의 효과적 이행과 존중을 보장하는 사법 체계를 의미.

- 적법한 절차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due process),
- 절차에 참여하고 알 권리(the right to participate in and to understand the proceedings),
- 가족의 삶과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 위엄과 존중받을 권리(the right to integrity and dignity)를 존중하면서,

  - 접근가능한(accessible),
  - 연령에 적절한(age approproate),
  - 신속하고(speedy),
  - 성실하게(diligent), 아동의 권리와 욕구에 초점을 두는 사법체계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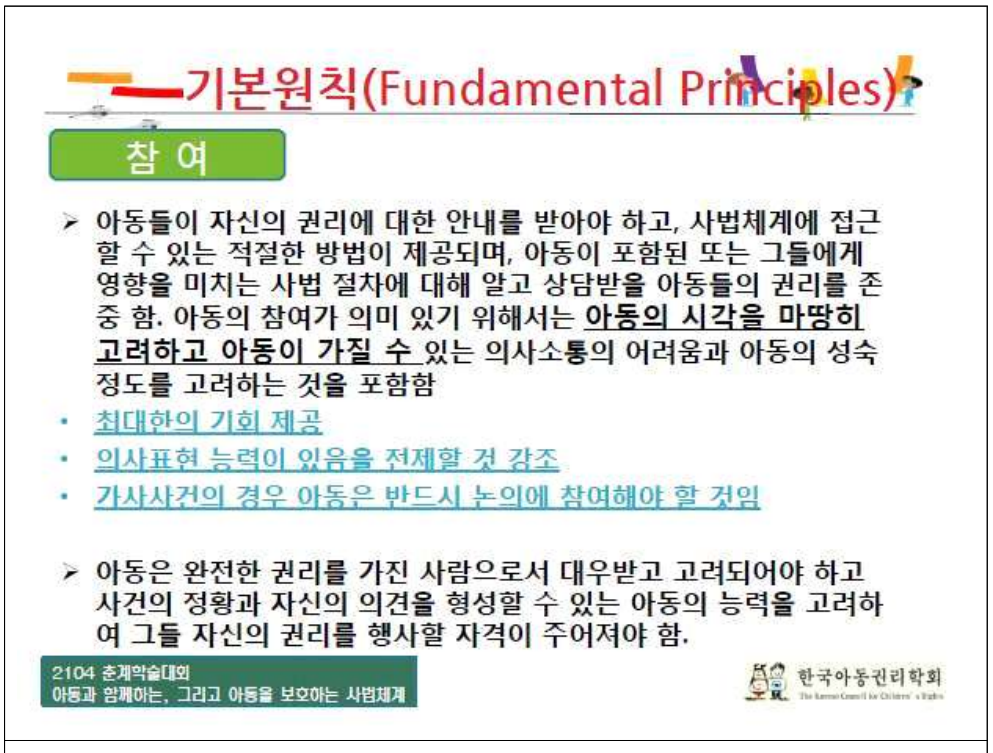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 가이드라인은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판례법과 서두에서 언급한 법률 문서들(instruments)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들을 기반으로 함

- 이러한 원칙들은 이후 다루어질 내용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가이드라인의 모든 장에서 적용 됨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참 여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사법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제공되며, 아동이 포함된 또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 절차에 대해 알고 상담받을 아동들의 권리를 존중 함. 아동의 참여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아동의 시각을 마땅히 고려하고 아동이 가질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아동의 성숙 정도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함
최대한의 기회 제공
의사표현 능력이 있음을 전제할 것 강조
가사사건의 경우 아동은 반드시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임
아동은 완전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우받고 고려되어야 하고 사건의 정황과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의 능력을 고려하여 그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주어져야 함.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참 여
이와 비슷하게, 독일의 Sahin 사건에서도 법원은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접견권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아동의 의사를 법정에서 반드시 들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지만, 이런 문제는 관련된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다루어야한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아동사건의 경우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효과적인 참여라 함은 피의자가 재판 절차와 선고될 처벌의 심각성과 같은 위험의 본질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피의자가 법정 공방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친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함을 뜻한다. 피고인은 검찰 측 목격자들의 진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변호인에게 자기 의견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동의할 수 없는 진술을 지적하여 향후의 자기 방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양육권 사례인 핀란드의 Hokkannen 사건에서 법원은 12세 소녀는 "그녀의 의사가 고려될 만큼 충분히 성숙하므로 접견권은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내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하였다.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아동최선의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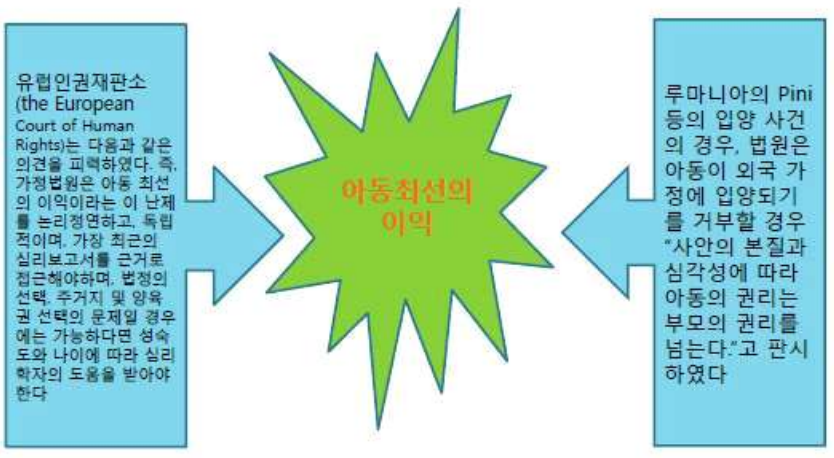
- 회원국들은 아동최선의 이익 보장,아동권리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
- 최선의 이익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 아동의 시각과 의견 고려
  - 그 아동의 존엄권, 자유를 추구할 권리, 동일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같은 다른 모든 권리들은 항상 존중
  - 아동의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 웰빙과 법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모든 관련된 관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접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
- 아동 최선의 이익과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평가, 조정과정이 요구
- 사법당국이 최종 결정의 책임과 최종 권한을 갖지만 회원국들은 아동을 포함하는 모든 절차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측정하기 위한 다원적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es)을 위해 공동 노력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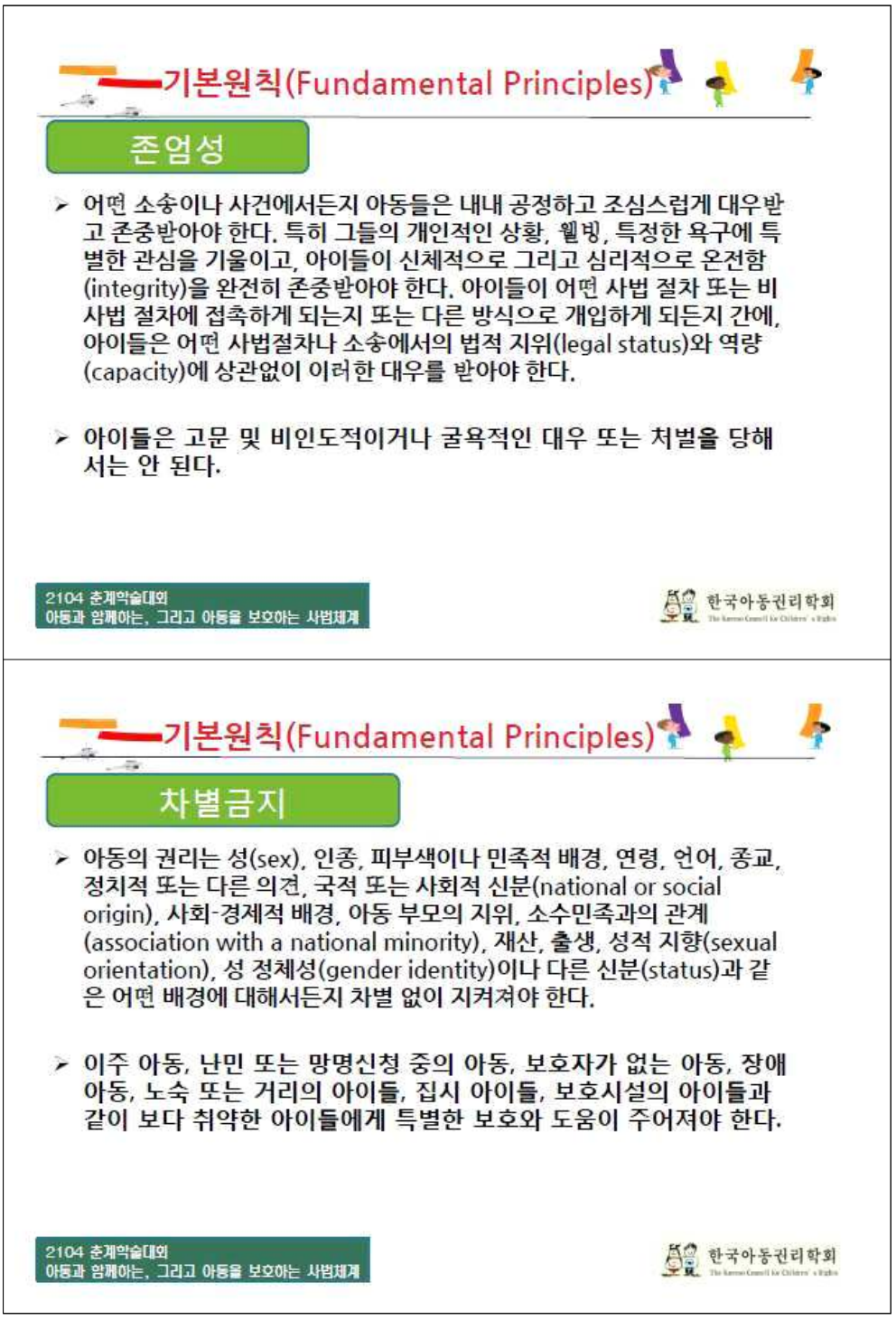
이탈리아의 Bronda 사건은 아동의 이익이 다른 관련 주체들의 이익보다 더 우선시 된 것처럼 보인다. "(중략) 위탁부모와 살기를 원하는 B의 이익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존엄성
어떤 소송이나 사건에서든지 아동들은 내내 공정하고 조심스럽게 대우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특히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 웰빙, 특정한 욕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온전함(integrity)을 완전히 존중받아야 한다. 아이들이 어떤 사법 절차 또는 비사법 절차에 접촉하게 되는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개입하게 되든지 간에, 아이들은 어떤 사법절차나 소송에서의 법적 지위(legal status)와 역량(capacity)에 상관없이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아이들은 고문 및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당해서는 안 된다.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차별금지
아동의 권리는 성(sex), 인종, 피부색이나 민족적 배경, 연령,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national or social origin), 사회-경제적 배경, 아동 부모의 지위, 소수민족과의 관계(association with a national minority), 재산, 출생,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이나 다른 신분(status)과 같은 어떤 배경에 대해서든지 차별 없이 지켜져야 한다.
이주 아동, 난민 또는 망명신청 중의 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장애아동, 노숙 또는 거리의 아이들, 집시 아이들, 보호시설의 아이들과 같이 보다 취약한 아이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도움이 주어져야 한다.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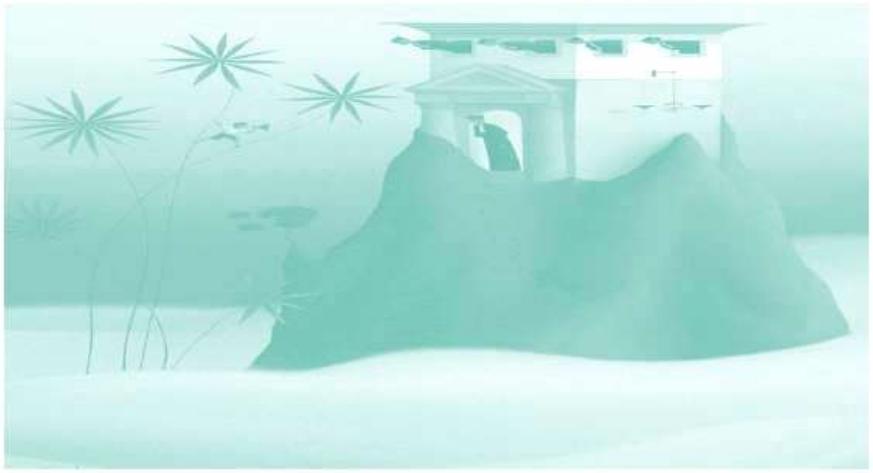
법칙(Rule of Law)

- 법칙(the rule of law principle)은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죄형법정주의(the principle of legality)와 비례의 원칙(the proportionality), 무죄추정의 원칙(the presumption of innocence),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the right to a fair trial), 법률 조언을 받을 권리(the right to legal advice), 재판청구권(the right to access to courts), 항소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appeal)와 같은 정당한 법적 절차 요소들이 어른과 마찬가지로 아동에게도 보장되어야 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구실로 축소되거나 거부되지 않아야 한다.
- 아이들은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적절한 항의 절차(complaints mechanisms)에 접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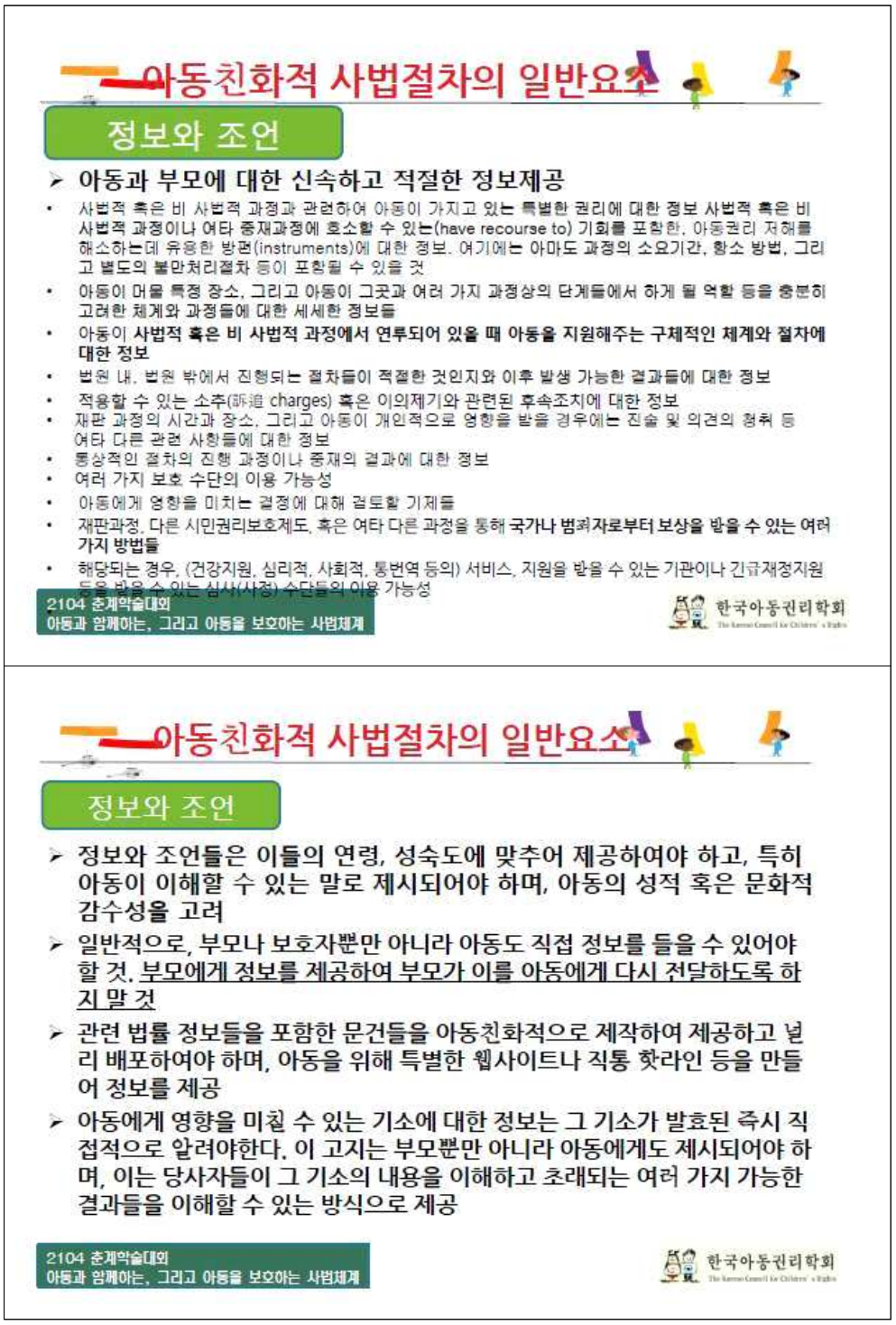
한국아동권리학회

사법절차에서의 아동친화적 사법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친화적 사법절차의 일반요소
정보와 조언
➢ 아동과 부모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정보제공
• 사법적 혹은 비 사법적 과정과 관련하여 아동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에 대한 정보 사법적 혹은 비 사법적 과정이나 여타 중재과정에 호소할 수 있는(have recourse to) 기회를 포함한, 아동권리 저해를 해소하는데 유용한 방편(instruments)에 대한 정보. 여기에는 아마도 과정의 소요기간, 항소 방법, 그리고 별도의 불만처리절차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
• 아동이 머물 특정 장소, 그리고 아동이 그곳과 여러 가지 과정상의 단계들에서 하게 될 역할 등을 충분히 고려한 체계와 과정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들
• 아동이 사법적 혹은 비 사법적 과정에서 연루되어 있을 때 아동을 지원해주는 구체적인 체계와 절차에 대한 정보
• 법원 내, 법원 밖에서 진행되는 절차들이 적절한 것인지와 이후 발생 가능한 결과들에 대한 정보
• 적용할 수 있는 소추(訴追 charges) 혹은 이의제기와 관련된 후속조치에 대한 정보
• 재판 과정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아동이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진술 및 의견의 청취 등 여타 다른 관련 사항들에 대한 정보
• 통상적인 절차의 진행 과정이나 중재의 결과에 대한 정보
• 여러 가지 보호 수단의 이용 가능성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검토할 기제들
• 재판과정, 다른 시민권리보호제도, 혹은 여타 다른 과정을 통해 국가나 범죄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 해당되는 경우, (건강지원, 심리적, 사회적, 통번역 등의)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긴급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심사(사정) 수단들의 이용 가능성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친화적 사법절차의 일반요소
정보와 조언
➢ 정보와 조언들은 이들의 연령, 성숙도에 맞추어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제시되어야 하며, 아동의 성적 혹은 문화적 감수성을 고려
➢ 일반적으로, 부모나 보호자뿐만 아니라 아동도 직접 정보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가 이를 아동에게 다시 전달하도록 하지 말 것
➢ 관련 법률 정보들을 포함한 문건들을 아동친화적으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널리 배포하여야 하며, 아동을 위해 특별한 웹사이트나 직통 핫라인 등을 만들어 정보를 제공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소에 대한 정보는 그 기소가 발효된 즉시 직접적으로 알려야한다. 이 고지는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제시되어야 하며, 이는 당사자들이 그 기소의 내용을 이해하고 초래되는 여러 가지 가능한 결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친화적 사법절차의 일반요소

정보와 조언

일부 유럽연합국가는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사건이나 황상의 법적 이슈에 대한 일반 및 기본정보내의 아동권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사적 또는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같은 국가는 "아동권리 숍"이 있는데, 그 곳은 아동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지원한다(예를들어, 사례에 대해 판사에게 편지를 쓰기).

영국의 V와 T의 사례에서, 법원은 법원에서 피의자는 부과되는 벌금을 포함하여 법률절차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피의자는 어떤 경우라도 아동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숙련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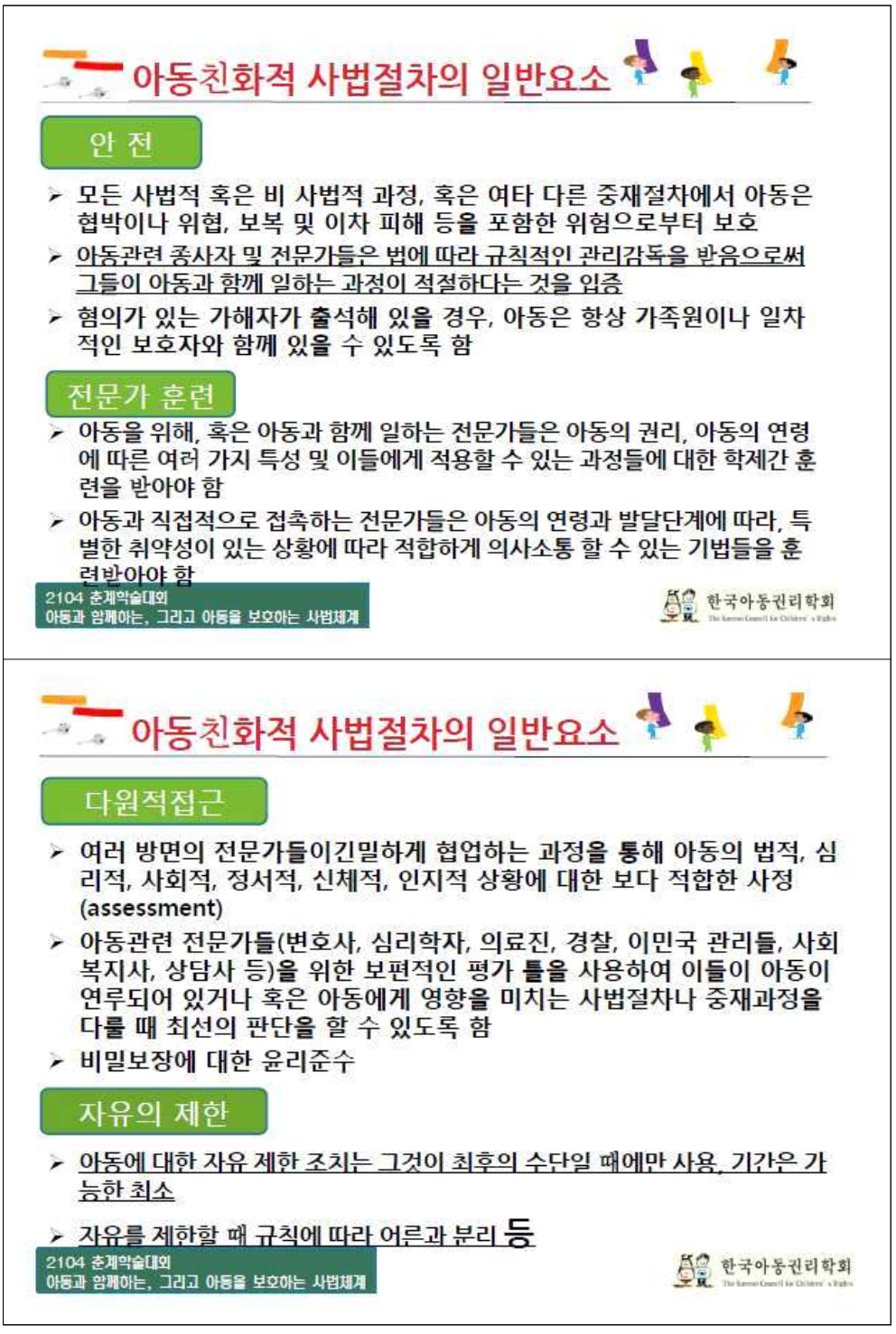
아동친화적 사법절차의 일반요소

사생활과 가족생활의 보호

- 사법적 혹은 비 사법적 과정과 관련 중재에 관련된 아동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개인적 자료들은 해당국의 법률체계에 맞게 보호
  - 어떠한 개인 정보나 자료들도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특히 언론에 공표되지 않아야 함
- 필요한 입법 조치나 언론의 자기규제 등을 통해 언론에 의한 사생활권의 침해를 예방할 것
- 아동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아동의 개인적인 자료나 민감한 자료를 포함한 서류나 기록에의 접근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수 있도록함
- 아동이 사법적 혹은 비사법적 과정이나 여타 다른 중재과정에서 증인 심문을 받거나 아동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과정을 카메라로 녹화하여 사용. 규칙에 따라 극히 제한된 소수만 이 장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아동의 증언과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
- 아동을 위해, 혹은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은 아동에게 해로울 위험성이 초래되지 않는 한 엄격한 비밀유지 원칙을 준수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친화적 사법절차의 일반요소
안 전
모든 사법적 혹은 비 사법적 과정, 혹은 여타 다른 중재절차에서 아동은 협박이나 위협, 보복 및 이차 피해 등을 포함한 위험으로부터 보호
아동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들은 법에 따라 규칙적인 관리감독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아동과 함께 일하는 과정이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
혐의가 있는 가해자가 출석해 있을 경우, 아동은 항상 가족원이나 일차적인 보호자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함
전문가 훈련
아동을 위해, 혹은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은 아동의 권리, 아동의 연령에 따른 여러 가지 특성 및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과정들에 대한 학제간 훈련을 받아야 함
아동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전문가들은 아동의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라, 특별한 취약성이 있는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법들을 훈련받아야 함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친화적 사법절차의 일반요소
다원적접근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긴밀하게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의 법적,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상황에 대한 보다 적합한 사정 (assessment)
아동관련 전문가들(변호사, 심리학자, 의료진, 경찰, 이민국 관리들,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을 위한 보편적인 평가 틀을 사용하여 이들이 아동이 연루되어 있거나 혹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절차나 중재과정을 다룰 때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비밀보장에 대한 윤리준수
자유의 제한
아동에 대한 자유 제한 조치는 그것이 최후의 수단일 때에만 사용, 기간은 가능한 최소
자유를 제한할 때 규칙에 따라 어른과 분리 등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친화적 사법절차의 일반요소

전문가 훈련

최근 몇 년간, 플라망 변호사 협회 및 젊은 변호사 위원회는 회원들에게 아동의 권리와 관련한 2년짜리 과정을 제공해 왔다. 법률 정보에 아동 심리 및 발전에 관한 기본 교육과 아동과 대화하기와 같은 실습 수업이 보충되어 있다. "젊은 변호사" 증서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모듈(교과목)에 출석하는 것이 의무이다. 2010년에 약 400명의 젊은 변호사들이 훈련을 받았다

다원적접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학대 및 폭행 사건들은 소위 "아동들의 집들"이라는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 법의학 전문가들, 소아과의사들, 경찰 및 검찰청은 경찰 수사 또는 사회복지 조사에 있어서 주로 초기 단계에 공조하여 일한다. 그들은 수행해야 할 서로 다른 과제를 정리해서 할당한다. 해당 아동과의 면접은 이 집들에서 이루어지며, 제3자는 옆방에서 비디오 링크를 통해 이를 들을 수도 있다. 진찰 및 상담을 위한 방도 마련되어 있다.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재판절차 이전의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재판절차 이전의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 **형사책임 연령의 하한선은 지나치게 낮지 않도록 함**

-연령 법에 규정, 중재 등과 같이 사법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 등의 대안적인 기제들의 사용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 아동에게 안내

아동과 경찰

➢ **경찰은 모든 아동 개인의 권리와 존엄을 존중할 것**

- 경찰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 신체적 혹은 지적 부자유 아동이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등 다양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함
- 아동이 경찰에 체포(영어원문 확인)되었을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이해도를 충분히 감안한 수준의 설명과 태도로 아동이 경찰의 보호 하에 있게 된 이유를 설명

➢ **경찰은 가능한 아동이 성인과 같은 장소에 함께 구금되지 않도록 조치**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재판절차에서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 **법원 및 재판절차에 대한 접근**

- 아동은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비용이나 법적자문 결여 등과 같은 장애가 있어서는 안됨

➢ **법적 자문과 대리**

- 아동은 소송절차에서 부모 또는 다른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독자적으로 법적 자문 및 대리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함
- 아동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아동의 권리와** 관련사안에 대해 **식견**이 있어야 하며, **아동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함
-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가진, 필요한 자격을 다 갖춘 고객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아동의 의견을 제출해야** 함

➢ **청문권과 의사표현권**

- 법관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사안에 대한 청문권 또는 아동이 문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의 최소한의 청문권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
- **아동의 연령을 이유로 청문이 허용되지 않아서는 안됨**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재판절차에서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 부당한 지체방지

- 아동이 연관된 모든 소송법적 절차에서 법 원칙을 준수하면서 **신속한 대응**, 긴급원칙 적용

➢ 소송절차의 조직, 아동친화적 환경, 아동친화적 언어

- 아동친화적 환경 :아동의 연령, 특별한 필요, 성숙도 그리고 이해 수준, 아동의 의사소통 역량을 고려
-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비디오 촬영이나 녹음 또는 재판 전의 심리 등의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
- 아동에게 유해한 이미지나 정보로부터 보호
- 재판시간은 아동의 생활시간이나 주의지속시간을 고려함.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하고 청문은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아야 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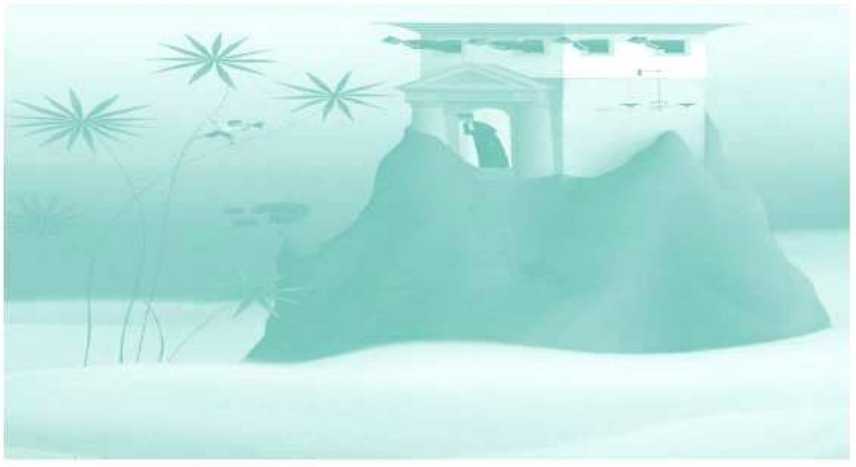
➢ 아동에 의한 증언증거와 진술

- 아동면담, 아동의 진술은 훈련된 전문가에 의해 수행
-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하여 아동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환경과 가장 적합한 조건에서 증언
- 한번 이상의 면담이 필요하다면 면담은 동일한 사람에 의해 진행
- 면담의 수는 가능한 한 제한되어야 하고, 그 길이는 아동의 연령과 주의력에 따라 조정 등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소송절차 이후의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소송절차 이후의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 결정 또는 판결에 대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 항소 또는 독립적 소청제도와 같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수단에 대한 정보제공
- 매우 치열한 소송절차의 판결 이후에는 안내와 지원이 전문적인 서비스의 방식으로 아동과 그들의 가족에게 원칙적으로는 무상 제공
- 방치, 폭력, 학대 또는 다른 범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특별한 건강관리와 적절한 사회적 및 치료적 개입 프로그램 또는 조치가 원칙적으로는 무상으로 제공
- 법에 저촉한 아동을 위한 조치와 제재는 비례원칙, 아동 연령, 육체적 및 정신적 행복과 발전 그리고 사안의 상황에 따라 항상 건설적이고 저촉행위에 따라 **개별화된 대응**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모니터링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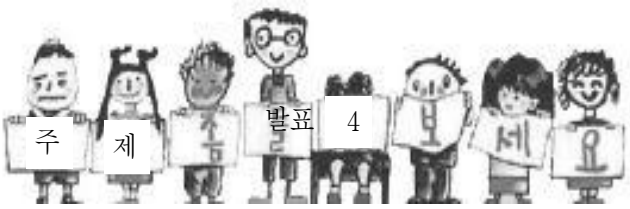
-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안에서의 수행방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
- 현재 지침서의 실행력을 모니터링하고 권장하기 위해 한 개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법적 행정적 시스템에 근거한 체계를 수립, 유지
- 시민사회와 같이 아동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단체들이 모니터링 과정에 충분히 참여

2104 춘계학술대회
아동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법체계

한국아동권리학회



감사합니다



미국의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사례

– 법원임명특별옹호자(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김경륜 대표 (인재디포)

미국의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사례

– 법원임명특별옹호자(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김경륜 대표 (인재디포)

I. 들어가는 말

최근 아동학대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친부의 묵인과 동조 하에 계모의 폭행으로 사망에 이른 아동학대 사건들과 심지어 친모의 구타로 사망한 22개월 된 남아의 뉴스는 충격적이다. 수년 동안 쓰레기더미 집안에 방임되어 온 인천 4남매의 뉴스와 게임중독에 빠진 친부가 28개월 된 아들을 입과 코를 막아 질식하여 사망하자 내다버리고 실종신고를 한 사건은 할 말을 잃게 한다. 더욱이 지난해 보고된 아동학대 가해자의 80%이상이 부모였고, 학대 장소는 '피해아동 가정'이 79.6%로 가장 많았으며, 38.7%의 아동이 거의 매일 학대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동아일보, 2014.4.13), 아이들의 안전과 삶이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물은 세상에 태어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생존법을 터득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지만, 아동은 온전히 부모의 보살핌에 의존하여 성장•발달해간다. 부모조차 안전한 울타리가 되지 못한다면 아동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연일 뉴스에서는 새로운 학대•방임 사례를 보도하고, 각계각층에서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각종 아동보호법안과 아동학대방지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하고, 전문가, 관계 당국자,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논의가 분분하다. 그러나 다수의 법과 제도가 마련된다 할 지라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칠곡의 8세 여아가 학대로 사망하기 2달 전, 담임교사에게 "안전한 곳에 보내주세요"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그 이전부터 아이를 관찰해온 담임교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번 학대신고도 하고 가정방문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14.4.9). 담임교사의 신고에 귀 기울이고 아이가 보내는 신호에 제대로 응답했었다면 적어도 안전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깝다.

게다가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수사, 기소, 판결의 과정에서 아동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여아의 12세 언니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계모의 말만 듣고 경찰은 진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게다가 아동학대죄를 엄중히 다루지 못한 검찰의 부실기소와 기계적인 양형기준을 적용한 판사의 판결 등은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다(조선일보, 2014.4.12).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대책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나라 아동보호 시스템과 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아동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국의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 사례인 법원임명특별옹호자(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 이하 CASA라 표기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CASA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시스템과 사법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미국의 CASA 프로그램의 소개

본고의 목적은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의 사례로서 미국의 사법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CASA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 있다. 따라서 다음에는 미국의 사법체계 내에서의 CASA의 위치를 살펴보고, CASA가 누구이며, CASA 프

로그램이 어떻게 시작되어 현재까지 발전해왔는지, CASA가 수행하는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의 사법체계 내에서의 CASA의 위치

미국은 1974년에 연방법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이하 CAPTA로 표기함)'이 제정된 이래로, 아동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아동보호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강력한 아동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아동보호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형식의 기금을 제공하고, 각 주정부는 자율적으로 이 기금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방정부 내에 아동사무국 (the Children's Bureau)과 아동학대전담부서(the Office on Child Abuse and Neglect)에서는 아동보호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등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주정부에서는 아동보호서비스기관(Child Protective Service Agency)을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예방과 치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정부는 CAPTA에서 규정한 관련 지침을 따르지만, 자율성을 가지고 법률과 제도 및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한다(한미현, 2006).

미국의 아동보호 시스템에서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조사한 결과,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아동보호서비스기관은 소년법원 혹은 가정법원(Juvenile court or Family court)에 청원서를 제출한다. 이로부터 법원은 단계별 공판을 통해 피학대·방임 아동과 가족에게 개입한다. 법원의 판결은 아동을 가족 특히 부모와의 분리배치, 배치유형, 재결합 혹은 영구분리 등을 결정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으로 피학대·방임 아동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아동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사법체계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Child-friendly Justice)'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전국CASA협회(the National 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

Association)의 CEO, Michael Piraino의 언급(National CASA Association, 2013)을 통해 CASA 프로그램의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다. "판사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간의 파트너십은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되는 수많은 아동을 도와왔다. 오늘날, 전국소년법원 및 가정법원판사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of Juvenile and Family Court Judges)와 전국CASA협회는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궁극적으로 영구적인 가정을 갖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아동을 대신하여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일하고 있다." 미국의 CASA 운동은 법원이 아동친화적인 모범을 보이고 실천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지역사회의 시민 자원봉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CASA란 누구인가?

CASA/GAL 자원봉사자는 "피학대·방임으로 법원에 제출된 아동 사례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판사에 의해 임명된 훈련받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이다"(National CASA Association, 2013). 즉 CASA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CASA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신원확인을 통해 특별히 훈련받은 일반 시민 자원봉사자이다.

본래 CASA의 정식 명칭은 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Gudian Ad Litem(이하 CASA/GAL이라 표기함) Volunteer이다. 여기서 Gudian Ad Litem은 '후견인'을 뜻하는 Gudian과 라틴어로 '소송을 위한'이라는 뜻의 'Ad Litem'이 결합된 용어로 '소송후견인'을 뜻한다. 따라서 CASA/GAL 자원봉사자는 '법원이 임명한 특별옹호자로 소송을 위한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CASA는 아동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훈련을 받은 후, 지역에 따라 소년법원 혹은 가정법원의 판사의 임명을 통해 권한이 부여된다.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법체계 내에서 피학대·방임아동의 사례를 관찰하고 모니터링하여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하고, 아동의 권리를 옹

호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입각하여 복잡한 법적, 사회적 서비스 체계 내에서 아동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며 법정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특히 한 번에 한 사례를 맡아 그 아동이 부적절한 그룹홈이나 위탁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이 안전하고 영구적인 가정에 배치되어 종결될 때까지 사례를 담당한다. 많은 피학대・방임 아동들에게 있어서 CASA 자원봉사자는 그들의 삶에 유일하게 지속적인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이러한 자원봉사자를 CASA라고 부르기도 하고, CASA/GA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 CASA 프로그램의 역사[84]

미국의 사법체계 내에 CASA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오늘날 하나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한 판사의 아동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76년에 어느 날 시애틀 대법원판사 David Soukup은 주정부 아동보호서비스기관에서 제공한 정보만을 가지고 극적인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

David Soukup은 그의 법정에서 되풀이 되는 문제에 대해 숙고하고 반문하였다. '아동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정말로 알아야할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다른 것들을 모두 들었는가? 이것이 정말로 옳은가?' 그는 모든 사실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고 각 아동의 장기적인 복지가 대변되고 있는지 확신하기 위해, 미국의 소송절차와 수천 명의 아동의 삶을 바꾸는 CASA 시민 자원봉사자를 생각해냈다.

이러한 독특한 개념은 시애틀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1977년 1월에 시행되었으며, 그 해에 376건의 아동보호소송(dependency case)에서 498명의 아동을 위해 110명의 훈련된 CASA 자원봉사자들을 제공하였다. 그 첫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지금은 49개주와 Washington D.C.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훈련

84) CASA 프로그램의 역사와 전국통계 자료는 미국의 Boston 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 홈페이지(www.bostoncasa.org)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시키며 지원하는 933개 이상의 CASA/GAL 프로그램 네트워크로 발전했다.

1978년에, 전국주법원센터(the National Center of State Courts)는 CASA 프로그램을 '소년사법제도에서 전국 최고의 시민참여의 예'로 선정하였다. New York City의 Edna McConnell Clark Foundation(CASA 의 가장 초창기 강력 지지자 중의 하나)으로부터 지원받는 기금과 함께 이러한 인정은 전국 법원에 시애틀 CASA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CASA 프로젝트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지역 프로그램 디렉터가 관찰과 훈련을 위해 시애틀 프로그램을 방문하였다.

1982년에는 전국적으로 출현한 CASA를 운영하기 위해 전국협회가 필요하게 되었고 전국CASA협회(the National 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 Association)가 형성되었다.

1984년에 전국CASA협회는 다수의 중요한 원천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즉 미국 법무부,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부(the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의 지휘 하에 전국 소년법원 및 가정법원판사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of Juvenile and Family Court Judges)로부터의 교부금, 미국 보건복지서비스부(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로부터의 교부금, Edna McConnell Clark Foundation으로부터의 기금 등을 받았다. 전국CASA협회는 또한 the Kappa Alpha Theta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왔다. 이 국제여성동호회는 CASA를 자선활동단체로 선정하고, 시작프로그램 및 대중인식을 위한 비디오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기금을 제공하였다.

1984년 여름 전국CASA협회는 워싱턴주 시애틀에 전국사무소를 두고, 회원관리와 기금조성을 시작하였다. 1985년 4월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성취를 보여준 "훌륭한 자원봉사자의 공헌"에 대해 전국CASA협회에 대통령 자원봉사 활동상을 수여하였다. 1989년 8월, 미국변호사협회(the American Bar Association)는 법정에서 피학대·방임 아동을 대변할 수 있도록 CASA 자원봉사자들이 변호사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1990년 7월, 전국 소년법원 및 가정법원 판사위원회는 CASA를 미국의 소년법원과 가정법원에 있어서 “훌륭한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이라 명명하였다. 또한 그해에 미국 의회는‘ 아동학대피해자법(Victims of Child Abuse Act of 1990)’을 통과시키면서 CASA의 확대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그러한 옹호가 필요한 미국의 모든 피학대・방임 아동은 CASA가 이용 가능해야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미국아동학대・방임 자문위원회(The U.S. Advisory Board on Child Abuse and Neglect)는 CASA/GAL 자원봉사자들의 활용을 주요한 임무로 포함시켰다.

1991년 7월 미국 법무부, 소년사법과 비행예방부서는 CASA를 “소년비행예방의 모범적인 전국 프로그램”이라 명명하였다. 1992년 12월에 CASA의 창시자, David Soukup이 Washington, D.C.의 돌봄연구소(the Caring Institute)로부터 상을 받았다. 또한 같은 해에 의회는 피학대・방임 아동에 대한 CASA 대리제를 확대시키기 위한 교부금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전국CASA협회는 미국 전역에서 Washington D.C.와 미국 Virgin Islands를 포함하여933개의 CASA 프로그램을 대변한다. 협회는 시작프로그램, 기술지원, 훈련, 기금조성, 미디어홍보 및 대중인식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표 1> CASA 프로그램의 역사

년도	역사
1977. 1	– 시애틀 대법원 판사 David Soukup, CASA/GAL 프로그램 창시. 시애틀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행됨 – 376건의 소송에서 498명의 아동에게 110명의 훈련된 CASA 자원봉사자를 제공함
1978	– 전국주법원센터(the National Center of State Courts), 이 프로그램을 “소년사법제도에서 전국 최고의 시민참여의 예”로 선정함 – New York City의 Edna McConnell Clark Foundation으로부터의 기금과 인정으로 전국의 법원에서 CASA program을 도입함 – CASA 프로젝트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지역 프로그램 디렉터가 관찰과 훈련을 위해 씨에틀 프로그램을 방문함
1982	– 전국CASA협회(National CASA Association) 결성
1984	– 워싱턴 주 시애틀에 전국사무소를 두고 회원관리와 기금조성을 시작 – 전국CASA협회는 미국 법무부,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부서의 지휘하에 전국소년법원 및 가정법원판사위원회, 미국 보건복지부, Edna McConnell Clark Foundation 등의 중요한 원천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음 – 국제여성동호회, the Kappa Alpha Theta Foundation의 지원받음. 시작프로그램 및 대중인식 비디오 제작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기금을 받음
1985. 4	–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성취를 보여준 “훌륭한 자원봉사자의 공헌”에 대해 대통령 자원봉사 활동상을 수여함
1989. 8	– 미국변호사협회(the American Bar Association)는 법정에서 피학대· 방임 아동을 대변하기 위해 CASA 자원봉사자들이 변호사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함
1990. 7	– 전국소년법원과 가정법원판사위원회는 CASA를 미국의 소년법원과 가정법원에 있어서 “훌륭한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이라 명명함 – 미국 의회는 아동학대피해자법(Victims of Child Abuse Act of 1990 을 통과시키면서 CASA의 확대를 허가함. 그러한 옹호가 필요한 미국의 모든 피학대·방임 아동은 CASA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함 – 미국아동학대·방임자문위원회는 CASA/GAL 자원봉사자들의 활용을 주요한 임무로 포함시킴
1991. 7	– 미국 사법부, 소년사법과 비행예방부는 CASA를 “소년비행예방의 모범적인 전국 프로그램”이라 명명함
1992. 12	– CASA의 창시자, David Soukup이 Washington, D.C.의 Caring Institute로부터 수상함 – 미국 의회는 피학대·방임 아동에 대한 CASA 대리제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시작함
2012	– 전국CASA 협회는 Washington, D.C와 미국 Virgin Islands를 포함하여 미국 전역에 설립되어 있는933개의 CASA 프로그램을 대변함. – 시작프로그램, 기술지원, 훈련, 기금조성, 미디어홍보 및 대중인식 서비스 등을 제공함

CASA의 전국통계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5년 동안의 CASA의 수와 그들의 도움을 받은 아동들의 수는 <표2>과 같다. 2006년에 57,938명의 CASA가 220,129명의 아동을 위해 활동했으나, 2010년에는 75,087명이 240,164명의 아동을 위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CASA는 가정에서 학대와 방임으로 고통을 겪은 아이들이 아동보호 시스템 내에서 학대와 방임이 계속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표2> CASA/GAL 자원봉사자와 도움 받은 아동의 수

년도	CASA/GAL	아동수
2006	57,938	220,129
2007	59,717	243,295
2008	68,842	240,894
2009	70,919	237,095
2010	75,087	240,164

뿐만 아니라 전국CASA협회의 2012 연간보고서(National CASA's 2012 Annual Report)에 의하면, 2012년 현재 전국의 933개 프로그램을 통해 77,000명의 CASA가 234,000명의 아동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CASA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CASA의 역할과 책임

CASA 자원봉사자는 아동보호서비스기관이 학대 혹은 방임을 주장하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을 하게 되었을 때, 판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임명함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CASA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책임은 지역 CASA/GAL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National CASA Association, 2012). 각 지역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는 CASA는 이를 숙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1) CASA/GAL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책임은 명문화된 정책, 직무기술서, 훈련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되며, 감독과정을 통해 강화된다.

2) CASA/GAL 프로그램은 현재의 자원봉사자 정책과 절차를 유지한다.

3) 각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 정책과 절차에 대한 사본을 받고 그 정책을 읽고 이해했음을 인정하는 싸인을 한다.

4) 법원의 제안과 승인으로 개발된CASA/GAL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정책과 절차(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는 CASA/GAL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기술한다.

5) 명문화된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며, 자원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 Ÿ 아동이 처한 상황에 대한 사실과 정황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 모든 관련 문서와 기록을 리뷰하고 아동, 부모, 사회복지사, 교사 및 다른 사람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아동의 필요와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한다.
- Ÿ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규명하고 옹호한다.
- Ÿ 당사자들 사이에서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협력적인 해결책을 구한다.
- Ÿ 발견한 내용과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모든 청문회에 제공한다.
- Ÿ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모든 청문회에 참석해야하며 필요할 때 증언한다.
- Ÿ 본인이 직접 아동과 규칙적이고 충분한 접촉을 한다. 사례에 대한 면밀한 지식을 확보하고 법정에 사실에 입각한 권고를 한다. CASA/GAL 자원봉사자는 최소한 매 30일에 한번 아동을 직접적으로 만나야 한다. 프

로그램 스텝의 자유재량 하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덜 자주 직접적인 접촉을 인정하는 결정에 대한 명분과 이유가 기록되어야 한다.

Ÿ CASA프로그램 스텝의 재량권으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덜 자주 직접적인 접촉을 인정하는 결정은 예외에 대한 명분과 합당함에 관하여 기록해야 한다.

Ÿ 아동과 해당되는 경우에 그 아동의 가족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서비스를 권고한다.

Ÿ 영구적인 계획이 그 아동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결정한다.

Ÿ 서비스 계획과 법원 명령의 시행을 관찰하고, 법원이 명령한 서비스가 적시에 시행되는지 그리고 법에 따라 청문회가 개최되는지를 확인한다.

Ÿ 법원규칙이나 법령에 의해 결정되었을 때, 적절한 수단을 통해 사례의 중요한 진전을 법원에 즉각적으로 알린다.

Ÿ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보건, 교육 및 다른 지역사회 시스템들과 상호작용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옹호한다.

Ÿ 감독스텝과 함께 모든 계획된 사례회의에 참석한다.

Ÿ 실무연수에 참여한다.

Ÿ 약속, 인터뷰, 아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생활환경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포함하여 사례에 대해 완전한 기록을 유지한다.

Ÿ 사례가 종결된 이후에는 사례 파일을 반납한다.

6) 자원봉사자에게 한번에 2개 이상 사례가 할당되지 않아야 한다. CASA 프로그램 스텝의 재량에 의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많은 사례업무를 허용하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예외에 대한 명분과 합당한 이유가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한 예외 하에서, 자원봉사자는 5개 이상의 사례가 할당되어서는 안된다.

7) CASA/GAL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 정책과 절차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만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Ÿ 의무보고에 대한 주정부의 법적 요구사항을 따르면서 아동 학대 혹은 방임에 대한 사건이나, 아동이 현저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상황을 CASA/GAL 감독관과 적절한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Ÿ 다음과 같은 활동은 하지 않는다.

- 아동을 아동의 집이 아닌 다른 집 혹은 자원봉사자의 집에 데려가는 것
- 법적인 조언이나 치료적 상담을 하는 것
- 아동의 거처를 결정하는 것
- 아동과 아동의 가족 혹은 양육자에게 돈이나 값비싼 선물을 하는 것

Ÿ 법원에 권고사항을 제출하기 전에 사례에 관한 모든 권고사항을 프로그램 감독자와 의논한다.

Ÿ CASA/GAL 프로그램 감독자는 보고서나 권고사항을 CASA/GAL 자원봉사자가 알지 못하거나 동의 없이 변경해서는 안 된다.

Ÿ CASA/GAL 프로그램에는 사례를 다루는데 있어서, 법원을 위한 보고서 안에 포함되는 정보나 권고사항을 보고하는 데에 자원봉사자와 프로그램 감독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이 있다.

Ÿ CASA/GAL 자원봉사자는 사례와 관련된 어느 당사자에게도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이해충돌이 있는 지위에 혹은 기관에 취직해서는 안 된다.

8) CASA/GAL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들이 아동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할 때, 그 프로그램을 커버하는 필수적인 책임보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덧붙여서 CASA/GAL 자원봉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하는 정책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

Ÿ 자동차운전기록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Ÿ 매년 현재의 운전면허증 사본, 안전운전기록 및 적절한 개인자동차보험을 프로그램에 제공해야 한다.

Ÿ 감독자 혹은 디렉터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Ÿ 아동의 법적 후견인 혹은 양육대리인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Ÿ 책무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Ÿ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

III. 전국CASA협회와 'I am for the child' 캠페인[85]

다음은 CASA 프로그램 네트워크의 중심인 전국CASA협회가 수행하는 주요 활동을 기술한다. 특히 CASA훈련과정의 커리큘럼 요소와 목표는 무엇이며, CASA의 미션을 널리 확산시키고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자 시작한 'I am for the child' 캠페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전국CASA협회의 주요 활동

전국CASA협회에 의하면 2012년에 933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77,000명이상의 CASA/GAL 자원봉사자들이 234,000명의 피학대·방임아동들이 안전하고 영구적인 가정을 찾도록 봉사하였다. 전국CASA협회의 미션은 각 주와 지역 회원들과 함께, CASA의 옹호를 지원하고 증진시켜서 모든 피학대·방임 아동이 안전하고, 영구적인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게 돕는데 있다. 이러한 지역 공동체프로그램 네트워크는 아동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한다. 따라서 CASA협회와 지역CASA프로그램의 역할은 학대받은 아동들을 위해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키며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CASA협회는 중요한 리더십과 질 높은 옹호를 제공하며 CASA 프로그램 network 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다. 협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수행한다.

85) 전국CASA협회 활동에 관한 자료는 미국의 National CASA Association의 홈페이지 www.casaforchildren.org 내용을 정리하였다.

1) 훈련과 커리큘럼(Training & Curriculum)

- 전국 CASA협회는 새로운 연구에 기초한 훈련 기회를 만들어낸다. 교육적 옹호를 위한 e-learning 시리즈와 같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커리큘럼을 향상시킨다.
- 이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의 탄탄한 기초를 제공한다. 의무적인 30시간의 사전훈련동안 가이드를 제공하며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자원봉사자들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

CASA 훈련과정 커리큘럼의 요소는 내용, 사례연구, 과제, 참고자료,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내용은 다음의 <표3> 과 같다.

<표3> 커리큘럼 요소(Curriculum elements)

구분	요소
내용	각 장의 중요 특징은 상이한 학습스타일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된다.
사례연구	학습자가 안전한 실습환경에서 그들의 지식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과제	각 장 끝에 지정된다.
참고자료	토픽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탐구하게 해준다.
부록	자원봉사자 옹호활동에 대한 상식뿐만 아니라 커리큘럼 용어들을 정의한다.

또한 CASA훈련과정의 메뉴얼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커리큘럼의 목표는 자원봉사자의 역할, 법, 아동보호 시스템과 법원에 대한 소개, 문화적 역량 개발, 가족에 대한 이해, 아동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자원봉사자 역할 실습, 종합하기 등으로 구분되며 <표4>와 같다.

<표4> CASA훈련과정 커리큘럼 목표(Goals)

구분	목표
제1장	CASA/GAL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한 소개
제2장	법, 아동보호 시스템과 법원에 대한 소개
제3장	문화적 역량 개발
제4장	가족에 대한 이해, Part 1
제5장	가족에 대한 이해, Part 2
제6장	아동에 대한 이해
제7장	CASA/GAL 자원봉사자로서의 의사소통
제8장	CASA/GAL 자원봉사자의 역할 실습: 정보수집
제9장	CASA/GAL 자원봉사자의 역할 실습: 보고 및 모니터링
제10장	종합하기

CASA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의 도시에서 이용가능하다. 지역에 따라 훈련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아동의 의견과 가족의 상황을 평가하고 법정에서 아동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적절히 훈련받는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훈련과정은 30시간의 워크숍과 법정사례와 절차에 대한 10시간의 관찰로 구성되어있다. 각 지역의 CASA 프로그램은 또한 사례에 대한 컨설팅과 지도를 할 수 있는 지역감독자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가 있다.

CASA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마음을 쓰는 각계각층의 상식적인 사람들을 환영한다. 지역 프로그램에 지원한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로서 철저하게 훈련되며 각 사례를 통해 도움을 줄 전문 스탭의 지원을 받게 된다. CASA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21세가 넘어야 하며, 아동을 돕고자 한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CASA 프로그램을 찾아서 신청하면 된다. CASA는 배정된 아동의 삶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즉 부모와 친척, 위탁부모, 교사, 의료진,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여러 사람들과 대화함으로써 그 아동을 알게 된다. CASA는 아동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이 그들에게 가장 최상의 영구적인 가정(permanent home)이 될 것인가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판사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한다.

2) 기술지원과 품질보증(Technical Assistance and Quality Assurance)

- 프로그램이 더 많은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광범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질 높은 프로그램 경영을 위한 틀을 제공하는 일련의 기준을 제공한다. 각 주의 조직과 지역 프로그램은 National CASA 기준을 준수하는지 측정하는 자체평가과정에 참여한다.

3) 자원봉사자 모집 및 대중인식(Volunteer Recruitment and Public Awareness)

- CASA 자원봉사자 모집을 돕기 위한 전국캠페인을 조직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4) 자원개발과 교부금(Resource Development and Grants)

- 전국CASA협회는 주와 지역의 CASA/GAL 프로그램에 교부금을 제공한다. 교부금은 주로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로부터 오지만 역시 개별 기업과 재단에서도 받는다.

전국CASA협회의 교부금의 주요 원천은 연방정부로 1985년 이래로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부서(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를 통해서 지원되었다. 2013년에는 지역과 주의 CASA훈련과 기술지원을 위해 $4 million 이상이 지원되었다. 추가적인 지원은 아동을 위한 배심원들, 개인들과 다른 사적 기부자들로부터 온다. 전국CASA협회는 유명인들, 서비스 기관들, 회사들, 정부당국과 개인 기부자들과 같이 헌신적인 지지자에게 의존한다. 이러한 미션 파트너는 협회의 전체 사명을 위해 가장 최상의 지원을 제공하며, 폭넓은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배려하는 기관들은 전국CASA협회의 일에 기금지원과 멤버프로그램으로 연간 $100 million 이상을 기부한다. 뿐만

아니라 CASA 프로그램은 미국 의회의 양당으로부터 폭넓은 지원을 받는다. 의회는 아동학대 및 방임 피해자에게 이용 가능한 CASA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나도록 교부금을 승인한다.

2. 'I am for the child' 캠페인

전국CASA협회의 2012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협회는 2011년부터 'I am for the child'의 슬로건을 가지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 캠페인의 목표는 가정위탁과 소년사법체계 내에 있는 모든 아동이 자신의 편에 서있는 CASA 자원봉사자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CASA미션의 효과를 알리기 위해서 대량의 인쇄물, 웹,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국CASA협회는 전국의 CASA/GAL 프로그램에 자료를 제공하고 캠페인을 지원한다.

이 캠페인을 통해 FLorida 주의 경우에는 캠페인을 시작한 1년 사이에 자원봉사자들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Florida 주의 Northwest Panhandle에서는 35%, Tampa Bay Area 지역에서는 15%, Palm Beach County에서는 25%의 자원봉사자가 늘었다. 이 캠페인을 위한 행사에서 'I am for the child'의 슬로건 확산을 위해 전국CASA협회가 만든 자료를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북마크, 팜플렛, 배너를 사용했는데, 배너는 은행, 사업장, 병원, 야구장이나 여러 스포츠 행사에 설치된다. 또한 공공장소에 떼어서 붙일 수 있는 포스터 제작, 자원봉사자 모집 보드를 'I am for the child' 자료에 기초하여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 2012년 가을에 시작한 캠페인에서는, 잠재적인 자원봉사자를 독려하기 위해 CASA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2013년 새해결심'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밖에 신문이나 라디오를 통해 상당한 미디어의 관심을 끌어냈다.

IV. CASA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

비영리 단체 Boston CASA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CASA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는 크게 질 높은 옹호(high quality advocacy)의 가능성과 아동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better service to children), 그리고 아동복지 비용을 크게 절약하는 투자(an investment that yields huge saving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다수의 연구 결과(Leung, 1996; Litzerfelner & Petr, 1997; Calkins & Millar, 1999; Britner & Mossler, 2002; Brit Weisz & Thai, 2003; Caliber Associates, 2004; Litzelfelner, 2008; Berrick & Durst, 2014)에 의해 뒷받침된다.

먼저, CASA 프로그램은 질 높은 옹호를 제공한다. 판사들은 아동학대 및 방임 사례의 절반을 CASA 자원봉사자들에게 할당한다. 판사들은 그들의 사례를 맡길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판사, 변호사, 아동복지사 그리고 부모들은 CASA가 그들이 담당하는 아동에게 효과가 있다고 압도적으로 보고한다. 이용 가능한 CASA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들은 CASA를 주로 더 어렵고 복합적인 사례들(이전에 학대를 당하거나 아동복지의 혜택을 받은 사례, 극단적인 방임 사례,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 및 아동이 상당한 수준의 위험에 처해있는 다른 사례)에 할당한다. CASA 자원봉사자들은 유료 변호사들보다 집에 있는 아동을 방문하기 훨씬 더 쉽다. 또한 아동과 가족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더욱 쉽다. CASA 자원봉사자들의 권고는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며, 그들의 보고서로 인하여 아동들과 가족들에게 많은 서비스가 명령되었다.

또한 CASA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CASA가 담당하는 낮은 사례수는 법원이 아동을 위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사람의 CASA가 다루는 사례 건수가 하나 혹은 두 건 이상을 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맡은 아동에게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관심을 줄 수 있다. 또한 CASA가 배치되어 있는 아동은 그 아동의 상황에 대해 자원봉사자들이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명령한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서비스는 더욱 주의 깊게 설정되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은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CASA 프로그램은 아동복지 비용을 크게 절약하는 투자이다. 연방정부는 모든 아동학대 및 방임 사례에 있어서 소년법원과 가정법원이 소송후견인(guardian ad litem)을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변호사 혹은 CASA/GAL 자원봉사자일 수 있다. CASA 프로그램은 가정위탁보호에서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도록 도움으로써 아동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만일 가정위탁에 있는 아동의 기간(중앙값이 18개월인) 중 1달을 줄이면, 대략 $2.75 billion 달러를 절약을 할 수 있게 된다. 2010년에 CASA/GAL 자원봉사자들은 5.8 million 이상의 시간을 아동옹호에 기여했다. 그러한 역할 수행을 보상하면, 전체 비용은 $300 million 이상이 된다. CASA 자원봉사자가 있는 아동들은 장기위탁보호에서 실질적으로 시간을 덜 보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ASA 자원봉사자가 관여하는 사례는 “영구적인 결정”이 나기 더욱 쉽다. 즉 아동들은 CASA 자원봉사자가 관여하지 않는 사례보다 아동복지 시스템에 재진입하는 경향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CASA가 있는 아동의 9%만이 아동복지시스템에 다시 들어온다. 이는 CASA봉사자에 의해 도움을 받지 않는 아동들의 16%가 시스템에 재 진입하는 것과 비교된다.

덧붙여, Lenard Edwards(2009) 판사는 CASA가 한 번에 한 아동만 담당하므로 교대하거나 재할당되지 않으며, 법원이 아동의 삶에 최선의 가능한 결정을 하도록 돕는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로 독특하다고 말한다. 그는 위탁청소년들에게 법원시스템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본인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CASA자원봉사자라고 응답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CASA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한다. Edwards 판사는 CASA프로그램이 지역사회가 발전시켜온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효율성이 높은 서비스이며, 미국의 모든 소년법원 판사는 자신의 카운티에서 CASA프로그램을 만들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모든 아동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CASA는 법원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입증된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효과에 힘입어 최근에 CASA 프로그램은 미국의 아동복지 시스템에서 여러 형태(Berrick & Durst, 2014; Corr & Danner, 2013; Pomeroy & Parrish, 2013)로 발전하고 있다. 먼저, 일반 시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훈련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의 일부로서 시행되고 있다. Berrick & Durst(2014)에 의하면 2009년에 'CASA Volunteerism initiative'가 서부의 한 사회복지대학에서 그 지역 CASA 기관과 협력하여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을 받고 CASA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학생들은 그들의 경험에 대한 보고에서 동일하게 긍정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대학원생들에게 독특하고 효과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지역의 가정위탁 청소년의 삶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rr & Danner(2013)에 의하면 영유아기와 아동복지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Court-Appointed Special Advocate Strong Beginning'이라는 5주간의 고급훈련이 만들어졌다. 이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은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과 CASA 프로그램의 두 아동복지 분야를 결합시킨 것이다. 영유아기와 아동복지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이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은 학대나 방임의 피해를 입은 장애영유아를 더욱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된다는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Pomeroy & Parrish(2013)는 아동복지 시스템 내에 있는 아동들이 다른 아동들보다 5-10배 더'Fetal Alcohol Spectrum Disorders'를 갖기 쉽다는데 기초하여, CASA 자원봉사자에게 Fetal Alcohol Spectrum Disorders online 훈련을 제공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CASA가 이러한 증상을 가진 아동을 식별하여 평가와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FASDs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FASDs를 가진 아동을 식별하여 의뢰하고 옹호하는 데에 편안함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V. 논의 및 시사점

지금까지 미국의 CASA 프로그램의 특성과 발전과정 및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CASA 자원봉사자들은 미국의 아동보호 시스템과 사법체계 내에서 피학대·방임 아동을 위해 법정에서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하고 필요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제공 상황을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궁극적인 목적이 피해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기적절하게 영구적인 가정에 배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었다.

David Soukup 판사가 35년 전에 아동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옳은 판단을 하고자 시작한 CASA 운동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CASA 운동은 오늘날 미국의 소년법원과 가정법원에 아동친화적인 문화를 확산시키고 제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법원의 판사들이 CASA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CASA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훈련하고 지원하여 아동친화적인 실천을 하고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전국CASA협회의 'I am for the child.' 캠페인은 지역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CASA의 미션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CASA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아동보호 시스템과 사법체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CASA 프로그램은 피학대·방임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판사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법원이 시민 자원봉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법체계 내에 도입한 점은 매우 독특하고 획기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지역의 뜻있는 자원봉사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훈련시켜 일대일로 철저한 사례관리를 하게 한다는 것은 피해아동의 보호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의 질과 양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CASA의 활동에 만족스러워하는 것(Litzelfelner, 2008; Edwards, 2009) 볼 때, 우리나라 가정법원에서도 CASA 자원봉사자 제도를 활용한다면 피학대·방임아동의 보호를 위한 개입에 있어 보다 아동친화적인 사

법체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훈련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아동보호 시스템에서 관련 분야 종사자 즉 아동학대, 가정위탁, 입양 관련 종사자의 인력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CASA 프로그램은 아동친화적인 사명을 지향한다.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채택하는 법원은 기본적으로 모든 절차와 결정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한다. 이러한 관점과 실천의 중요성은 2008년에 제출된 우리나라의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UN아동권리위원회가 2011년에 최종 발표한 권고사항(U.N. Doc. CRC/C/KOR/CO/3-4 , 2012)을 검토해면 더욱 명확해진다. 위원회는 아동과 관련되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뿐 아니라 법률, 행정, 사법절차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위원회는 아동친화적인 절차규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피해아동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이 더 존중 받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적절한 법 조항과 규정을 통해 모든 범죄의 피해아동과 목격자 아동 즉, 학대, 가정폭력, 성적 혹은 경제적 착취, 유괴, 인신매매의 피해자와 그러한 범죄의 목격자 아동이 협약이 요구하는 보호를 받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CASA 프로그램의 도입은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이행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셋째, CASA 프로그램의 효과와 우수성의 인정으로 미국의 의회와 연방정부는 교부금을 승인·지원하고, 다수의 민간 기부자들은 지속적으로 많은 기부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이후 전개되고 있는 전국적인 캠페인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중요한 행사이며 동시에 일반 대중에게 아동옹호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인식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아동, 일반 대중 및 아동관련 직업 종사자 사이에서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우려하

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였다.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시키고,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 단체들이 협약에 대해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하며,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CASA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지역의 시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훈련시킴으로써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재능기부를 원하는 많은 시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 기대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과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특별히 따로 있지 않다. 최근 연이은 아동학대와 방임 사건의 뉴스에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부모에 분노만 하지 말고, 이제는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아동과 아동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한미현(2006). 아동보호서비스의 실제: 아동학대의 사정 및 사례판정, 집문당

Berrick, J., & Durst, W. (2014). Teaching Note-CASA Volunteerism: Preparing MSW Students for Public Child Welfare Practice.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50(1), 176-183. doi:10.1080/10437797.2014.856247

Britner & Mossler(2002). Professionals' decision-making about out-of-home placements following instances of child abuse. Child Abuse & Negelct, 26, 317-332.

Caliber Associates(2004). Evaluation of CASA Representation, Research Summary.

Calkins, C. A. & Millar, M.(1999). The Effectiveness of 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 to Assist in Permanency Planning. Child &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6(1), 37-45.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public of Korea, U.N. Doc. CRC/C/KOR/CO/3-4 (2012). www1.umn.edu/humanrts/crc/rep-korea2012.html

Corr, Catherine & Danner, Natalie(2013). Court-Appointed Special Advocate Strong Beginnings: rasing awareness across early childhood and child welfare system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DOI: 10.1080/03004430.2013.845564.

Leung, P. (1996). Is the Court-Appointed Special Advocate Program Effective? A Longitudinal Analysis of Time Involvement and Case Outcomes. Child Welfare, 75(3), 269-284.

Lenard Edwards(2009). Juvenile court corner: Why is CASA so important for our juvenile courts? The Bench: The official journal of the California Judges Association, 49(2), 6.

Litzelfelner, P. (2008). Consumer satisfaction with CASAs (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 Children & Youth Services Review, 30(2), 173-186.

Litzerfelner, P., & Petr, C. G. (1997). Case of Advocacy in Child Welfare. Social Work, 42(4), 392-402.

National CASA Association(2012). Standards for Local CASA/GAL Programs. 2012 Edition.

National CASA Association(2013). Judges' guide to CASA/GAL Program Development, 2004 Edition(Revised 2013).

Pomeroy E.C. & Parrish, D.E.(2013). Online Training on Fetal Alcohol Spectrum Disorders for Court-Appointed Special Advocates Volunteers, Health & Social Work, 38(3), 159-166.

Weisz & Thai(2003). The Court-Appointed Special Advocate (CASA) Program: Bringing information to Child Abuse & Neglect Cases. Child Maltreatment, 8(3), 204-210.

National CASA Association, www.casaforchildren.org

National CASA's 2012 Annual Report, http://nc.casaforchildren.org/apps/annualreport2012/index.asp

Boston CASA Program, www.bostoncasa.org/

아동학대 가해자 80% 부모, 38.7%가 거의 매일 학대당해 '충격', 동아일보, 2014.4.13

아동 학대를 일반 폭력罪처럼 다룬 '자판기 판결', 조선일보, 2014.4.12

칠곡兒 담임 "귀에서 피 줄줄.. 신고도 소용없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14.4.9



< 좌장 >

이재연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토론자 >

오동석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철홍 과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송준헌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이현주 부장 (중앙입양원 정책연구부)

장화정 관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영순 본부장(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

아동의 인권과 사법체계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Ⅰ. 머리말

한국 사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수치로 나타난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일지 모르지만, 그 과실은 고스란히 극소수의 몫이고 대다수는 불안정한 삶을 가까스로 이어가기에 행복할 수 없다. 그 속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속적인 아동의 삶은 약자 중의 약자이기에 더욱 더 고달플 수밖에 없다. 사법체계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절실한 면이 없지 않지만, 아동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있지 않는 한 실질적인 아동 인권의 보장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Ⅱ. 아동의 인권 보장과 사법체계

1. 피학대 아동의 인권

가.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

「아동학대 실태조사」(보건복지부・숙명여대 산합협력단, 2011)에 따르면,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25.3%이다. 2011년도 우리나라 만 0세 -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는 9,921,012명이므로 피해아동 인구수는 2,510,016명으로 추정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건수는 총 10,146건이고, 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6,058건이다(이여진, 2012: 5). 드러나지 않는 아동학대 실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 많은 경우 피학대 아동이 신고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지금은 확실해야만 신고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의심되면 무조건 신고하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 교사, 의사 등의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다. 자주 멍이 들고 사람을 기피하는 아이가 학대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나치게 조숙하거나 작은 자극에도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도 학대받은 징후다. 특히 부모 등 학대행위자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꺼리는 것도 학대일 가능성이 높다. 신체뿐 아니라 정서적인 폭력도 학대다."[86]

나. 보호 조치

(1) 응급조치

2011년도 학대행위자 중 부모(친부모, 계부모, 양부모)가 전체의 83.1%를 차지한다(이여진, 2012: 5).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조치가 즉각 취해져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7조 제2항의 임시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아동 격리 보호 기간은 72시간을 넘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48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27조 제3항). 보호조치는 아동을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켜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법령은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아동복지법 제27조 제4항). 그러나 보호 조치가 충분치 않다.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특례법") 제12조는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규정하

86) 경북대 소아정신과 정운선 교수의 인터뷰: 한겨레 2014. 4. 12.

고 있다.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특례법 제13조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퇴거 또는 접근 금지 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2) 친권에 대한 제한

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 2001년에서 2010년 8월까지 친권행사 또는 상실이 이루어진 경우는 9 건이었다. 반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74명이었다(이여진, 2012: 12).

독일의 경우 가정법원은 필요시에는 직권에 의해 바로 친권을 상실시키는 조치까지 내릴 수 있으며, 아동의 복리에 위험이 있어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그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고,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임시처분으로도 할 수 있는 등 신속한 친권 제한 조치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이여진, 2012: 20).

특례법 제9조는 친권상실청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아동학대중상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제6조 아동학대 상습범의 경우,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1항). 검사가 이러한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2항). 또한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3항). 범죄자에 대한 기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검사를 통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약하다. 결국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곧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례법 제47조 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은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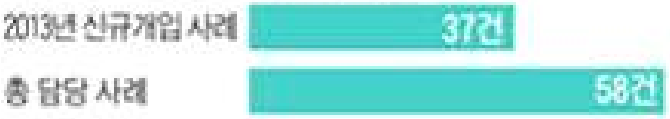
(3)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을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법원의 판결이 아닌 행정처분의 수범자는 피해아동이나 학대행위자가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어서 아동보호에 한계가 있다. 친권자가 아동의 격리보호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응방법이 없다(이여진, 201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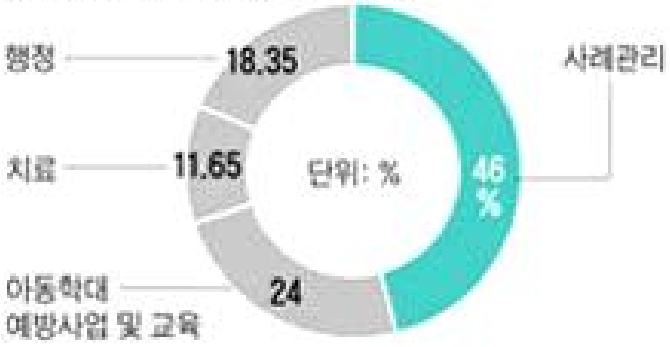
독일의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자녀와 부모를 격리하고 아동을 가정위탁하거나 아동보호 시설에 보내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즉, 부모의 친권 중 일부를 제한하거나 전부를 박탈시킬 수 있음. 예를 들면, 친권 중 일부인 거소지정권만 상실시킬 수도 있다(이여진, 2012: 20).

특례법 제47조 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은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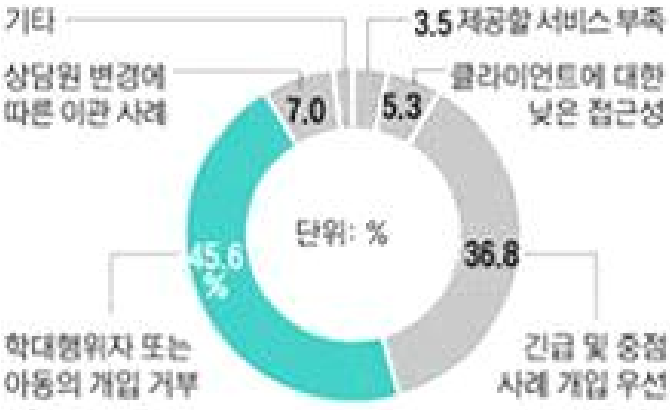
상담사 1인 평균 담당 사례 건수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비율



아동보호 장기 미개입 실패 이유 중복응답



특례법 시행과 관련해 갖춰야 할 제반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 우려 혹은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가



⑷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제한・퇴거・접근금지 명령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이여진, 2012: 15). 친권자가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 아동의 정보가 노출되고, 친권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전입시켜 놓고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다(이여진, 2012: 16). 형사절차 없이 피해자가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이여진, 2012: 17). 아동보호 시설에서는 아동의 주소지가 변경되면 아동 명의의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없어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이여진, 2012: 16).

<그림 1> 아동보호 장기 미개입 실패 이유(중복응답)87)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은 통상적으로 아동・청소년법원 또는 가정법원에서 관할하여 부모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주(州)가 보호자로서 행동할 법적 권한에 따라 개입하며, 아동보호기관이 제시하는 보호조치를 법원에서 결정하기 위하여 판사가 24시간 365일 대기하고 있다(이여진, 2012: 21). 일본의 경우 피해아동이 일시보호나 시설보호 상태에 있을 때 학대

87) 조선일보 2014. 4. 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07/2014040702757.html>, 최근검색일: 2014. 4. 19.

행위자인 보호자에게 해당 아동의 주소나 거소를 밝힐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데리고 갈 우려가 있는 등 다시 아동학대가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아동의 보호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이 보호자에게 아동의 주소나 거소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이여진, 2012: 21).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을 학대한 보호자가 피해아동의 주소, 거소, 취학하는 학교, 아동이 이동하는 장소 및 그 부근을 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러한 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대해서 형사처벌의 벌칙 규정이 있다(이여진, 2012: 22). 독일의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학대 행위자를 가정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고, 학대행위자의 퇴거나 일정한 거리내의 체류 금지 등을 임시조치로 할 수 있다(이여진, 2012: 21-22).

특례법 제47조 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은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를 포함하고 있다.

다. 2차 폭력 피해 방지

아동학대 피해아동 또는 관련아동의 경우 "안전하다는 느낌"이 중요한데, 언론의 취재와 보도는 "피학대 아동에 대한 가해행위"이다.[88] 또한 아동이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 또는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2차 폭력이 이루어진다.

"2005년부터 7년 동안 경북해바라기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을 돌봤다. 당시 여러 피해자들의 수사 과정을 모니터링 했는데, 정말 놀랄 만한 장면이 많았다. 과거 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에게 가해자를 처벌하고,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애원한 적이 있다. 경찰은 다 듣고서 가해자를 불러 조사했다. 엇갈리는 진술을 받고 나면, 다시 피해자에게 가서 '가해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네 말이 맞냐'는 식으

88) 경북대 소아정신과 정운선 교수의 인터뷰: 한겨레 2014. 4. 12.

로 질문했다. 심지어는 대질도 시켰다. 이런 식의 수사는 2차 가해나 다름없다. 아동에게는 '네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니'라는 식으로 최대한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답변을 유도해야 한다. 예, 아니요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 덧붙이는 '그렇지?' '맞지?' 등의 압박은 피해야 한다.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아동복지법은 13살 미만의 아동이 진술을 하기 힘들어할 경우, 수사기관과 아동 사이에서 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몰라서 대부분 활용하지 못한다."[89]

라. 사후 보호 조치

피해아동의 대다수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2011년의 재학대 발생률, 즉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 신고 비율은 9.3%이다(보건복지부,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대부분이 '원 가정 보호'되고 있다. 2011년 72.6%가 초기조치시 그리고 62.8%가 최종조치시 '원 가정 보호'되었다(보건복지부, 2012).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사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8조). 그러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공된 서비스의 80.7%가 상담이었다. 학대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관계 회복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 가족관계에서 아동의 인권

몇 가지만 언급한다. 첫째, 친권관계에서 아동의 인권 보장이다. 민법 제912조는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1항), 그리고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아동의 의견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

89) 경북대 소아정신과 정운선 교수의 인터뷰: 한겨레 2014. 4. 12.

지 않다. 물론 제909조의2 제4항에서 친권자의 지정 등 관련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의사는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또한 민법 제912조 제2항의 신설에 대하여 미성년 자녀의 당사자성은 일단 인정하면서도 미성년 자녀를 위한 소송후견인제도(또는 절차보좌인제도)를 신설하거나 특별대리인제도를 개편하는데 따르는 시간적 소요나 인적・물적 부담을 줄이면서 현행법 체제를 유지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김유미, 2013: 112).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임시방편의 제도가 아니라 좀 더 치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이혼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 보장이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자의 양육권 결정 또는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도 아동의 의견 존중에 관한 원칙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837조 제3항 역시 양육에 관한 사항 협의에서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할 뿐이다.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에 관한 규정은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자의 면접교섭권이 인정(김유미, 2013: 99)되고 있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행사를 위한 제도적 보장은 제한적이다.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자의 의견의 청취 규정은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셋째, 가정법원의 심판에서의 의견 청위도 마찬가지이다. 가가소송규칙 100조에 따르면,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자(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법원의 자의 의견 청취 여부는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되, 아동의 성숙도와 의사표현 능력의 정도에 따라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가해 아동의 인권 문제

한국 사회에서 아동 인권과 사법체계의 관계는 학교 폭력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학교 폭력의 원인에 대하여 가해 학생 자신의 문제점, 가정환경의 영향, 획일적 집단주의 교육문화, 스트레스 가설 모델 등으로 진단한다(정재준, 2012: 84-87). 일본 문부성의 학생 문제행동 대응 방침은 학생 지도 기준의 명확화, 방침에 근거한 지도, 자율적 규범의식 양성, 징계처분 및 회복 조치, 출석 정지 제도 등이다(정재준, 2012: 8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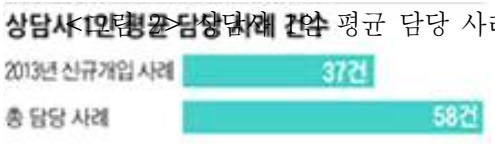
그런데 한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접근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였다. 「학교 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엄격한 법 집행과 처벌을 규정하였다.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려는 시도 또한 그 연장선상이다(정재준, 2012: 95). 교육부는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한 교육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하였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승소하였다.[90] 문제의 원인에 대한 근본대책을 고

90) 한겨레 2014. 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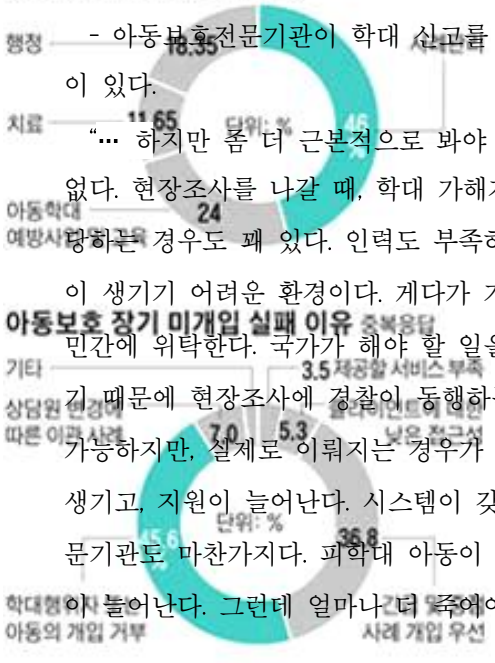
민하지 않고 엄벌주의 일변도로 대처하는 정부의 무책임이 드러난 사건이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

아동 인권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 인권 전반에 걸쳐 정부 각 부처의 협력 아래에서 지방정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조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동 인권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각 부처가 해야 할 임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정부의 민간 위탁 만능주의는 책임 회피의 수단일 뿐 아니라 민간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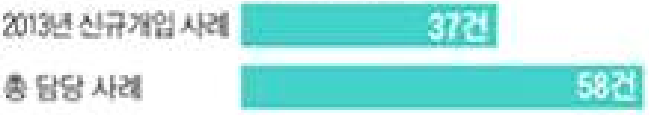


(그림 2> 상담사 1인 평균 담당 사례 건수[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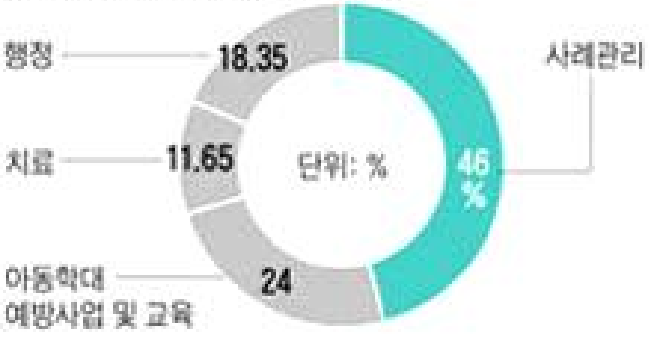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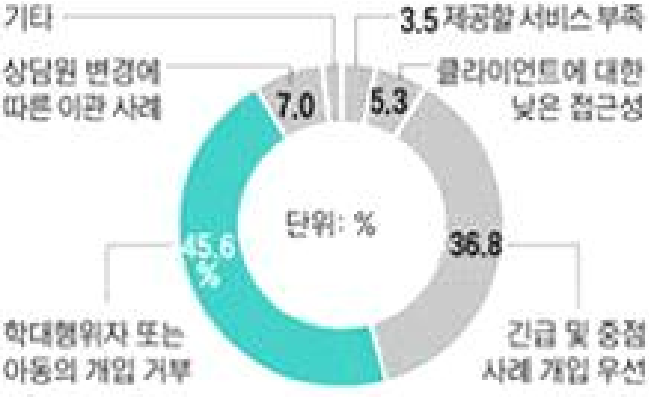
상담사 1인 평균 담당 사례 건수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비율



아동보호 장기 미개입 실패 이유 중복응답



특례법 시행과 관련해 갖춰야 할 제반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 우려 혹은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가



해야 한다."[92]

<그림 3>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비율[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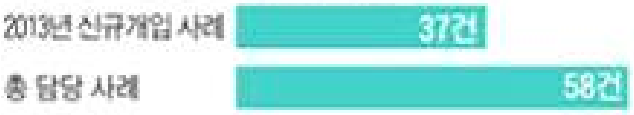
5. 아동의 인권보장 생태계 조성

가. '사회적 안전망'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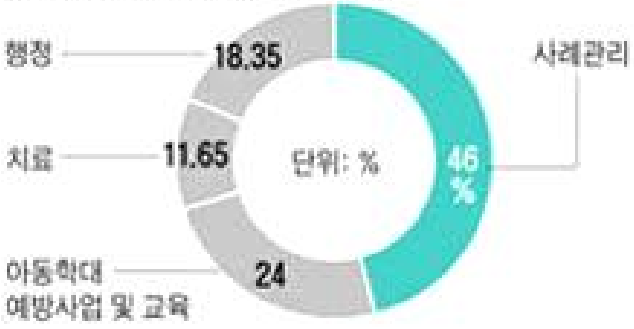
학대행위자인 부모들의 특징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30.4%)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23.3%)이다. 이어서 부부 및 가족 갈등(10.1%), 성격 및 기질 문제(8.0%)이다(보건복지부, 2013). 사회복지정책의 확장이야말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대책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자료는 아동학대 발생원인을 개인, 가족, 사회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 한편으로 정부의 대증적 대응, 다른 한편 개인의 안정된 삶을 파괴하는 '경제적 폭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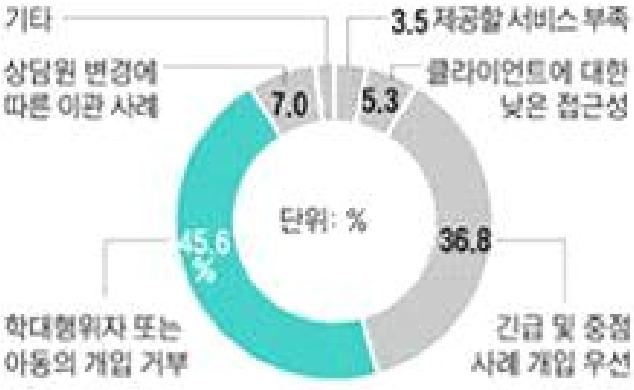
92) 경북대 소아정신과 정운선 교수의 인터뷰: 한겨레 2014. 4. 12.
93) 조선일보 2014. 4. 8.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비율



아동보호 장기 미개입 실패 이유 중복응답



특례법 시행과 관련해 갖춰야 할 제반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 우려 혹은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가



아동 인권에 대한 방치는 결국 정부의 무지 탓이다. 발언의 기회를 박탈당한 아동의 목소리는 정부 내에서 무시되고 있다. 2014년 2월 28일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는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국고 환수가 맞지만, 지역의 '학대받는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전문기관을 왜 그 지역이 아닌 국가에서 맡아서 해야 하느냐"고 발언했다.[94] 법제의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러한 정부의 인식 태도이 바뀌지 않는 한 현실이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 2005년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자체에서 운영된다. 중앙정부 사업은 70~80%를 국고에서 지원하지만, 지방 이양 사업은 예산의 7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95]

<그림 4> 특례법 시행과 관련해 갖춰야 할 제반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는가[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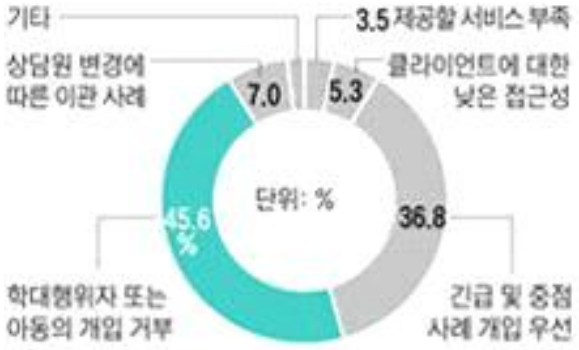
94) 조선일보 2014. 4. 8.
95) 조선일보 2014. 4. 8.
96) 조선일보 2014. 4. 8.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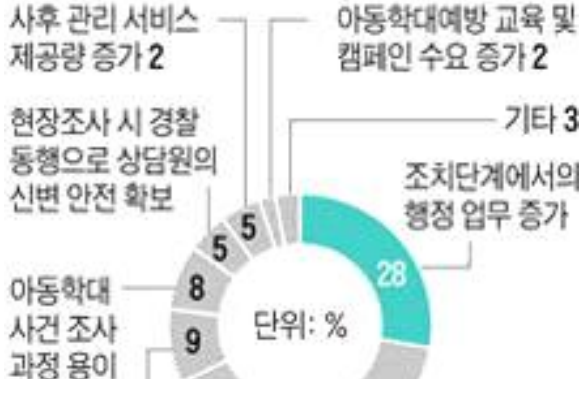
아동보호 장기 미개입 실패 이유 중복응답



특례법 시행과 관련해 갖춰야 할 제반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 우려 혹은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가



<그림 5>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 우려 혹은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가[97]

Ⅱ. 아동 인권 관련 사례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유럽평의회·미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토론

1. <사례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아동 사법체계의 현실>

발제자가 지적하였듯이 소년 사법 하한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춘 것은 국가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소년 범죄의 증대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이 부족하다. 손쉽게 처벌을 통해 보이기식 접근이기 때문이다. 가정의 붕괴와 사회안전망의 부재가 과연 어디에서 기인한

97) 조선일보 2014. 4. 8.

것인지 성찰이 필요하다. 다만 그동안 수많은 사례에서 아동의 다양한 위치에 따라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의 구축을 위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점에서 갈 길이 멀다는 생각뿐이다.

2. <아동 사법체계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시각: 일반 논평 (2007)을 중심으로>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형벌과 마찬가지로 "법률과 적법한 절차"따라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동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할 필요"는 그 표현에도 불구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 또한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 입증 또한 형사소송법의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최병각, 1998: 65-66 참조; 최병각, 2014). 또한 발제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소년법 제4조의 소년부의 보호사건 중 제1항 제3호는 삭제되어야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그러나 소년 사법 상한연령의 하향은 민법 제4조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개정(2011. 3. 7. 전문개정)됨으로서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법체계상 적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3. <유럽평의회의 각료회의의 아동-친화적 사법에 대한 지침>

아동친화적 사법에 대한 유럽평의회의 지침은 두 가지 점에서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하나는 사법제도 자체가 얼마나 국민에게 복무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그 바탕 위에서 아동에 대한 인권 보장을 사법제도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후자의 문제를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구현하면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제도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4. <미국의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사례: 법원임명특별옹호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CASA/GAL 자원봉사자 제도는 "훈련 받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판사에 의해 임명"되어 "소송을 위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의 아동보호기관에 의한 아동의 보호체계가 정립된 상태에서 이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Ⅳ. 맺음말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는 여전히 미흡하기 짝이 없다. 말로는 아동이 인권의 주체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성인의 종속물로 보는 성년들의 인식이 문제이다. 정치권이나 정부 또한 표의 획득이나 여론의 형성에서 아동은 전혀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아동 학대가 사회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 아동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 또는 사회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삶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참고문헌

김경륜(2014). 미국의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사례: 법원임명특별옹호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례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아동 사법체계의 현실. 아동을 위한 그리고 아동과 함께하는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숙명여대. 2014. 4. 25.

김유미(2013). 자녀의 복리와 친권법의 과제. 법학연구 54(1).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93-119.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 2011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2012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

안동현(2014). 사례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아동사법체계의 현실. 아동을 위한 그리고 아동과 함께하는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숙명여대. 2014. 4. 25.

이여진(2012). 「아동복지법」상 학대 피해아동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NARS 현안보고서 180. 국회입법조사처. 2012. 12. 31.

이종근(2013).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61. 1-27.

정재준(2012).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한국・일본의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 53(2).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79-108.

최병각(2014). 아동 사법체계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시각: 일반논평(2007)을 중심으로. 아동을 위한 그리고 아동과 함께하는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숙명여대. 2014. 4. 25.

Council of Europe(유럽평의회)(2014). 유럽평의회의 각료회의의 아동-친화적 사법에 대한 지침. 아동을 위한 그리고 아동과 함께하는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숙명여대. 2014. 4. 25.

토론문

현소혜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아동학대 사건과 그에 대한 검찰·경찰, 그리고 법원의 대응방식을 둘러싼 비판적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친화적 사법체계」라는 매우 시의적절한 화두(話頭)를 제시하여 주신 한국아동권리학회 측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제에 걸맞게 여러 관련 쟁점을 폭넓게 짚어 주신 네 분의 발표자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4개의 주제발표를 통해 소개된 UN 아동권리협약, 유럽연합, 미국 등의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의 법상황이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할까 합니다.

2. 아동이 사법체계를 경험하게 되는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동이 "가해자",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입니다. 가해자로서의 아동을 다룸에 있어 기존의 사법체계가 가지고 있는 각종의 문제점(특히 낙인과 방치)에 대해서는 이미 앞선 발표에서 자세히 소개된 바 있으므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본 토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정보는 주로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3.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역시 2011년 개최된 제58차 회기에서 피해자 또는 증인으로서의 아동 보호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 아동 피해자의 사생활과 존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사법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소 길기

는 하지만, 당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 및 권고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2.「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16세 미만인 아동 피해자 또는 증인에게 영상녹화를 통한 진술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자인 아동을 위한 신문 및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여전히 부적절하다:

(a) 담당자의 녹화기술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와 증인들이 증언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b) 법원이 녹화된 증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c) 피해자와 증인이 적절한 고려를 받지 못한 환경에서 대질심문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d)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와의 화해(합의)가 요구될 수 있다.

(e)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부적절하다.

(f) 경찰 및 의료진과 같은 담당자가 피해자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g) 피해자들을 대하는 의료 또는 법집행 전문가들에 의한 언어폭력이 보고된 사례가 있다.

83.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친화적인 절차규정을 발전시키고, 피해자인 아동이 그의 사생활과 존엄을 더욱 존중받는 방식으로 다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며, 적절한 법률과 행정법규를 통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적·경제적 착취, 유괴, 인신매매 등 모든 범죄의 피해자 및/또는 증인인 아동에게 협약이 요구하는 보호를 제공할 것과 「범죄 피해자 및 증인인 아동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유엔 사법 지침(United Nations Guidelines on Justice in Matters Involvi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4. 위 권고는 주로 아동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안을 전제로 행해진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유형의 사건,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내용의 법률 제·개정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가령 최근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9. 29. 시행 예정) 제16조는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피해아동이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의 준용). 피해아동을 위해 선임된 변호사는 ① 검사 또는 경찰 단계에서의 피해자 조사, ②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절차 및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③ 증거물 등의 열람·등사권, ④ 소송행위 대리권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위해 포괄적인 보호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2)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변호사와는 별도로, 진술조력인이 조사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 36조의 준용).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피해아동의 나이,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해아동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사 및 심리·재판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 준용). 특히 당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 또는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4) 피해 아동의 진술내용 및 조사과정은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되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아동이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등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 준용).

(5)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증인지원시설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의 준용). 따라서 각급 법원은 피해아동이 재판 전후에 가해자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담당하기 위한 "증인지원관"을 두어야 합니다. 증인지원관은 ① 재판의 진행절차, 법정의 구조와 좌석의 위치, 증인신문의 의미, 증인신문의 순서와 방법, 증언과 피해자 의견진술의 방법 및 절차,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절차 등에 대한 안내, ② 증인신문 전후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③ 신변안전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경우에 따라서는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 준용).

(6) 물론 증인지원관은 평소 피해아동과 인적 접촉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피해아동을 위해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아동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도록 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의 준용), 진술조력인이나 변호사도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의 준용).

(7) 아동학대사건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절차에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아동은 자신의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기관장,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①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또는 ②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8) 아동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사한 보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진술환경 · 조사 등 횟수 등의 배려를 받을 수 있으며, 진술내용의 영상물 촬영 및 증거능력 인정, 증인신문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변호사의 선임 등이 가능합니다.

5. 위와 같은 제도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보다 안전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고, 그 진술의 진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아동친화적 사법체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6. 그러나 이와 같은 신속한 법 제 ·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동의 존엄과 인격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이나 일반 가사사건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1)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를 형사사건으로 송치하는 대신 가정법원에서 재량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

다. 아동보호사건이 형사사건과 다른 고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사건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동의 건전한 발달에 있는 이상, 형사절차에 준하여, 혹은 형사절차보다도 더 강력하게 아동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보호사건을 통한 원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각 가족 구성원간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행 체계 하에서는 아동보호사건에서 아동의 의견진술권 및 그 권리 행사를 위해 필요한 각종의 지원(보조인, 진술조력인,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등)에 관한 규정이 흠결되어 있습니다.

(2) 가사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학대가 형사사건이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가사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 및 친권자·양육권자 지정을 통해 피해아동을 사실상 가해자로부터 격리하는 사안, 친권상실 또는 친권제한선고 등을 통해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법적으로 격리하는 사안,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아동을 돌봐줄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사안 등을 보면 아동학대와 가사사건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사소송법」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및 제99조에 이혼사건에 부대(附帶)하는 친권자의 지정·변경, 양육에 관한 처분 및 변경, 면접교섭권 및 그 제한·배제 등에 관한 심판을 할 때 심판에 앞서 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그나마 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만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됩니다.

(4) 이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비추어 스스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때에는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및 변경, 면접교섭권, 친권상실 및 제한, 입양, 미성년후견의 개시 및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등 각종의 가사사

건에서 아동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스스로 의견을 진술할만한 능력이 없을 때에는 진술조력인 또는 절차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관이 후견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5) 물론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당해 아동을 둘러싼 환경 기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6조), 사건처리를 위해 아동의 가정 기타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그 밖의 조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의 의견과 복리를 최대한 존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6) 그러나 가사조사관은 법원이라는 공적 조직의 일부이므로, 인적·물적 조직을 확대하는데 예산상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일회적 권한을 가질 뿐이므로 지속적인 관찰과 개입을 필요로 하는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극히 협소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동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그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최상의 양육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아동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민간자원을 확보하고, 사법체계 내에서 그의 역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7. 이제 막 자리잡기 시작한 아동친화적 사법체계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아동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사건에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동 친화적 사법체계에 대한 토론문

– 소년법 적용연령 하향 문제를 중심으로 –

김철홍 과장(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I.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까지 아동인권관련 정책권고는 총 56건이다.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류해 보면 시민적 권리와 자유와 관련된 22건, 아동권리 일반원칙과 관련된 14건, 특별보호조치 9건, 교육권관련 8건,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2건, 기본적 건강과 복지 1건 순이다.

이 가운데 아동인권증진 사법체계와 관련된 9건은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포르로그라피에관한 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가입권고('03),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아동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보호방안 권고('04), 소년원법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의견표명('04),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 의견표명('05, '06), 소년법 개정안(적용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표명('07),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장구 사용 개선권고('08),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법령 및 정책권고('10), 성폭력피해 아동인권보호 및 지원정책 개선 권고('10) 등이 있다.

발제자분들은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연령하한선을 12세에서 10세로 하향 조정한 것, 연령상한선을 20세미만에서 19세미만으로 하향하는 것이 아동친화적 조치였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당시 법무부는 2007. 5.에 발표한 '촉법소년 선도와 비행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소년범죄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그 범죄내용도 살인·강도 등 심각한 경우가 많아서 촉법소년 등 저연령 소년에 대한 비행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비행 연령의 하향화, 흉폭화에 대한 예방대책으로서 연령하한선과 상향선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 과연 이런 조치가 과연 아동친화적 조치였는지, 소년범죄의 심각화 저연령화 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2007년도에 의견표명한 "소년법 개정안(적용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표명('07)"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2005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범죄가 심각화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왜냐면 2005년에 발생한 소년보호사건의 주요 죄명별 접수현황[98]을 살펴보면, 전체 소년보호사건중 43.5%가 절도에 집중되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29.3%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죄명별 분포만으로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가 심각화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소년범죄가 실제로 심각해지고 있다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의 수가 늘어야 할 것이나 소년사건의 총계에서 보듯이 지난 10년간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년범죄의 심각화 위협이나 우려가 크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98) 법무연수원, 범죄백서(2006)의 나타난 소년보호사건 주요 죄명별 접수현황을 보면 절도(43.5%), 폭력행위처벌법(29.3%), 특가법(2.8%), 강도(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2%),교통사고특별법(1.9%), 상해(1.3%), 도로교통법(0.8%), 폭행(0.4%), 유해화학물관리법(0.3%), 기타(9.0%) 등이다.

지난 10년간(1996~2005년)의 형사공판(제1심) 사건에서 다루어진 소년인원 수를 살펴보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 전체 소년의 수는 1996년 15,926명에서 1998년 21,388명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05년 4,296명에 이를 정도로 줄어 1998년 대비 1/5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다[99]는 것이다.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에 대해 당시 법무부는 2001~2005년의 통계를 인용하여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0년간의 보호사건의 연령별 분포의 변화를 보고, 2005년 한해 발생한 전체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중심으로 촉법소년의 범죄 위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표 1> 보호소년 연령별 인원(1996~2005년)

연령 / 연도	계	14세미만	14~15세	16~17세	18~19세
1996	30,992	5,605	10,136	10,381	4,870
	(100.0)	(18.1)	(32.7)	(33.5)	(15.7)
1997	37,559	6,729	11,838	13,534	5,458
	(100.0)	(17.9)	(31.5)	(36.1)	(14.5)
1998	37,081	6,264	12,158	12,867	5,792
	(100.0)	(16.9)	(32.8)	(34.7)	(15.6)
1999	32,348	5,222	8,886	12,386	5,854
	(100.0)	(16.1)	(27.5)	(38.3)	(18.1)
2000	32,270	5,587	9,058	11,863	5,762
	(100.0)	(17.3)	(28.1)	(36.8)	(17.8)
2001	27,314	2,696	6,865	10,843	6,910
	(100.0)	(9.8)	(25.1)	(39.6)	(25.2)
2002	24,048	2,564	6,239	10,471	4,774
	(100.0)	(10.7)	(25.9)	(43.5)	(19.9)
2003	22,569	2,679	5,787	9,249	4,854
	(100.0)	(11.9)	(25.6)	(41.0)	(21.5)
2004	19,958	2,458	5,633	8,276	3,591
	(100.0)	(12.3)	(28.2)	(41.5)	(18.0)

출처 : 사법연감 (범죄백서 2006, 234쪽에서 재인용)

99) 제1심 형사공판사건중 소년인원(1996~2005)을 보면 1996년 15,926명, 1997년 19,752명, 1998년 21,368명, 1999년 15,739명, 2000년 17, 446명, 2001년 9,483명, 2002년 8,305명, 2003년 5,961명, 2004년 5,212명, 2005년 4,296명 이다.

<표 1>과 같이 지난 10년간 보호사건의 연령별 변동을 살펴보면, 전체 보호소년의 인원은 1996년 30,992명에서 1997년 37,559명을 기점으로 2004년까지 계속하여 감소하다가 2005년에 다소 증가(21,135명)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호사건에서의 각 연령별 비중도 14~17세가 매년 60~70%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1996~2000년간 16~18%를 차지하였고, 2001년에는 9.8%로 대폭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추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년간의 촉법소년의 범죄추세에서 볼 때 촉법소년의 연령을 12세 미만에서 10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의한 12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르는 소년사건의 규모와 내용을 보면 2005년 7세~19세 사이의 전체소년범죄자 43,855명중 촉법소년 13세이하 사건은 0.5%(203명)로 극히 적은 수였고, 형법범에서 13세 이하 소년사건은 0.4%(153명)이며, 특별법범에서는 0.5%(50명)에 불과하는 것 등을 볼 때 소년범죄가 심각되어 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하한연령을 낮추려는 것에는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상한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려 하는 점에 대해선 수용을 하였다.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의 범위를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년법 적용 상한연령의 개정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본 것이다. 「공직선거법」도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춘 바 있고,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제64조 제1항) 등의 국내 다른 법률에서도 그 상한연령을 19세 미만 혹은 18세 미만으로 삼아 성년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하한연령을 낮추는 것은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안하고 있는 14세의 기준에서 못미

칠 뿐 아니라 오히려 퇴행한 것이므로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베이징규칙 제4조에서는 "형사책임연령에 있어서의 (…) 시작연령은 정서적, 정신적, 지적 성숙을 감안하여 지나치게 낮은 연령으로 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동 조항에 대한 주석은 "형사책임의 최소연령은 역사와 문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 만약 형사책임연령이 지나치게 낮게 정해졌거나 하한연령이 없다면 책임의 개념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여 형사책임연령의 하한을 지나치게 낮추지 말도록 해설하고 있다.

또한 최근 아동권리협약위원회에서는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CRC/C/GC/10 2007. 2. 9.)을 통해 당사국은 형사책임의 최소연령을 12세 이하로 낮추지 말 것과 "각 당사국은 형사책임의 최소연령을 지나치게 낮게 정하지 말고 기존의 낮은 형사책임연령을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아동의 형사책임연령을 12세 이하로 낮추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소년법 개정안」과 같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대표적인 관련 국제인권기준인 아동권리협약과 베이징규칙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소년에 대한 형벌책임연령이 지나치게 낮았던 영연방 국가들과 스위스에서는 7세에서 10세로 높이고 있고, 여타의 국가들도 이를 높이는 추세임을 볼 때 국제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Ⅲ.

아동들에게는 엄격한 처벌보다는 교육적・치료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를 일으키는 비행청소년도 사회보호를 못 받은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이들이 아직 미성숙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 사회로부터 상처받은 것을 문제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봐야한다.

비행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개별적 고려와 존중이 처벌대응보다 장기적으로는 보다 효과적이다. 학교와 가정에서 격리된 아동의 비행 증가는 또 다른 폭력의 재생산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을 학교로부터 분리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 이들의 잘못된 부분을 재학습시키고 상처를 치유하여 학교나 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복귀·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및 대안교육의 확충이 필요하다. 예컨대 비행청소년에게도 갈등해결, 분노조절, 비폭력대화 등의 집중적인 훈련을 받도록 전문가 및 복지공간을 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비행청소년은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행청소년 치료와 함께 부모에 대한 치료적 교육도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아동인권을 존중할 것과 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받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종합정책권고’에서 아동이 권리 주체임을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가칭)제정을 권고하였다. 아동 친화적 사법체계 구축을 위해서 기본법으로서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법 제정이 어렵다면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목록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토론문

송준헌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1. 들어가며

제가 아동복지정책과에 근무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아동 관련 사건과 기사가 상당히 많다는데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입양간 아동의 사망사건도,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인권 문제도 참 불편합니다. 최근 2주 정도 기간에 언론에 보도된 기사 제목들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절반 죽는 게 낫다는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초중고생 100명 중 7명 정신상담 필요하다, 고교생 수면시간 6시간 미만이다, 절반은 자는 1교시 수업, 10~19세 청소년 25% 스마트폰 중독(2년새 2배), 아토피 환자 연 100만명으로 4세 이하 35%, 9세 이하 48.5%, 변비 환자 3명 중 1명은 9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결핵 환자 급증, 그리고, 10년 동안 많은 예산과 노력을 쏟아 부었음에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초저출산의 덫.... 아동과 관련하여 희망을 주는 기사를 보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딱 한 곳이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로 정해졌다는 소식이 그나마 기억하는 훌륭한 기사입니다. 더 절망적인 얘기는 우리 아이들의 주관적 행복도가 OECD꼴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점수도 낮다는 점입니다. 130점 만점에 평균 점수는 100점인데 우리는 72점 수준입니다.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낙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동 분야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아주 작은 특성 때문인지 여러 계기를 통해서 정책이 보완·발전해 온다고 생각합니다. 사건과 언론이 큰 축으로 작용하고 있고, NGO의 옹호활동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인 기준과 실천이 엄청난 지렛대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동을 분류하는 기준이 958만명의 일반아동을 모집단으로 두고 가정에서 이탈되는 3~4만명의 요보호아동과 100만명의 빈곤아동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토론회에 불려가서야 이주아동으로 애기되는 국내 거주 외국아동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내아동에만 한정했던 제 시각을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가정법원 판사 및 가사조사관 분들을 통해서 협의이혼에서의 아동의 권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과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사법체계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아이들에 대해 새롭게 배우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이라는 범주는 전인적이어서 이를 여러 각도에서 보게 되는데 이번 또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동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공통된 시각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라는 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 친화적이라는 관점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정책 분야가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의 분야보다 조금 더 독특한 점의 하나는 아마도 법원의 개입과 책임 및 역할 등이 여느 분야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년사법에 대한 논의는 다른 아동정책 이슈와 비교하면 제게는 많이 낯선 영역입니다. 좀 더 배우고자 발표문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질문

<주제발표 1·2>

안동현 교수님 발표문은 곧바로, 최병각 교수님 발표문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2007)을 기초로 우리나라 아동사법체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게 아동사법체계는 상당히 생소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사법체계가 아동친화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단계에 와 있고, 어떤 쟁점 혹은 개선과제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관계자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지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기를 원합니다.

안교수님은 서론에서 아동이 당사자로서 관련되는 사법체계는 형사, 민사, 행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여전히', '많은 면에서', '일부 사안에 따라서는'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 유책 하한연령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교수님은 결론에서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제와 조직은 갖추고 있지만, 각 기관마다 예산과 인력의 부족이 문제되고 상호 연계도 원활하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만, 본문에서 이와 연관된 소재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 중반부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2007)을 준거로 우리나라 아동사법체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유책성 연령기준(하한연령 및 상한연령) 설정, 우범소년 규정, 진술거부권과 증인신문권이 실무에서 사실상 빈번하게 차단되는 상황, 상소권 제한 등을 들고 있습니다.

두 분의 발표문을 통해서 제기된 사안들이 우리나라 아동사법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뒤집어서 그 밖의 다른

문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의 장애요인(약한 고리)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고 풀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금 더 확장해서 정리해주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교수님 발표문 말미에 요약 소개하고 있듯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1년도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아동사법체계와 관련하여 이행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문을 아래와 같이 옮겨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주제발표와 어떻게 연관되는 지, 어떻게 이행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소년사법운영

80. 위원회는 당사국 내 청소년 비행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재범률 등 청소년 범죄율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비행아동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을 다루기보다 성인 구금시설에 비행아동을 구금하는 등, 아동 범죄자를 사회가 효과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조치 대신 징계조치를 늘리는 식으로만 청소년 범죄 대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청소년전담검사 임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들이 실제 소년사법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받지 않아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81. 위원회는 청소년 범죄 및 높은 수준의 재범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소년사법제도를 특히 37조, 39조 및 40조를 비롯한 협약과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 규칙),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리야드 가이드라인), 피구금소년보호규칙(하바나규칙), 형사사법제도 하에서의 아동을 위한 비엔나 행동지침, 청소년 사법시 아동의 권

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0호(2007) 등을 포함한 여타 관련 기준에 완전히 합치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a)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하라.

b) 형법위반 혐의를 받는 아동에게 충분한 법률 및 기타 지원을 법적 절차 초반과 전반에 걸쳐 제공하라.

c)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교화시설 혹은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이 절대로 성인과 함께 구금되지 않고, 안전하고 아동을 배려하는 환경을 제공받고,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음식, 교육, 직업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라.

d)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자신의 배치에 대한 결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e)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자유박탈 대신 다이버전(diversion),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집행유예 등 다른 대안을 장려하라.

f) 유엔 청소년사법정의에 관한 기구간 패널과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및 비정부기구 등 패널 회원기구들이 개발한 기술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패널 회원기구로부터 소년사법 분야의 기술적 지원을 구하라.

범죄 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8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6세 이하 아동 피해자와 목격자가 영상물 녹화로 진술을 할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심문 및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부적절하다.

a) 관계자들이 영상물 녹화에 능숙하지 않아 피해자와 목격자가 진술을 반

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b) 법원이 영상 진술자료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c) 피해자와 목격자가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환경에서 반대심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d)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의 합의가 요구된다.

e) 피해자 프라이버시를 위한 보호장치가 불충분하다.

f) 경찰관과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g) 의료진 및 법집행관이 피해자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83. 위원회는 아동친화적인 절차규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피해아동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이 더 존중 받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적절한 법 조항과 규정을 통해 모든 피해아동과 범죄목격자 아동, 즉, 학대, 가정폭력, 성적 혹은 경제적 착취, 유괴, 인신매매 등과 같은 범죄의 피해자와 목격자 아동이 협약이 요구하는 보호를 받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사국이 아동범죄피해자와 증인관련문제에서의 유엔 사법지침(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5/20의 부록)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주제발표 3·4>

김경륜 대표님께서 소개한 미국의 법원임명특별옹호자(CASA) 프로그램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례가 미국에만 한정되는지요? 자원봉사를 기본으로 하는 이 사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은 과연 없는지요? 이러한 조력자 프로그램을 자원봉사 영역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아니면 제도화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요?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인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사

회가 준비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지, 우리 나라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연구회에서 발표하는 유럽연합의 사례에 대해서도 CASA에 대한 질문과 유사한 맥락의 질문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3. 맺으며

저희는 현재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4년~18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라 이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지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보건복지부만의 과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모든 사회정책적 쟁점, 가령 교육, 문화 여가, 참여, 사법체계 등의 영역이 모두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향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11년에 우리나라에 대해 권고한 98개 과제를 '17년 상반기까지 어떻게 개선 발전시킬 것인지도 같이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얘기되는 아동사법체계 관련 과제들을 기본계획에 충실하게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문

이현주 부장 (중앙입양원 정책연구부)

아동 친화적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와 대응 토론문

장화정 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와 방임은 아동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최근 칠곡 계모 아동 사망사건(1심 10년),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사건(1심 15년),인천 골프채 사망사건(1심 친부5년/계모 8년),인천 소금밥 학대 사망사건(항소심 10년)은 안타깝게도 아동이 사망하면서 그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죄값이 부여되었는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니며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는 물론이고 공격성, 우울 등 정서적 불안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어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며 자신도 학대와 방임을 되물림하는 부모가 되거나 범죄자로 성장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방치된 어린시절, 그 분노가 범죄의 뿌리다, 중앙일보. 2012.5.29).

한가지 이 시점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국민관심이 고조되었을 뿐 아니라 9월 29일이면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되어 시행된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학대를 복지적 접근과 함께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아동을 위한 그리고 아동과 함께 하는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구축 통해 피해아동을 조사하고 법정에서 그들을 보다 안전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큰 주춧돌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 저는 피해아동을 지원하면서 느꼈던 것을 토대로 몇가지 아동 친화적 사법체계 구축을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어린아이를 때리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100]가 충분한 살인이다. 보호자 학대에 의한 아동 사망사건은 가중처벌!!!

이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치사 죄를 적용시켜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최대 9년형이 권고되고, 미성년자를 약취 · 유인해 사망시킬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이전보다 상향조정된 것은 다행스런 부분이다. 그러나 칠곡과 울산 사건에서 법조계는 국민들의 감정을 무시한 체 양형기준에 따른 최대한 형량을 선고하였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성인간의 폭행 등의 살인죄 적용과 아동학대 적용기준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호받아야 마땅한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보호자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을 보여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법조계가 신속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양형기준을 정하는 것은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 아이를 때리는 행위가 아이를 죽이겠다는 계획적 의도는 아니겠지만'충분한 의도적 행위'로 보아야 할뿐 아니라 국민인식과 법 감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반드시 더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겠다.

최근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미국판 울산 계모사건과 유사한 아동 사망사건 경우 검사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101].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아동학대가 굉장한 중범죄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 친화적 사법체계 구축의 그 큰 축은 학대행위자가 아동 보호자일 경우는 법정 최고형으로 양형기준을 수정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

---

100) 행위자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

101) "Prosecutors to seek death penalty for parents who starved 10-year-old girl."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1/13/20131113002099.html?OutUrl=naver

2. 법정내의 친화적 환경 배려 필요
- 증인신문시 피해아동 보호 조치 강구해야

증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피해 아동은 아주 심각하고 두려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부모나 자신이랑 함께 살았던 사람이 포승줄에 묶여 있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이런 감정은 배가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행위자를 다시 보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쓰처가면서 피해아동은 아주 복잡하고 부가적인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IT 강국을 충분히 발휘하여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이나 그런 장비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아이가 기다릴 수 있는 '별도 대기실 마련' '아동친화적 환경에서 법복 벗고 판사[102]가 아이에게 질문하는 환경제공''아이의 좌석배치''학교일정 등을 고려한 법정시간 조정'을 통해 아동 친화법정을 만들고,'피해아동에게 예비 법정학교'(문화일보, 2009, 12, 16)를 경험하게 하여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체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꽤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반대 신문 과정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비하 발언, 피해아동 행동의 유발론, 범죄와 관련없는 프라이버시 관련 질문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필요해 보인다.

"범죄 저지른 아이들도 피해자죠"(MK뉴스, 2010,9,20)

지난 4월 14차례 절도·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한 여학생에게 따뜻한 판결을 내려 유명해졌다. 집단폭행을 당한 후유증으로 절망에 빠져 탈선한 이 여학생에게 "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며 아무런 보호 처분을 내리지 않고 스스

102) ▸ 미국은 검은색 법복이 아동에게 위협적일 수 있어 판사들이 아동 증인을 위해 법복을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성범죄 피해 아동 재판시 충분한 휴식 보장, 법정 좌석 재배치 허용, 학교 시간에 맞춘 아동 증언 시간 제한, 아동을 위한 소형의자 제공, 피고인이 안 보이는 위치에 아동 좌석 배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국가인권위원, 2010.8)

▸ 우리의 경우 이번 칠곡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로 이동해 이 사건을 맡게 됐고, 심 리 치료를 받은 언니 A(12)양이 지난달 사건의 전말을 증언할 때 법정이 아닌 판사 회의실로 불 러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줬다(조선닷컴 2014.04.12)

로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준 것.

조용한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와 무거운 보호처분을 예상하고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소녀를 향하여 나지막히 다정한 목소리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 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라고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나지막하게 "나는 이 세상에서..."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큰소리로 나를 따라 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소녀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만해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성적을 유지하였으며 장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귀가 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하였으며 소녀는 학교를 겉돌았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 앞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이 아이의 잘못의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

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을 법대 앞으로 불러세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정도 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3. 법정 내 영상장치를 통한 진술 및 전문 진술조사 인력 활용

성범죄 피해 아동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2차 피해를 당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사라지게 하도록 대검찰청은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지침’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새 지침의 핵심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술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삼아 재판을 진행하고, 피해 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10,4,15)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아동 성학대가 발생될 경우 발생 초기 피해 아동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은 좋은 증거이며 증언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외부의 영향에 민감하고 쉽게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고 있다. 그러므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증거보전 특례’ ‘전문가 의견조회’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안는다는 것에 분노를 계속 터트리고 있다. 특히 신뢰관계자 동석 하에 영상녹화 진술을 마친 성폭력 피해 아동이 다시 법정에 불려나와 2차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사례가 있다. 신설된 특례 규정들이 공판중심주의나 피고인의 반대심문권 보장 주장에 부딪혀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법률신문. 2012, 6, 21).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및 지원조치 강화 필요(2010, 8, 13)라는 측면에서 여성가족부 등에 해당부처에 정책개선 권고를 하고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 한다. 이 권고 내용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4건의 아동성폭력 사건 중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후 검찰에서 재진술을 받은 경우가 34.2%(13건)이며, 대질 유도나 아동 수준에 맞지 않는 표현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처럼[103] 아동의 최초 진술에 검찰과 경찰, 전문가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8). 또한, 아동성폭력 사건 수사는 아동의 발달, 언어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므로, △전담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 △전문수사팀을 별도 신설하는 방안[104] △법관 연수과정에 아동의 진술 특성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바 있다. 또한 영상물 촬영과 동시에 진술조서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아동의 비언어적 단서를 놓치거나 조사 흐름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도 있어 이중진술서에 대한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그러므로 진술조서 대신 영상조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관련법령에 '증거보전특례' 규정이 있으나 거의 적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규정의 활성화를 위해 경찰도 담당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하도록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아동복지법」에는 보조인 선임(제2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제28조)으로 되어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진술조력인의 수사/재판과정 참여(제36,37조) 조항이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복지부), 해바라기아동센터 상담원(여성부), 진술조력인(법무부) 등 유사한 인력에 관한 역할 규정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 장애인, 아동

103) 외국의 경우 전문가가 피해아동의 진술을 받으면 일방경 밖에서 검·경찰 및 관련전문가(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등)들이 이어폰을 통해 면접과정에 참여하며, 진술면접이 끝난 이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팀회의를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있음(국가인권위원, 2010.8)

104)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아동대상 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방수사국(FBI)에 아동대상범죄 전담반(Crimes Against Children Unit, 약칭 CAC)을 설치·운영하고 있음(국가인권위원, 2010.8)

학대 피해아동(9월시행예정)에게 진술조력인이 배치됨으로써 수사 초기에서 재판까지 진술 조력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되어 실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담인력이다. 현재 아동학대전담 인력은 없다. 이번을 계기로 아이들을 위해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아동학대 업무를 하도록 전담경찰관으로 지정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검사,판사들에게도 필요한 전담 인력 배치 및 교육도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가정법원이 현재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에서 가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및 인력도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아동의 사생활 및 정보 접근권 보호 필요

피해아동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전화번호나 주소지가 노출되거나, 일반 사무공간에서 조사를 받는 등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된다. 이번 칠곡 사건에도 한 신문사의 단독보도가 이루어진 후 또 다른 신문사가 무리하게 아동을 찾아가고 심지어 학교 화장실까지 들어가서 아동을 무리하게 만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피해아동은 심리적 안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목소리나 아이의 인터뷰만을 고집하는 언론사의 또 다른 폭력이다. 또한 피해아동의 피해 정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자극적인 제목 등으로 아동 관련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언론지침 등도 신속히 만들어 언론사에 교육하고 인식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인 피고인이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 및 신고자, 증인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사례도 있다. 본 토론자도 법정 증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일정시간 협박과 위협을 받은 바 있기에 피해아동뿐 아니라 신고자, 증인에 대한 기본적 정보유출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이루어져

야 하며 증인 보호프로그램[105]이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몇몇 법정에서 증인들이 소환장 외에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해 법정을 찾기도 어렵고 마땅히 기다릴 곳이 없어 배회하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는 기사를 본적 있으며 지원 서비스 안내문을 함께 받게 된다. 증인지원관에게 연락하면 미리 본인이 증언하게 될 법정 답사 및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대법원은 또 이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실'구축과 특별증인 지원 서비스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특별증인은 강력범죄 피해자나 여성・아동・장애인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증인을 말한다. 이들을 위한 증인 지원실은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의 업무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 늦은감은 있지만 운영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피해아동에 대한 친화적 사법체계의 또 다른 축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20여년 전부터 피해자 증인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해 온 영국의 경우 재정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민간단체 운영 지원공간이 법정 밖 민원인 통로에 마련되어 있고, 법정에 서게 될 당일엔 증인 지원인이 직접 증인 집으로 찾아가 증인이 법정에 선 뒤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절차적인 부분을 동행하며 돕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원인은 사건에 관한 법률 상담은 할 수 없다.

5. 아동 최우선 이익의 원칙

지금 우리가 피해아동의 친사회적 사법체계는 어느 한 가지를 개선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형량을 높이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인 아동보호 정책 및 제도의 완비,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강화 등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불어 아동학대의 일선에서 학대를 접하는 사법

105) 증인지원 서비스 모든 형사사건으로 확대(아시아 경제, 2014.02.05)
서울·광주고/지법에 일반증인 지원실 신설, 종전 특별증인 보호지원과 함께 전국 확대 계획

부의 태도가 바뀔 때 국가·사회적인 예방책과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 역시 가능하다.

아동은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보호자에 의한 학대일 경우 보호자의 구속되면 아이가 홀로 지낸다는 핑계와 이유로 보호자에게 형량 감형의 요인이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 아이가 진정서를 쓰고 그 행위자의 선처를 바란다고 함이 진정 그 아이가 정말 원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고민할 일이다. 더불어 보호자가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 후견인 제도와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친인척의 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서 아이의 권리가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모든 일들이 아이들의 최우선의 이익에 근간을 둘 때 아이들은 조금 더 밝고 희망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자료> 뉴시스 2014. 4 신문자료

<검찰이 이번 사건에 제시한 외국 아동학대 살인사건 형량 자료>
- 2013년 영국 다니엘 펠카 계부의 수개월 폭행, 혼수상태 방치 후 사망: 살인죄,무기징역
- 2007년 독일 카롤리나 : 계부 3세 뇌손상 사망 - 살인죄, 무기징역
- 2013년 미국 엘리존슨 : 계부 3세 의붓딸 폭행 사망 - 살인죄, 무기징역
- 2013년 미국 에드나 헌트 : 계부 3세 딸 폭행 사망 - 학대 및 치아 뽑음: 살인죄, 무기징역
- 2012년 미국 릴리 퍼노 : 학대로 혼수상태, 병원 옮겼음 - 살인죄, 무기징역

<동아일보 2014. 4. 16>

아동학대 사망 사건 14건의 개요

가해자	형량	피해자	학대 내용	상습 학대
친모의 동거남 우모 씨(34)	징역 5년	남·6세	2007년 3월 옆구리와 복부를 수차례 때려 장간막 파열 등으로 사망	○
계모 이모 씨(39)	징역 6년	여·9세	2006년 4월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이불 위를 눌러 질식사	○
친모 정모 씨(36)	징역 4년	여·8세	2012년 7월 잠을 안 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 구타, 칼로 옆구리를 찌름. 다음 날 오전 8시 응급실로 옮겼으나 사망	○
이모부 안모 씨(47)	징역 10년	남·2세	2012년 12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 머리 손상으로 사망 (친족 성폭행 혐의 등 포함한 형량)	○
친부 강모 씨(50)	징역 5년	남·6세	2002년 6월 상습 구타로 인한 타박상과 방광요도 역류로 수술 권유 받았으나 돈 없어서 퇴원시킨 뒤 방치	○
친모 김모 씨(45)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남·9세	2004년 7월 아픈 아들 병원비가 없고 친부와 만나기 싫다는 이유로 방치. 2004년 6월 피해자 체중이 약 16kg으로 줄어 영양실조로 사망	-
계모 권모 씨(34)	징역 8년(1심)	남·8세	지난해 8월 말썽 피운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고 골프채 등으로 상습 폭행해 사망(항소심 진행 중)	○
친부 최모 씨(51)	징역 5년	여·5세	2001년 7월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 구타로 경막하 출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비장 파열 등으로 사망	○
친부 최모 씨(3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남·2세	2011년 3월 울면서 수면 방해한다는 이유로 발로 밟아 갈비뼈 골절과 소장 파열로 인한 복강 내 출혈로 사망(항소심에서 상해치사, 상습 학대 혐의 무죄, 상고심 진행 중)	○
계모 장모 씨(39)	징역 12년	여·7세	2004년 1월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온몸과 복부를 구타, 얼굴에 뜨거운 물 붓는 등 학대, 간 파열에 의한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이틀 뒤 사망	○
계모 송모 씨(39)	징역 6년	남·8세	2003년 2월 말을 안 듣는다며 샤워기로 머리를 때리고 성기를 여러 차례 세게 잡아 당겨 외음부 파열로 인한 쇼크로 사망	○
친부 박모 씨(25)	징역 4년	남·2세	2012년 1월 처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2세 아들을 좌우로 수차례 흔들다가 밀쳐 서랍장에 머리 부딪혀 사망	○
계모 양모 씨(52)	징역 10년	여·10세	2012년 8월 소금밥, 토사물, 대변 먹게 해 구타와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	○
의붓할머니 김모 씨(45)	징역 5년	여·5세	2011년 1월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때리고 베란다에 방치해 사망	○

아동친화적인 아동사법체계를 위하여

전영순(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장)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권리 등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선언이상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지 23년이 지난 오늘, 아동을 위한 그리고 아동과 함께하는 아동친화적 사법체계를 논하는 자리를 가지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주제발표 해주신 안동현 교수님과 최병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현교수님의 '사례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아동사법체계의 현실'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아동들을 사법체계 내에서 다루어야 하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경찰, 검찰 및 법원, 교정기관 등 사법체계 종사자들의 아동인권감수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범죄가 점점 흉포화, 저연령화되는 것에 대한 각계각층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자 및 청소년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위주의 대책은 신속하게 나오고 있으나, 아동들을 선도하고 치료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은 미비하며, 성인범죄자들과 함께 구치하거나, 심문과정 및 절차과정에서 아동친화적인 절차나 고려는 미비한 실정이다.

사법체계안에서 아동권리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체계 전문가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관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UNCRC 제3, 4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입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관련 법 제정을 포함,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아동이익 최상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아동과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행정, 사법절차 및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하고 있다. 또한 아동 견해의 존중과 관련해서는 위원회는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법 분야에서 아동권리 교육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법무부에서는 소년보호기관의 보호소년, 위탁소년 등 비행청소년을 위해서 일하는 각종 전문단체 및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 하였는데, 그 이외에 일선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을 하지는 않고 있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에서도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선고했는데 이는 아동인권에 대한 사법체계의 인식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형법상 중상해죄나 살인죄로 의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리함으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체계과 아동이 선도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최선의 지지망이 사법분야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실제적인 아동권리 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사법 분야에서 아동권리교육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미향·황소영

김현지·오연주·이정수

김혜정·김연하

배화옥

서혜정

송승희·장경은

이귀옥

이문정

이인경·이완정

이정수·오연주

장지현·이완정

황옥경·김정화

Anna Dubrovskaya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관한 주관적 인식 변화 분석

구미향(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황소영(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Ⅰ.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함으로써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어 왔다. 특히 아동이 자신의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을 인식하여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적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이 보급되었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과 달리 보다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은 거의 없고, 유아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유아인권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는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인권에 대한 유아교사의 주관적 인식을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시행 전과 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유아인권교육이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감수성에 미치는 변화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평균연령 만25세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재직하는 유아교사 15명이었다.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 주관성 연구에 적합한 Q방법론의 원리와 기법을 적용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기본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대표하는 문항을 수집하여 40개의 Q표본을 구성하였다. Q표본으로 선정된 문항을 카드의 형태로 제작하여 연구대상이 생각하는 문항의 중요성에 따라 카드를 분류하도록 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한 문항과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한 각 3문항에 대해 심층면담하여 연구대상의 의견을 듣고 기록하였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

한 유아용인권교육프로그램을 주 1회 40분간 총 9회기 시행하였고, 인권교육프로그램의 시행 전과 후 연구대상이 Q표본으로 선정된 문항이 적힌 카드를 분류함으로써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Q소팅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Q표본 분포도에 기록된 문항의 번호를 1점~9점으로 점수화하여 코딩한 후 PC 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Q요인분석하였다. 표준점수 ±1.00이상인 문항을 선별하고, 각 유형 내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들의 심층면담자료를 참고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밝혔다.

Ⅲ. 연구결과

첫째,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한 개의 유형이 발견되었다. 연구대상 모두 동일 유형에 포함됨으로써 유아인권에 대한 유사한 의견을 갖고 있었다. 둘째,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후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두 유형이 확인되었다. 1유형은 생존권과 보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2유형은 발달권과 참여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셋째,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의 자료를 통합 분석한 결과, 유아인권교육프로그램에 따른 유아교사의 인식변화를 확인하였고 이를 반영하는 두 유형을 발견하였다. 1유형은 생존권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참여권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였고, 2유형은 참여권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보호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Ⅲ.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심신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사가 올바른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의 시행과 교사의 인권의식 변화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key word: 유아인권, 유아교사, 주관적 인식

유아의 행복권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분석(유아의 연령, 성별, 모자애착관계, 자아탄력성, 또래유능성을 중심으로)

김현지(중앙대학교 유아교육 박사과정)·오연주(대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정수(서울사이버대학교 아동복지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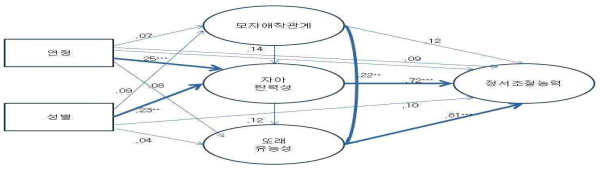
Ⅰ. 연구목적

유아의 행복권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를 보기 위해 개인 내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자아탄력성과 개인 외적 요인인 모자관계, 또래유능성을 선정하여 각 요소들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경기도 Y시 유치원 2곳의 만 3,4,5세 유아 289명을 대상으로 또래 유능성 척도, 탄력성 검사 DECA(Devereux Early Childhood Assesment),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교사용 평정척도, 어머니-자녀와의 애착 검사를 실시하였고, SPSS 19.0와 AMOS 1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그림 1> 유아의 행복권(정서조절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간의 구조모형

Ⅳ. 결론

첫째, 유아의 자아탄력성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또래유능성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의 성별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거쳐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아의 연령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을 거쳐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어머니-자녀 애착관계는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거쳐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s : 유아의 행복권, 정서조절능력, 모자애착관계, 자아탄력성, 또래 유능성

만 4-5세 유아의 문제행동수준 예측변인탐구: 가족특성,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김혜정(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김연하(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Ⅰ. 연구목적

유아가 가진 선천적 기질을 올바로 이해하고, 문제행동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올바른 부모 양육태도를 통해 유아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술을 발달을 도와야 한다. 본 연구는 만 4-5세 유아의 내재화, 외재화 및 과잉 문제행동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유아의 가족의 특성,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탐색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을 세 가지 차원(내재화, 외재화, 과잉행동)으로 구분하고, 문제행동수준은 교사가, 기질 및 양육태도는 어머니가 평정하도록 하여, 문제행동의 예측변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방법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어린이집 10곳에 재원 중인 만 4, 5세 유아 215명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t 검정과 상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가족의 특성과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가족의 특성,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지

분석한 결과, 유아의 외재화 문제행동 수준을 예측하는 변수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활동적 기질이었다. 유아의 내재화된 문제행동의 예측변인은 타 가정 양육경험,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 그리고 유아의 정서적 기질이었다. 유아의 과잉행동 수준의 경우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활동성 기질이었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가족특성, 유아기질, 어머니 양육태도가 모두 유아의 문제행동 수준을 결정하는 변인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의 문제행동의 원인이 매우 다차원적이며, 따라서 유아의 문제행동 중재 역시, 가족특성, 부모, 개별 유아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중재여야 함을 시사한다.

key words: 내재화 문제행동, 외재화 문제행동, 과잉행동, 기질, 양육태도

아동학대 재발요인으로서 부부폭력

배화옥(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연구목적

본 연구의 주요목적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 가운데 초4패널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아동이 경험하는 학대재발의 변화추이와 이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부폭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생산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초4패널을 활용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 아동 2,265명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아동학대는 언어학대와 신체학대 2가지 유형이 있으며, 부부폭력도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의 2가지 유형이 있으며, 둘 다 5단계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통계방법으로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SPSS 21과 AMOS 20을 활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적합도 지수에 근거하여 언어학대 재발은 3차년도 변화모형이, 신체학대 재발은 이차곡선 변화모형이 선정되었다. 언어학대와 신체학대 모두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량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예측요인을 포함한 잠재성장모형의 분석 결과, 부모의 가정폭력은 아동학대 재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부모의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할수록 아동에 대한 언어학대와 신체학대에 초기값에 영향을 미쳤다.

Ⅳ. 결론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아동의 유형별 학대재발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학대는 꾸준하게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은 아동학대 재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key words: 아동학대, 학대재발, 언어학대, 신체학대, 부부

교실에서 의사표현 기회를 갖는 유아들의 체험에 대한 의미

서혜정 (제주한라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Ⅰ. 연구목적

유아교실은 성인인 교사에 의해 반 운영 방향이 결정되므로 교사에 의해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으며, 또 반대로 교사에 의해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교사의 교육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사의 철학에 따라 유아 존재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그 정의에 따라 유아들은 능동적인 존재가 되거나 수동적인 존재가 된다.

본 연구는 신임교사 2인이 유아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리인 의사표현의 기회를 갖도록 함에 따라 유아들이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지 질적인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자신의 이익과 관련하여 반드시 아동이 의사표현을 할 권리와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고려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는 아동의 의사표현에 대한 권리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제12조 아동의 의사표현권은 어린이는 자기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으며, 어른은 어린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04). 본 연구는 권리감수성을 향상해 가는 교사에 의해 유아들의 의사표현의 기회를 갖게 됨에 따른 유아들의 체험과 의미를 보고자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의사표현 권리를 존중받는 과정에서 유아의 체험은 무엇인가?
2. 교실에서 의사표현 기회를 갖는 유아의 체험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K 시 소재의 J 유치원에 근무하는 3년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를 졸업한 신임교사 K 교사와 J 교사이다. 연구 참여자인 두 교사가 2008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두 교사가 운영하는 각 반의 아이들에게 의사표현의 기회를 주려 의도적으로 노력한 기간 동안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은 2008년 9월에서 2009년 2월까지 총 12회 이루어졌다. 수집한 자료는 모두 전사하였으며, 귀납적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교실에서 의사표현 기회를 갖는 유아들의 체험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실에서 의사표현의 기회를 갖게 된 유아들의 체험으로 교사가 주도로 교실운영을 하던 것에서 유아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존중하게 되자 유아들은 자신의 의사표현을 처음엔 서툴지만 익숙하게 표현하며, 점차적으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의사표현을 하였다. 그동안 교사에 의해 정해진 순서대로 수업에 참여하던 유아들은 유아 자신이 정한 순서를 기다리며 활동을 기대하게 되었으며, 유아들이 정한 방법으로 수업 속도를 조절하게 됨에 따라 유아들은 천천히 하는 수업을 통해 유아들의 의견을 담은 수업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유아들은 서로 존중할 때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을 교사와 친구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

둘째, 유아의 의사표현 권리존중에 따른 연구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교사는 유아의 의사표현 권리존중 실천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였으며, 의사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유아들이 표현하며 결정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기다리고 인내가 필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아의 의사표현은 존중하기 위해 경청을 통하여 가능하였으며 이러한 실천과정에 권리존중의 적절성을 안내하는 멘토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본 연구는 만3세 유아의 의사표현권을 교실운영에 반영한 연구로 보다 어린 연령의 영아에게 발달에 적절한 의사표현의 기회에 대한 권리존중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Key Words 유아, 의사표현, 체험, 의미

유아의 공감능력과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송승희(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장경은(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Ⅰ.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공감능력, 어머니의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유아의 개인적 요인(성별, 기질 등), 사회적 요인(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관계, 사회적 평가), 인지적 요인(유아의 감정이입 정도, 조망수용능력, 도덕적 추론능력) 등이 유아의 친사회성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인지·정서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유아의 공감능력과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봄으로써 유아의 인지·정서적 요인과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인지·정서적 공감능력인 유아의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는 어떠한가?
2. 유아의 공감능력, 어머니의 공감능력,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유아의 공감능력과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223명과 그들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만 5세 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만 5세부터 공감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대상 연령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성별에 따른 유아 관련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증을 하였다. 세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유아의 공감능력과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아의 공감능력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t=4.596, p<.05). 여아(M(SD)=137.92(16.53)가 남아(M(SD)=126.97(19.68))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변인은 유아의 성별(r=-.201, p<.001), 어머니의 최종학력(r=.138, p<.05), 가구 월평균 소득(r=.200, p<.01), 유아의 공감(r=.259, p<.001),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r=.170, p<.01)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유아의 공감능력과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유아의 공감능력(β=.195, p<.01)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3.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β=.143, p<.05)은 1.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유아의 공감능력이 모두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모교육에서는 어머니의 인지적인 공감능력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방향에 대한 추후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논의되었던 유아 및 어머니 관련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했을 경우에도 유아의 공감능력과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이 두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유아교육과 부모교육의 내용을 구성한다면, 유아의 친사회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하며, 그 동안 많은 연구가 되어오지 않았던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의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Keywords: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유아의 공감능력,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능력,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능력

영유아기 기본생활습관 형성실태
: 수면습관, 식습관, 배변/씻기 습관을 중심으로

이귀옥(숭의여자대학교 아동미술디자인전공 조교수)

Ⅰ. 연구목적

영아기 기본생활습관 중 수면습관, 식습관, 배변/씻기습관이 4~42개월 기간 중 습득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생후 4개월에서 42개월까지 수면습관 형성 실태는 어떠한가? 2. 생후 4개월에서 42개월까지 식습관의 형성 실태는 어떠한가? 3. 생후 4개월에서 42개월까지 배변/씻기 습관의 형성 실태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PSKC)연구에서 수집한 1차(2008년)~4차(2011년) 자료인 생후 4개월에서 42개월까지 영유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영유아의 수면습관, 식습관, 배변/씻기습관 측정도구는 Developmental Profiles : Daily Routines(Allen & Martoz, 2003, 신나리, 안재진, 이정림, 송신영, 김영원, 2008, 재인용)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분석방법은 영유아기 기본생활습관의 형성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평균월령을 기준으로 월령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문항별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 평균월령을 기준으로 월령의 상하집단 간 차이 나는 결과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면습관은 6개월 이후 영유아는 밤에 계속 자며, 손가락을 빠는 빈도가

증가하였고, 38개월 이후 영유아는 혼자서 잠 잘 준비를 하지만 여전히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거나 노래를 불러 주거나 토닥여 주는 비율이 상승하였다. 식습관은 6개월 전후로 수유 습관에 차이가 보였고, 14개월을 이후 혼자 먹을 수 있는 빈도가 증가하였고, 38개월 이후 영유아는 배고프지 않으면 음식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나타났다. 배변/씻기습관은 6개월 이후 배변 시간 간격이 일정한 비율이 상승하였고, 14개월 이후 어른이 옷 입힐 때 어른을 돕는 경우와 대소변을 어른에게 알리는 빈도가 증가하였고, 괄약근 조절이 나타났다. 25개월 이후 옷 벗고 입을 때 잘 따르고, 대 소변을 참을 수 있는 빈도가 증가하였다.

Ⅳ.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영유아는 연령이 증가할 때마다 수면습관, 수유 및 식습관, 배변/씻기 습관이 각 연령의 전반과 후반에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즉 각 년도의 전반과 후반의 기본생활습관이 서로 다른 경우는 기준이 되는 월령이 기본생활습관의 중요한 시기였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월령별 평균적인 기본생활습관의 발달 단계를 숙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key word: 영유아기, 기본생활습관, 수면습관, 식습관, 배변/씻기습관

Anthony Browne 그림책에 나타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이문정(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Ⅰ. 연구목적

부모 역할에 대한 개념은 유아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역할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 역할개념은 자신의 부모를 통해 직접적으로 습득하기도 하지만 그림책과 같은 간접적 경험을 통해 형성하기도 한다. 특히 그림책을 통해서는 바람직한 부모 역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 한명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그림책에 많이 담고 있는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을 중심으로 그림책에 나타난 부모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앤서니 브라운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그림책 35권 중, 아버지와 어머니가 등장하는 그림책인,《고릴라》《돼지책》《동물원》《아기가 된 아빠》《우리 아빠가 최고야》《앤서니 브라운의 행복한 미술관》《숲 속으로》《우리 엄마》총 8권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Parsons & Bales(1995)와 Blair(1991)의 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의 역할을 생계부양자역할, 양육자역할, 정서적 역할, 사회적 도구 및 가치 전달역할, 성격형성역할, 부모의 부재의 6가지로 범주화 하였다.

Ⅲ. 연구결과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점차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첫째, 아버지의 모습은 전통적인 생계부양자의 역할에서 정서적 역할, 성격형성의

역할로 변화한다. 둘째, 어머니의 역할은 양육자의 역할에서 사회적 도구 및 가치 전달자, 생계부양자의 역할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어머니의 역할에서 정서적 지지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됨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에서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보여주며 아버지의 역할 변화를 더 강조하고 있다.

key word: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그림책

영아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인경(인하대학교대학원 아동복지학전공 석사과정)·이완정(인하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Ⅰ. 연구목적

본 연구는 영아를 키우는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 중 우울이 이들의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일상적 양육행동과 영역별 발달지원 양육행동으로 구분하여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행동의 어떠한 요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영아 어머니의 우울이 일반적 양육행동과 발달지원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어린이집 영아반 어머니로 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편의 표집한 10개 어린이집 영아반 어머니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36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로는 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Beck 등(1967)이 개발한 우울증 척도(BDI)를 이영호(1993)가 번안한 한국판으로 사용하였고,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안지영(2001)의 일상적 양육행동 척도와 안지영(2001)의 발달지원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수도권에서 편의표집한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어린이집 10개소의 영아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Cronbach'a, 기술통계,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영아 어머니의 우울이 영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AMOS를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영아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으로 알아보기 위해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검증된 문항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우울 변인을 투입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영아 어머니의 우울이 이들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은 적절한 적합도를 보였다(GFI = .935, CFI= .930, RMR= .012). 영아 어머니의 우울은 이들의 일상적 양육행동(=-.36, p< .001)에 부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들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지원 양육행동(= -.21, p< .05)에도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keywords : 영아 어머니, 우울, 양육행동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인지도와 프로그램 요구도 및 건강가정성 연구 : 안양시를 중심으로

이정수(서울사이버대학교 아동복지 겸임교수)·오연주(대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Ⅰ. 연구목적

안양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 이미지는 어떠한지, 그리고 건강가정 사업에 대해 어떤 프로그램 요구도에 대해 살펴보고; 안양시민의 건강가정성의 경향을 살펴보아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과적인 건강가정사업 운영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안양시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 445명으로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2006년 건강가z정지원센터 운영가이드북에서 제공한 요구도 조사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인지도 4문항, 가정생활 문제 및 대처 2문항,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요구도 15문항,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요구도 3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건강성 평가척도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개발한 가정건강성 평가척도 30문항을 사용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SPSS 19.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인지도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83(41.1%), 센터를 알게 된 경로는 홍보물(아파트 게시판)이 61명(29.5%), 건강가정지원센터하면 224명(50.3%)이 일반가족 누구나 이용하는 곳이라고 응답하였다.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인지도는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모른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68명(37.8%)이었다.

2) 가정생활 문제 및 대처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등 자녀교육에 관한 어려움이 195명(43.8%),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195명(43.8%)이 가족내에서 해결한다고 하였다.

3)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요구도

가족교육사업 부분에서 가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에 참가할 의향에 대해 215명

(48.3%)이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고, 교육을 받게 된다면 받고 싶은 내용으로 자녀 양육 및 교육 등의 부모교육이 225명(50.6%)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을 받게 될 때 그룹별 워크샵이 289명(64.9%)으로 가장 선호하였고, 교육을 받으면서 받고 싶은 지원으로 개인 및 가족의 성장이 183명(41.1%)으로 가장 많았다. 센터에서 진행되는 가족교육사업의 필요성으로 부부교육이 평균 4.49(SD=.64)로 가장 필요성이 높았다. 가족상담사업 부분을 살펴보면, 가족 간의 갈등이 심각해질 경우 상담을 의뢰할 생각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87명(64.4%), 상담을 받게 된다면 받고 싶은 상담 내용에 대해 건강이 189명(42.5%), 선호하는 상담형태에 대해 전화상담이 130명(29.2%), 상담자에게 받고 싶은 지원으로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이 145명(32.6%), 가족문제예방 및 해결을 위해 받고 싶은 상담에 대해 직업 및 경제문제상담이 317명(71.2%),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가족상담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개인상담의 필요성이 평균 4.24(SD=.81)로 가장 높았다. 가족문화・돌봄나눔사업부분을 살펴보면, 가족친화적인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문화・돌봄나눔사업에 참가할 의향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333명(74.8%)이었다. 가족여가와 관련하여 가족문화・돌봄나눔사업에 참가하게 되면 받고 싶은 내용에 대해 '가족캠프 및 여행'이 350명(78.7%)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가족문화・돌봄사업에서 받고 싶은 지원에 대해 가족의 즐거움, 가정생활의 활력소가 138명(31.0%)으로 나타났다.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가족문화・돌봄나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자녀 돌봄 지원이 평균 4.51(SD=.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요구도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요일로 토요일이 310명(69.6%), 참여 가능한 시간대에 대해 주말오후(13~18시)가 286명(64.3%), 참여비에 대해 5,000원 초과~10,000원 이하가 280명(62.8%)으로 응답하였다.

5) 안양시민의 건강가정성의 경향

가족관계, 자원관리, 외부관계가 모두 높은 RME유형은 129명(29.0%)으로 가장 많았다.

Ⅳ. 결론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홍보와 사업에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안양시민들이 건강가정 프로그램 및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안양시민들에게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안양시민들은 주로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개인 상담과 건강 및 가족의 친밀감 및 유대감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안양시민의 요구에 맞춰 만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이 개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Key Word :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지도, 프로그램 요구도, 건강가정성

유아의 성격 강점 및 덕목에 관한 어머니의 인식: 유아의 사회성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장지현(인하대학교대학원아동복지학전공 박사과정)
·이완정(인하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Ⅰ. 서론

본 연구는 가정에서 유아의 성격강점 및 덕목에 관해 어머니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인식하는 유아기 자녀의 성격강점 및 덕목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유아기관에서 나타내는 사회성 및 행동문제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Ⅱ. 연구방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인천지역 유아기관에 다니고 있는 3세~5세 유아의 어머니 3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아가 갖추어야할 성격 강점 및 덕목에 관한 어머니의 인식은 Peterson과 Seligman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한 성격강점척도의 단축형을 토대로 연구자들이 문항 내용을 수정하여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사회성 척도는 최혜경(2006)이 수정하여 사용한 인성특성척도 중 하위변인인 사회성으로 사용하였으며, 행동문제는 서수경(199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빈도분석, t검증 및 Pearson 적률상관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인식한 유아의 성격강점의 일반적인 경향은 사랑, 신중함, 진실성,

사회성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강점은 겸손, 공정함, 창의성, 통찰의 순으로 나타났다. 덕목의 경우 인간애, 초월성, 용기, 절제, 지혜와 지식, 정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가 인식한 유아의 성격강점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대표강점 중 사회성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우세했으며, 나머지 친절, 자기조절, 유머, 활력 등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덕목의 결과를 살펴보면 인간애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의 성격강점 및 덕목은 유아 사회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 중에서도 사회성, 친절, 지도력, 활력이 사회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인간애 덕목이 사회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넷째, 유아의 성격강점 및 덕목과 행동문제는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사랑, 자기조절, 신중함, 사랑이 높을수록 행동문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덕목의 경우 절제가 높은 수록 유아의 행동문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 유아, 성격강점, 덕목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본 한국아동권리의 현실

황옥경(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김정화(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총괄팀장)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정부는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관련법 정비,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동 권리의 인식과 아동의 실제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내용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현실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정부가 제출한 협약의 이행상황 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영역을 8개의 영역(cluster)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영역으로는 일반이행조치와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기초보건과 복지, 교육, 특별보호조치가 있다

Ⅲ. 유앤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분석 및 한국아동권리 정책 실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정부의 아동권리 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 정부의 조치는 포괄적, 부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반이행조치에 해당하는 아동권리가 정부의 아동정책 개발 및 보완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분적으로 그리고 포괄적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의 삶의 질이 실제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아동권리와 관련한 새로운 이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이 미진하다.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는 사안에 대해 우리 사회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의존하여 정책 수립 및 보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아동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정책 대응을 찾아보기 어렵다.

Ⅳ.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각각에 대한 이행방안 보다는 아동권리 신장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범주에서 실천해야 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정책의 대상으로서 아동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
2. 독립성이 보장되고 공적 권한이 부여된 아동권리모니터링기구가 운영되어야 한다.
3. 아동정책을 포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활동이 정례화 되고 그 역할이 정상화 되어야 한다.
4. 아동정책이 아동권리 실현이 가능하도록 아동에 대한 정책의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에 다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5. 아동권리보장의 실현을 위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6. 아동복지 예산할당의 증대와 아동예산 책정이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Key Words : 아동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위원회

Three Model Early Childhood Programs

Anna Dubrovskaya

(Kyung Hee University, College of Human Ecology, Child and Family Studies)

Ⅰ. Purpose of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hree early childhood programs: the Abecedarian project, the High Scope/ Perry Preschool and the Chicago Child-Parent Centers.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se programs because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quality of early childhood services for all children, particularly those who are disadvantaged. The implications from these programs can broaden the childhood education specialists' knowledge.

Ⅱ. Research Method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a literature review of these programs. The secondary data was taken and summarized. The results of these programs were analyzed and synthesized.

Ⅲ. Research Results

These three programs – the Abecedarian project, the High Scope/ Perry Preschool and the Chicago Child-Parent Centers – are viewed as highly effective, providing a consistent pattern of moderate to large impacts on children's school experience. Moreover, the programs had a range of enduring impacts on participants as adults (increasing earnings and employment, reducing rates of criminal ac-

tivity, and reducing teen and single motherhood).

Benefit-Cost Estimates

All these programs were found return overall benefits that exceeded program costs, with the return per dollar invested estimated as $3.23 for the Abecedarian project, between $5.15 to $17.1 for Perry Preschool, and $7.14 for Chicago Child-Parent Centers.

Ⅳ. Conclusion

The Chicago Child-Parent Centers (CPC), the Abecedarian program led by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nd the Perry Preschool Study are three critical longitudinal cases that solidify the importance of early-childhood intervention. All three of these studies took at-risk children from low-income environments and provided them with free early childhood education services of varying intensity, often coupled with parental services. Multiple benefits were noted from these studies including increase in IQ, decreased enrollment in special education, higher high school graduation rates, less dependency on welfare, lower rates of teen pregnancy, higher marriage rates, marked declines in crime, improved longitudinal literacy and math performance, and reduced incidences of child abuse. The effectiveness of these programs has been proven. Besides, the impacts are bigger than the impacts of other programs as the Head Start program. Finally, these programs can help children to have a solid foundation for a productive future and a happy life.

Key words: Childcare, children's development, cognitive development, language development.

2014년도 한국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를 말하다.
아동을 위한 그리고 아동과 함께하는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발행일 : 2014년 4월 25일
발행처 : 한국아동권리학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89번길 52
서울신학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806호
Tel : 032-348-8978 Fax : 032-349-8978
E-mail : kccr@hanmail.net
Homepage : www.kccr.or.kr